

# 1 알 권리와 명예훼손 면책 논쟁

## 1. 문제제기

광범하고 모호한 ‘개념’이 권력의 손에 쥐어질 때 그 개념은 표리가 부동한 자기 합리화 사례들을 양산한다. 예리하고 엄격하게 상대의 책임을 다그쳐 묻는 데 적용한 개념이더라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무르고 느슨하다. 논리와 이치가 엇박자난 경우는 광범위한 개념들이 갖게 마련인 ‘상황’론으로 은근슬쩍 보정된다.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개념도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 승 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
-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헌법 제17조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라고 볼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예누리 없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외부의 무단 침입을 받지 않는 것, 타인의 간섭 없이 주거 공간에 마음껏 머무는 것, 도청이나 엿보기의 위협·위협 없이 타인과 대화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 억제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소를 정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라이버시 권리의 핵심들이다.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8조 통신비밀의 권리 혹은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로 규정했다. ‘누구를, 어디서 만나, 무엇을 먹고 마시든, 혹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 그것 역시 사생활 혹은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다.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의 애로를 탐색당하지 않고 내밀히 유지하는 것도 프라이버시의 진수다.

프라이버시의 의미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논하는 미국의 언론법 교과서들도 불가피하게 그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 헌법이 사생활의 보호를 헌법에 명문화한 것과 달리 미국 연방헌법은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연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프라이버시 법리는 그 역사가 오래고 더불어 복잡하게 전개돼 왔다. 프라이버시는 1965년에 이르러서야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보호돼야 할 자유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다.<sup>1)</sup> 이후 헬

1)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1940년대에 들어와 프라이버시 권리는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으며 1950년대에는 전국 각주에서 승인되었다. 연방대법원도 1957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프라이버시 이익 (privacy interests)을 수정헌법 제1, 제4, 제5, 제14조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가 1965년 Griswold 사건에서 비로소 프라이버시를 ‘헌법상의 권리’로 승인하였다.

멧 미착용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탈 권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혹은 교사가 옛 제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권리 등이 헌법상의 프라이버시로 보호될 수 있는지 다루어졌다.<sup>2)</sup>

대체로 언론법 영역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버시는 흔히 4가지 양태를 갖는다. 1960년 프로서 (William L. Prosser) 교수가 프라이버시를 유형화 한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의 4가지 분류 틀은 광범하게 수용되었고 수많은 법원이 그러한 유형 분류에 입각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을 다루었다. 프로서의 분류는 사적인 영역의 침범, 개인의 사적인 내용을 공개누설 하는 것, 허위의 사실을 공중에게 공표하는 것, 그리고 한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도용하는 것 등이다. 대부분의 저명한 언론법 교과서들은 이러한 분류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sup>3)</sup> 이름과 초상의 도용은 그 후 퍼블리시티권으로 구체화되었다. 한국에서 초상권은 인격권과 재산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초상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초상의 부정한 상업적 사용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돼 왔다. 퍼블리시티권 역시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유형 중에서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한 침해는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1984년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이 이를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필두로 이러한 입장은 최소한 10여 개 주 이상으로 확산되었다 (Overbeck, 2004: 204).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종종 명예훼손 소송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그 차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으로서 허위사실 공표는 그러한 허위사실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를 원고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원고가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만으로 족하다 (Siegel, 2008: 207). 위와 같이 프라이버시나 사생활의 침해는 그 유형도 다양하고 따라서 광범한 범위에 걸친 개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프라이버시나 사생활의 침해는 그 유형이  
다양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개념적  
속성 가질**

개념 속성에 있어서 모호하고 광범하기는 알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알 권리는 대외적으로 언론의 자

Griswold 사건이란 코네티컷 주에서 기혼부부 대상 피임방법 서비스를 제공하던 Griswold와 G.Buston 에게 경찰이 피임금지법을 적용, 기소하자 법원은 각각 1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두 사람은 코네티컷 주법은 수정헌법 제14조 상의 적법절차조항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여 1965년 연방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7대 2로 '부부의 프라이버시' (marital privacy)라는 헌법상 새로운 권리를 승인하였다 (윤명관 (1995), "성적 프라이버시권리: 미국의 판례경향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6호, pp.14-15).

2) Siegel, Paul (2008), Communication Law in America, New York: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p.173.

3) Carter, Dee & Zuckman (2007), Mass Communication Law, Thomson, pp.122-187; Siegel, Paul (2008), Communication Law in America, New York: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pp.173-229; Moore & Murray (2008), Media Law and Ethics,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517-590; Zelezny (2004), Communications Law, Thomson, pp.169-218; Overbeck (2004),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 Thomson, pp.176-224.

유를 내세울 때 반드시 내거는 구호, 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모든 단계에서 옳든 그르든 갖가지 장애 극복에 명분으로 사용돼 왔다.<sup>4)</sup> 박용상(1997)이 지적한대로 알 권리는 애당초 정치적 구호 또는 민권운동의 표어로서 사용해 오다가 법적으로 제도화 된 개념이기 때문에 나라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 개념 정의도 모호하다. 원래 국가권력에 대한 요청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권 내지 주관적 공권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국가적 영역을 넘어 사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개념과 법률관계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sup>5)</sup>

최근 한국 사회의 알 권리 논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었다. ①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국익보호를 위해 방송사의 의혹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알 권리 차원에서 진실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② 참여정부가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내놓자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한편에선 기사실 폐쇄가 오히려 다양한 시각의 언론보도를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공인이나 유명인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알 권리 구현으로 강변하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고 단순한 인격권 침해일 뿐이라는 주장 간의 대립도 극명했다. ③ 전직 국회의원의 호텔방 사건 ④ 신정아 씨 누드사진 게재사건이 그러하다. 한 신문은 알 권리를 위해 누드 사진을 게재했다고 설명했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법원은 사진게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⑤ 강력 범죄자의 초상공개를 놓고 알 권리와 범죄혐의자 및 그 가족의 인권 보호 주장이 대립했다. 강호순 얼굴 공개 논란이 그러하다. ⑥ 유명한 인물들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저장한 테이프가 입수돼 언론을 통해 보도되려고 하자 피해를 주장하는 진영은 명예훼손과 통신비밀의 보호를 내세워 이를 막고자했다. 알 권리를 이유로 언론은 녹취자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개했다. ⑦ 실무책임 변호사에 의해 삼성그룹의 비자금내역이 폭로되자 상당수 언론사는 보도하기를 외면했으나 일부 언론사는 여러 지면을 동원해 이를 대대적으로 다뤘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자본권력'의 본질과 실상에 대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였다. ⑧ 한 교회 선교단 일행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집단 인질이 됐을 때, 한국 언론은 이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출국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질로 잡힌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었다. ⑨ 국방부가 사회에서 양서로 분류돼 널리 읽히는 책을 포함해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하자 군법무관 5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 측은 알 권리 행사는 충성의 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MBC 김세의 기자는 각 군 사령부가 있는 충남 논산 계룡대 영내 한 주점의 영업실태를 취재·고발했다. 군

4) 김옥조는 언론은 알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고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를 국민의 입장에서서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동안 언론들이 모든 보도에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악을 끼치는 허위·과장·선정 보도에 이를 앞세움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을 산 측면이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옥조 (2005), <미디어법>, 커뮤니케이션북스, p.316).

5) 박용상 (1997), <표현의 자유>, 현암사, pp.56-58.

은 균형법상의 ‘초소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해 1심 유죄의 집행유예 선고, 2심 유죄취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언론은 접근과 공개가 제한된 군 영내에서의 비리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방식의 취재였다고 항변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언론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광고재원의 문제로 인해 지역언론은 고사하고, 따라서, 지역민들이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해 지역정보를 수용,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될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런데 작금의 다양한 사례들 중에 몇 가지는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요한다. 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의 문제점을 제기한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대해 검찰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 등이 공직자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수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방송사와 제작진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를 프로그램화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검찰은 제작진을 체포해 조사하기 전에 중간수사결과 발표형식으로 쟁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 하는 기자회견을 실행했다. 제작진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명예훼손과 피의사실공표와 알 권리 주장이 중첩되었다. ②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언론보도 역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공표, 국민의 알 권리가 복잡하게 뒤엉켰다. 전통적으로 알 권리 논쟁은 국민의 알 권리 대행자를 자처하는 언론과 국가이익을 명분으로 기밀을 유지하려는 국가 권력 간의 문제로 이해돼 왔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오히려 주요 언론과 검찰 권력이 ‘알 권리’ 구현을 위해 공동 협력한 사례라고 비판받고 있다. 입증된 피의사실은 고사하고 단지 추정일 뿐인 혐의사실들이 검찰에 의해 시사콜럼 언론에 제공되고 언론은 이러한 소소한 내용들을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진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대서특필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죄를 일부 면책해 주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 객관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발표, 권한 가진 자의 공식발표, 유죄를 속단케하는 표현의 회피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 국한된다.<sup>6)</sup> ③ 소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알 권리와 명예훼손 논쟁은 언론 스스로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언론 종사자가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현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이다. 정치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다는 이유로 언론사 임직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피소된 것은 언론사가 주장해 온 알 권리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알 권리를 이유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의 진실과 허위 여부를 어디까지 충족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솔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알 권리 논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주장과 맞물려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

6)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판결

이 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침해 간의 최근 갈등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자제시키고자 하는 사례, 또는, 알 권리를 명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알 권리의 실현이익과 명예보호의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법리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행사의 한계

언론학 분야의 고전으로 읽히는 에머슨의 ‘표현자유 체계’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를 4가지로 요약했다. 개별 구성원의 자아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지식을 발전시키고 진리를 발견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 해당 사회의 사결정 과정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한 사회가 환경에 잘 적응해 안정화 될 수 있는 수단이자 건전한 분열과 필요한 합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에머슨은 표현의 자유로 인해 갈등이 촉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갈등은 사회 유지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매우 분명한 것은 표현의 자유 시스템이 힘과 폭력 수단을 동원하는 대신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라고 주장했다. 한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법적인 시스템이라면서 특히 표현의 자유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갈등 조정에 있어서 법적 시스템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sup>7)</sup>

알 권리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알 권리는 사유의 자유 및 의견표현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개인주의적 성격과 민주주의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데, 즉, 알 권리는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초적 욕망을 충족하여 줄 뿐만 아니라 견문과 지식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 사상을 모태로 하지만 개인이 올바른 사상을 갖고 이를 표현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의식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시민 개개인의 행위능력과 결정능력을 전제하는 민주주의적 요구에도 부합한다.<sup>8)</sup> 따라서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에 내재한 권리 속성으로만 제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소의 현상이 만연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알 권리는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권리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고, 또한 알 권리는 적극적으로 인간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알 권리가 표현자유에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더 중점을 둘 수 있고, 또한 알 권리는 인간의 존엄의 실현에 직

7) Emerson, Thomas I. (1970),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New York: Vintage Books, pp.6-14.

8) 박용상(1997), 앞의 책, pp.55-56.

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sup>9)</sup>

사상의 뿌리는 알지 않으나 알 권리 이론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 그 영향력과 활용도에 비해 용어 사용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는다. 1945년 AP 통신사의 쿠퍼 (Kent Cooper) 국장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공중의 알 권리’는 8년 후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법률고문 크로스 (Harold L. Cross)가 그의 저서 「The People’s Right to Know, Legal Access to Public Records and Proceedings」를 통해 수용했다. 독일의 기본법 제5조 1항,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등에 알 권리가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미국이나 한국 등 여러 나라의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sup>10)</sup>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알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알 권리의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서의 위상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sup>11)</sup> 알 권리를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현대 성문헌법의 공통되는 현상이지만 미국과 일본도 헌법해석상 알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본다.<sup>12)</sup> 그렇다면 알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헌법상 어떤 기본권에 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알 권리란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들을 권리’, ‘읽을 권리’, ‘볼 권리’, ‘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서 주권재민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고 인격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현 및 정보수집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구현을 위한 국민기본권의 총체적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인 기본권이다.<sup>13)</sup> 즉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소극적 자유로서의 알 권리이고 후자는 알 권리의 적극적 자유 측면을 함의하고 있다.<sup>14)</sup> 알 권리는 개인권적 성격과 참정권적 성격,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사회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첫째, 국가의 간섭 없이 정보에 접근·수집·수령하는 자유권적 성격, 둘째, 알 권리의 현대적 의미는 자기실현의 가치보다 오히려 자기통치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참정권적 성격, 셋째, 정보원에 대해 정보를 구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며 이를 정보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한다.<sup>15)</sup>

**알 권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구현을 위한 국민기본권의 총체적 권리와  
자유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인  
기본권**

9) 성낙인 (1998),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pp.357-366.

10) 김옥조 (2005), 앞의 책, pp.311-327.

11) 성낙인 (1998), 앞의 책, p.615.

12) 임병국 (1999),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p.110.

13) 임병국 (1999), 위의 책, p.107.

14) 성낙인 (1998), 앞의 책, p.359.

15) 김옥조 (2005), 앞의 책, pp.322-323.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는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 규정 (제21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원리 (전문 및 제1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10조),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1항) 등에 포괄적으로 근거를 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도 1989년 알 권리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재는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가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거나 입수 또는 전달할 자유를 갖는다’고 하여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알 권리를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라고 규정했다.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고, 다른 한편,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권을 구할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라 할 것이라며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 (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sup>16)</sup>

나아가 현재는 1991년 90헌마133결정에서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고 판시하고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 획득’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알 권리의 실행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임을 확인하였다.<sup>17)18)</sup>

그렇다고 언론사들이 취재편의상, 혹은,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표리부동하게 내세우는 것처럼 알 권

16) 현재 1989.9.4.선고 88헌마22결정

17) 현재 1991.5.13.선고 90헌마133결정

18)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힘입어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은 이미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 법률 제3347호로 제정된 동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였다. 제6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언론의 청구가 있을 때에 공익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매우 추상적이고 폭넓은 단서조항을 두어 정보공개를 제한하였다. 한편 동법은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가 표현자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을 두었다. 바로 제8조 ‘취재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언론인은 그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6조의 정보공개 규정처럼 단서가 많아 실질성이 부족했고 실제 이 규정에 의해 취재원을 은닉하는 법적 혜택을 누린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는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인가? 아니다. 알 권리 역시 헌법유보(제21조 제4항)와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매우 비중이 큰 귀중한 국민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알 권리라 할지라도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사회적 법익과 상충 또는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즉 타인의 명예나 권리(개인적 법익),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사회적 법익),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치안질서(국가적 법익)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헌법의 명문규정(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sup>19)</sup> 다만, 여러 특별법에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제한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 등 개념이 넓은 기준에서 일보 전진해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알 권리 침해라는 해악을 비교형량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sup>20)</sup> 알 권리(내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sup>21)</sup>

### 3. 최근 사례를 통해서 본 명예훼손과 알 권리 갈등 쟁점의 함의

알 권리와 갈등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제기되었지만,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해 논란이 돼 온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 권리 행사의 본질과 한계가 갖는 쟁점에 대해 다뤄보기로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수사사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모 일간지 임원 실명거론 사건, 소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공표와 알 권리 주장 간의 논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MBC PD수첩 사건에서 해당 언론사는 이 프로그램이 정부의 미국산 수입쇠고기 전면수입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농식품부장관이나 협상대표단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사생활침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알 권리 행사의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2008년 7월 29일 '중간수사발표' 형식의 '자료제출요구'를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 역시 헌법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

19) 현재 1992.2.25.선고 89헌가104결정

20) 현재 1989.9.4.선고 88헌마22결정

21) 현재 1992.2.25.선고 89헌가104결정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사는 내사 단계의 비공개원칙을 위반하고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서 기반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9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표현 내용이 공적인 관계에 관한 것인지,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사적인 것들과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할 경우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의 인격권이 우세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일 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적 사안 혹은 알 권리의 대상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억제할 경우 언론의 자유는 위축·질식되고 이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의 형해화를 결과한다고 판시했다.<sup>22)</sup> 언론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해 형사벌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법을 해석할 때는 헌법적 요청을 고려하여 첫째, 진실입증이 없어도 진실오인의 상당성이 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요건은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해 적용범위를 넓힐 것, 셋째,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며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서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해 행위자의 비방목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의 알 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 즉, 알 권리의 대상은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언론매체가 실행하는 알 권리는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sup>23)</sup>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는 통치권자를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이유에서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일컬어진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결정에서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정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고 권력자가 오류를 범한 경우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판시했다.<sup>24)</sup>

헌법재판소의 1999년 결정의 취지는 2002년 1월 22일 대법원이 선고한 2000다37524, 2000다37531 판결에 반영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25)</sup> 나아가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언론의 감

22) 헌재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23) 헌재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24) 헌재 1992.2.25.선고 89헌가104결정

25) 대법원 2006.5.12.선고 2004다35199판결; 2006.3.23.선고 2003다52142판결; 2004.2.27.선고 2001다53387판결; 2003.7.8.선고 2002다64384판결; 2003.7.22.선고 2002다62494판결; 2003.1.24.선고 2000다37647판결; 2003.9.2.선고 2002다63558판결

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sup>26)</sup>

대법원과 현재는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판시했지만,<sup>27)</sup>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sup>28)</sup> 얼핏 미국 명예훼손법 상의 ‘현실적 악의’ 원칙의 취지와 유사한 ‘허위의 인식’ 혹은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 등이 PD수첩 사건의 형사벌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겠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들이 전직 장관 등 개별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명예훼손 행위가 기존의 현재결정,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볼 때 면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등은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1989년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알 권리를 표현의 자유에 내재한 기본권이자 행복추구권,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현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이후 그러한 원칙이 지속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결정과 관련된 언론의 비판내용을 특정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정책결정과 관련된 언론의 비판내용을  
특정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둘째,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신문사 임원의 실명을 국회 대정부질문과정에서 거론한 행위에 대해, 해당 신문사는 실명을 거론한 현역 국회의원 등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나아가 이종걸·이정희 두 의원에게 각각 10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sup>29)</sup> 일반적인 명예훼손 소송과는 달리, 현역 정치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표한 반면, 해당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구제를 요청한 경우이다. 알 권리와 명예훼손 간의 분쟁 사건이나 피해자가 언론사 임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신문사는 4월 25일자 A1, A8, A9면 그리고 사설에서 경찰이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자사 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해당 신문사는 두 의원이 팩트 조차 확인되지 않은 괴문건의 내용을 공표하면서 ‘면책특권’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가림막 뒤로 숨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신문사 임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 등을 악의적인 명예훼손 공격으로 규정하고 악의적 세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졌다고 밝혔다.<sup>30)</sup> 사설에

26) 대법원 2006.5.12.선고 2004다35199판결; 2003.1.24.선고 2000다37647판결; 2003.9.2.선고 2002다63558판결

27) 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현재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28) 현재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29)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4130189&top20=1>)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413500006>) ; (<http://www.mediagaon.or.kr/jsp/search/SearchKindsView.jsp>).

30) 서울민사지법 1990.9.5.선고 89가합51612판결

서 거명된 언론사는 KBS, MBC, 한겨레,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등이다.

문제가 된 신문사의 고위 임원을 공적인물로 볼 수 있는가?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전국단위 일간지의 논설위원 재직자는 증견언론인으로서 ‘공인’이라고 규정되었다.<sup>31)</sup> 언론사의 설립목적이나 감시와 비판, 여론형성 등의 사회적 역할에 비취볼 때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는 공인 또는 공적 존재로 볼 수 있다.<sup>32)</sup> 또한 그동안의 언론소송 사례들이나 공인과 관련한 여러 문헌이 제기하는 판단 기준에 의거할 때 국내에서 가장 저명한 일간지의 고위 임원은 공적인물로 간주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발표를 통해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된 이 임원의 ‘연루의혹’ 보도는 해당 신문사의 주장처럼 ‘악의적인 명예훼손 공격’으로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거나, 혹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어 면책될 것인가?

최근 들어 급증한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꾸준히 언론사 간의 상호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sup>33)</sup> 이를테면 대법원은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일 경우,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sup>34)</sup> 또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에 비취볼 때 언론사들 사이에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적인 과장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sup>35)</sup> 언론사 간의 의혹제기나 상호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의 면책 범위를 확장한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sup>36)</sup>

한편 학술적인 논의의 측면에서도 알 권리가 정부가 소유한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미디어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는 주장은 오래되었다. 홍성찬(1978)은 국민의 알 권리가 필연적이고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기완성이라는 자유권적 개인권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능동적인 권리

31) 서울민사지법 1990.9.5.선고 89가합51612판결

32) 성낙송, “언론판례상 면책법리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2008년 겨울호, p.35.

33) 성선제, “2008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 동향”, <언론중재>, 2009년 봄호, pp.72-82.

34) 대법원 2006.3.23.선고 2003다52142판결

35) 대법원 2008.2.1.선고 2005다8262판결

36) 대법원 2008.2.14.선고 2005다75736판결; 2008.4.24.선고 2006다53214판결

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알권리의 대변자인 미디어 역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sup>37)</sup> 안용교(1982)도 알권리가 정부정보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국민 상호 간의 알권리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허친스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소수 매스미디어에 의해 여론정보의 유통이 독과점 돼 있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제약이라고 파악했던 관점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sup>38)</sup> 조규하(1962)가 그러하고, 알 권리를 언론 매개체와의 참여와 활용의 권리, 매스미디어를 접하지 않을 권리로 파악한 장용(1969)의 견해가 그러하다.<sup>39)</sup> 국민의 알 대상으로서 특히 언론기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고도의 조직체라는 성격에서 볼 때 언론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가운데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단히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언론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에 응할 책임이 있고, 국민은 언론기관에 객관적인 보도를 요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다.<sup>40)</sup>

언론매체 상호 간의 비판을 폭넓게 허용해 온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언론매체에 대한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기존 학설에 비취볼 때, 성낙송(2008)의 주장처럼 ‘언론사 간의 상호비판 내지 감시활동은 언론이 하나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의 현실에서 언론계 내부에서의 자율규제와 통제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sup>41)</sup>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것이 한국 연예산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리스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한국 사회의 최고위 엘리트 그룹이었다는 점에서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그동안 유지해 온 언론사 간 상호비판의 면책 법리가 적용될지 민형사상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언론사 간의 상호비판 내지 감시활동은  
언론계 내부에서의 자율적규제와  
통제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셋째, MBC PD수첩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수사사건에서 나타난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죄,<sup>42)</sup> 그리고 명예훼손의 문제이다. 비판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확인, 입증되지 않은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검찰이 세세한 피의사실까지 공표한 법적 책임이 있고 더불어 언론은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MBC 프로그램 제작진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형식의 ‘자료제출

37) 홍성찬 (1978),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제9집, pp.49-63.

38) 안용교 (1982), “국민의 알 권리”, <신문연구>, 겨울호, pp.22-42.

39) 엄기열 (2003), “알 권리의 개념적 가능성과 한계”, <언론과 법>, 제2호, pp.418-420 재인용: 장용 (1969), <언론과 인권: 한미언론법과 판례의 비교연구>, 선명문화사.

40)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억제는 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억제방법 또는 소극적인 정보비닉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정보비닉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언론기관 자체에 의한 정보비닉은 자율규제 및 정보의 확실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언론기관의 자율규제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적 검열에 필적할 정도로 언론자유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기관의 자율규제나 정보비닉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 즉 검열기능·대행을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봉사자로서 언론기관의 역할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론기관에 대한 액세스운동이 필요하다 (임병국 (1999), 앞의 책, p.117).

41) 성낙송 (2008), 앞의 논문, pp.23-35-36.

42)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정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요구'가 내사단계의 비공개원칙을 위반하고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언론보도를 예상하고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특정인, 특히, 공적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용인되는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의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피의사실의 공표가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한다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감독자·보조하는 자에게 적용되지만 이진국(2002)은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피의자, 범죄관련자의 초상 또는 실명을 언론에 공개하여 보도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종사자와 언론인에게 모두 제126조의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비신분자인 언론인에게도 수사업무 종사자와 함께 공동정범, 방조범, 교사범의 책임이 귀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sup>43)</sup> 다만, 이 죄는 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수사업무 종사자의 협조 없이 언론인이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혐의사실을 들춰낸 경우, 즉 정범인 수사업무 종사자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례에서는 언론인에게 이 죄책을 귀속시킬 수 없다.<sup>44)</sup>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죄는 법의 실제에서 아무런 규범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 이유는 동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자가 수사기관 자신이기 때문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법실무에서 무시되기 때문, 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언론기관의 보도경향과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용적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sup>45)</sup>

대검 훈령 제59호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은 수사사건에 관하여 준칙이 정하는 공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수사사건의 공개를 금지하면서, 다만, 제3조에서 '국민의 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등 몇몇 경우에는 수사사건을 공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4조에서 수사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도 '공개될 경우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기타 참고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공보의 한계를 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사회의 제반 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의 방법

43)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44) 이진국 (2002).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36-142.

45) 이진국 (2002), 위의 책, p.140.

임을 인정하고 있다.<sup>46)</sup> 동시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피의자나 피해자, 그 주변 인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입각해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일 것, 둘째,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사실발표에 한정할 것, 셋째,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할 것, 넷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할 것 등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sup>47)</sup>

동시에 대법원은 언론기관이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는 첫째,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둘째,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셋째,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sup>48)</sup>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범죄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명예 등 인격권 보호 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실질적인 기준마련책이 시급**

공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그리고,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보도 역시 면책의 범위에 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규범력을 상실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보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더불어, 피의자단계에서 언론에 의한 범죄혐의사실의 과장, 추측, 선정적인 보도가 가져오는 해악을 고려할 때 범죄보도에 대한 저널리즘 차원의 각성과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법제도가 법원의 공판정에서 변론을 통해 겨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범죄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명예 등 인격권 보호 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실질적인 기준 마련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법적인 조정장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널리스트들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의 실천이라고 하겠다.



46)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판결; 2002.9.24.선고 2001다49692판결

47)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판결; 2002.9.24.선고 2001다49692판결

48)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판결

## 2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책임

### I. 들어가며

언론은 여론의 형성을 촉진하여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자유 민주국가에서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으로서 공정보도·진실보도라는 공적 책임을 수행한다. 또한 언론의 사회 감시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취재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세상에 알리거나 제3자의 제보를 통해 사회고

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비리의 은폐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언론은 이러한 자신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기수집정보에만 의존할 수 없고 때로는 제3자의 제보에 의하기도 한다. 이 경우 언론의 사회감시기능에 촉매역할을 하는 익명의 제보자인 취재원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기자가 취재하려는 뉴스 및 정보가 보유되어 있는 원천으로서의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취재원묵비권 내지 취재원비닉권이 논의된다. 취재원묵비권은 언론매체의 종사자로서 일정한 정보를 수집한 자가 자신이 수집한 정보의 출처(정보내용 또는 정보제공자의 성명 등을 비밀로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언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언론의 진실보도·사실보도 및 공정보도를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sup>1)</sup>이다. 그러므로 취재원의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재원의 봉쇄효과(Spernwirkung)를 가져오게 되어 언론이 진실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sup>2)</sup>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의 진실보도·공정보도와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가치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취재원의 보호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사법정의가 무시된다. 반대로 취재원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언론의 진실보도와 사회감시기능의 부재로 인한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에 역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PD 수첩' 보도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원본 테이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시도한 언론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일부 언론인들의 반대와 비판으로 취재원 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sup>3)</sup>

### 조 재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 전, 독일 쾰른대학교 초빙연구원

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549면.

2) Herzog는 신문종사원의 증언거부권 이른바 취재원묵비권과 같이 신문의 공적인 과제로부터 신문을 특권화하려는 시도는 단연코 거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R. Herzog, in:Maunz/D?rig/Herzog/Scholz, GG-Kommentar(Loseblatt, 1588-2000), Art 5, RN 122.

일반적으로 취재원 보호의 문제는 언론종사자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논제로서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언론사의 압수·수색의 문제도 취재원보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취재원 보호에 관한 논의에서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의 대표적 판례에서도 이미 문제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취재원 보호의 의미와 그 인정여부에 관한 우리나라 및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취재원의 보호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설정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II. 취재원 보호의 의의와 인정여부

### 1. 취재원 보호의 범위

취재원묵비권의 보호대상은 언론인이 작성한 취재원이다. 취재원이라 함은 기자가 취재하려는 뉴스 및 정보가 보유되어 있는 원천으로서 이는 취재의 대상이 되는 뉴스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적취재원과 사건이 발생한 현장 자체를 일컫는 비인적취재원으로 구별하기도 한다.<sup>4)</sup> 통상 취재원 보호에서는 인적취재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인적취재원의 경우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 성명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취재원의 주소 등 일체의 사항이 포함되는가와 관련하여 취재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취재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취재원 보호권이 적용되는 것<sup>5)</sup>으로 보아야 한다.

인적취재원의 보호문제는 주로 취재원에 관한 증언이 강제되는 상황 또는 취재원과 관련된 보유정보 등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것이 전형적인 취재원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증언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 이외에 수사기관이 언론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취재원의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취재원보호권의 범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최근에 'PD 수첩' 보도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원본 테이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시도한 언론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사례나, 과거 청와대소속 공직자의 항응집대과정을 비밀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익명으로 방송국에 제보·방영하자 검찰이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국에 대한 압

증언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 이외에 수사기관이 언론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취재원보호권의 범주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

3) 'PD 수첩' 사건 이전에도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 시도는 있었다. 검찰은 2003년 8월 SBS의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물레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원본 테이프를 확보하겠다고 SBS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2007년 7월엔 고 최태민 목사 관련 보고서를 신동아가 보도한 경위를 밝히겠다는 이유로 동아일보 본사 전산실의 중앙 서버에 보관된 신동아 기자의 전자우편 계정 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언론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결국 압수수색은 포기하고 말았다. 다만 언론사가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문제가 일단락 됐을 뿐 본질적인 논란은 해결되지 못했다.

4) 지성우, "언론기관의 취재원보호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5권 제2호, 2003, 16면.

5) 지성우(주 4), 17면.

수·수색영장을 실행하게 된 사례 등에서 이것이 문제된 바 있다.

취재원 보호의 양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사가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 취재원비닉과 취재원식별이 가능한 문서나 녹음영상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변하는 일 등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sup>6)</sup> 생각건대 수사기관이 취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장소나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취재원보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목적이 취재원의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 2. 취재원 보호를 위한 증언거부권의 인정여부

### (1) 판례의 경향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판례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리크게이트(Leak Gate)라 불리는 사건은 취재원의 보호문제를 다시 촉발시킨 가장 최근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리크게이트 사건<sup>7)</sup>은 범죄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특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였다. 이 사건에서 특별검사는 취재원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Matthew Copper기자와 Judith Miller기자가 취재원의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하여 법정모독죄로 기소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Copper기자와 Miller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워싱턴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이전의 연방대법원이 내린 Branzburg v. Hayes사건<sup>8)</sup>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다.<sup>9)</sup>

Branzburg v. Hayes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취재원 보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연방 대배심 앞에서 기사가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기자들도 대배심의 증언요구나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10)</sup>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기자들의 특권이 절대적인 특권이 아닌 조건부 특권, 즉 기자들의 보유정보가 범죄와

6) 유의선, “취재원 보호의 적정범주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7권 4호, 2003, 80면.

7) Miller v. U.S. 545 U.S.1150; Copper v. U.S. 545 U.S.1150(2005).

8) Branzburg v. Hayes, 408 U.S. 665(1972). 사건의 개요를 보면 1969년 11월 15일 Louisville Courier-Journal의 기자인 Paul Branzburg는 Kentucky 주의 Jefferson County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있는 두 청년에 대한 상세한 관찰기사를 동시에 게재하였다. 그 기사는 작업대 위에서 마약을 제조 중인 양 손의 사진도 함께 실였으며, 기자가 그들의 신원을 비밀로 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Kentucky 주에서는 허가 없이 마약을 제조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벌금 및 구류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Jefferson County의 대배심은 Branzburg를 소환하여 그 두 청년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ranzburg는 기자의 증언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Kentucky 주의 보호법규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Kentucky 주 항소법원은 취재원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주 법규가 정보를 제공한 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기자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신원이나 개인적으로 관찰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그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9) 리크게이트 사건의 소송진행 상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성/한상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취재원보호,-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제17권 제3호, 2005. 12, 53면 이하 참조.

10) 408 U.S. 665, 668, 682-683.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압도할 수 있는 경우에 특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으로 증언을 위해 출두해야 할 상황이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또는 어떠한 경우에 증언을 위해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며,<sup>11)</sup> 증언거부권이라는 특권을 인정하여 그 특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시하였다.<sup>12)</sup>

그렇지만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의 경우와 달리 기자의 특권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이 워터게이트의 전국위원회본부에 침입한 사건을 취재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기자 등의 취재수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v. McCord 사건<sup>13)</sup>에서 법원은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기자들의 특권을 인정하면서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의 발부요구를 각하 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신문기자가 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었으나, 2006. 5. 25.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지적하는 기사에 한해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일본 법원의 결정<sup>14)</sup>이 있었으며, 2006. 10. 3. 일본최고재판소는 NHK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건강식품회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취재원의 보호를 직업윤리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취재방법이 일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취재원의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재원과 의 신뢰관계가 깨져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취재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에서 원칙적으로 증언의 거부를 인정하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다.<sup>15)</sup>

**최근 일본최고재판소는 취재방법이 일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취재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에서 증언의 거부를 인정하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결정**

## 2) 입법례

취재원의 보호에 관하여 독일은 연방형사소송법(SiPO) 제53조 제1항 제5호<sup>16)</sup>와 연방민사소송법(ZPO) 제

11) 408 U.S. 665, 702.

12) 408 U.S. 665, 704.

13)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v. McCord, 356 F. Supp. 1394(1973).

14) 연합뉴스 2006. 5. 26.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미국 건강식품회사 일본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보도를 둘러싼 소송에서 월간지 ‘데미스’의 사장 및 편집장의 증언거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같은 보도를 했던 요미우리(讀賣)신문 기자에 대해 “공무원이 비밀준수의무에 위반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게까지 취재원 보호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은폐”라며 증언 거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결정도 취지는 유사했다. 그러나 공적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부정행위를 폭로하는 경우에는 “정보 게시자를 보호하는 한편 부정의 책임을 따지고 재발을 막기 위해 (누설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월간 ‘데미스’는 지난 2002년 10월호에서 ‘일본 국세청이 미국기업에 굴복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국세청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국세청은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도했다.

15) 연합뉴스 2006. 10. 21.

16) 연방형사소송법(SiPO)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기타 방송의 준비, 제작, 배포 또는 배포에 직업적으로 참

383조 제1항 제5호<sup>17)</sup>에서 증거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만 언론종사자나 언론기관에 직업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에 의하여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방형사소송법과 연방민사소송법에서 증거거부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의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벌금이나 구류 등의 위협을 통하여 정보원 제공자의 성명이나 정보내용을 밝히도록 증인이 강제된다면 언론의 활동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원의 유입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수집(Informationbeschaffung)의 자유의 헌법적인 보장은 증거거부권의 인정 없이는 불가능하다<sup>18)</sup>라는 고려 하에 언론기관 종사자의 증거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 (3) 소결

언론기관에 소속된 기자 등 언론인이 취재원이나 보유정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독일과 같이 연방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론기관 종사자들에게 증거거부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증거거부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과연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증거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만약 증언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것이 실정법 위반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법정모독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판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자 등 언론기관종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sup>19)</sup> 외에는 특별한 형사법적 제재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재판에서의 법적 불이익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불이익에 대한 심리적 불안은 기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적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기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 등 형사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재원보호권의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보유정보 내지는 정보제공자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형사사법정의와 취재원을 묵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정의라는 공익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형량의 결과에 따라 증거거부권이라는 특권의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논문 기타 기록의 저작자·전달자·보관자 및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전달에 관하여 그 논문 기타 기록 및 전달이 편집활동을 위하여 문제되었던 범위 내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당화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연방민사소송법(ZPO) 제383조 제1항 제5호에서 언론관련종사자의 증거거부권에 관하여는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5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8) Martin Löffler/Reinhart 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C. H. BECK, 2005, S. 199.

19) 형사소송법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3.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여부

증언이나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외에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취재원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론기관을 수색하거나 편집에 관한 자료를 압수함으로써 편집상의 비밀보장 등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그것이다.

#### (1) 언론사 압수수색에 관한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압수수색이 문제된 사건으로 *Zurcher v. Stanford Daily* 사건<sup>20)</sup>을 들 수 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71년 4월 9일 스탠포드대학에서 일어난 폭력시위에서 시위학생들이 한 구역에서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 9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도 두 명의 신원은 현장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도주했다. 시위가 있던 지 이틀 후에 학교신문인 ‘스탠포드 데일리지(The Stanford Daily)’는 시위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관계당국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그 결과 지방검사는 그 사건의 필름 때문에 데일리지의 사무실을 수색하기 위해서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 영장은 치명적인 무기에 의한 구타를 입증할 범인의 신원과 증거물이 담긴 현상이 아직 되지 않은 필름과 현상이 된 필름이 데일리지의 건물구내에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와 합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발부되었다. 신문사의 사무실은 몇몇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색되었으며 이미 보도된 사진들에 한해서만 조사되었는데 어떤 증거물도 사무실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1971년 5월에 데일리지와 몇몇 직원들은 팔로·알토경찰서(Palo Alto Police Department)의 서장 및 담당 경찰과 지방검사를 상대로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연방지방법원과 항소심에서는 신문사내에서의 수색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는 5 : 3의 다수결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언론사 압수수색에 관한 *Zurcher v. Stanford Daily* 사건에서 다수결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신문사 내에서의 수색은 합헌이라고 판시**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수정헌법 제5조의 형사상 자기의 불리한 진술거부권이라든가 주에서 취재원이나 편집상의 비밀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법도 수정헌법 제4조의 규정 하에서 수색영장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부적절하며, 소유자가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주정부로 하여금 압수나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대의견에서는 신문사편집실에서 경찰이 수색을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신문사의 편집실 수색은 신문사의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을 어렵게 하여 뉴스보도를 위한 정보의 수집이나 편집, 발행 등의 활동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수색의 경우와는 달리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신문사가 보도를 위한 기사와 자료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보도된 자료에 관하여 청문의 기회가 주어지

20) *Zurcher v. Stanford Daily*, 436 U.S. 547(1978).

므로 신문에 대한 소환장의 발부는 허용된다고 한다.

### (2) 언론사 압수·수색에 관한 독일의 사례

독일의 경우에는 언론기관 종사자의 증거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취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론인에게 증언을 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직접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강요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침해로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헌법소원청구인인 공영방송국은 생생한 보도와 추후의 작품제작을 위하여 직원을 시위장소에 보내 시위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시위도중에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검찰이 Izhoe지방법원에 관련자의 수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 그때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필름의 복사본을 요청한 사건이었다. 청구인은 이미 방영된 부분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시위에 관한 전체필름의 수색과 압수를 명하였다. 청구인은 Mainz지방법원에 항고하였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제97조 제5항<sup>21)</sup>에서 출판과 방송 등 언론기관 종사자의 증거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방송국의 편집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편집상의 비밀보장이 문제되었던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53조에 의하여 보호된 정보원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정보의 내용이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자의 증언을 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을 수색하거나 편집에 관한 자료를 압수하는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거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5항에서는 증거거부권의 행사가 정당화되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압수금지를 규정하고 있고,<sup>22)</sup> 동 규정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편집국, 출판사, 인쇄소, 방송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헌이나 그 밖의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거부권의 행사를 직접 강요하지 않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문헌이나 자료 등을 압수하여 그 행사를 방해하거나,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의 자료 등을 수색하는 것은 기본법 제5조의 신문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헌법상의 합리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언론기관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뜻하기 때문에 압수나 수색을 위한 전제로서 긴급하고 절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신중한 사법적인 이익형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sup>23)</sup> 그러나 증거거부권이 인정되는 영역에 있어서 압수나 수색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증거거부권 행사의 주체가 그 대상이 되는 자료 등이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제3

21) 연방형사소송법 제97조 제5항에 의하면 “제5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사람의 증거거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나 편집인, 출판사, 인쇄소 또는 방송국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음향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자기테이프, 그 복사물 기타 표현물에 대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BVerfGE 20, 162, 186ff.

23) Martin Löffler/Reinhard Ricker(FN 18), S. 211; BVerfGE 20, 162, 186ff.

문<sup>24</sup>)에 의하여 압수와 수색이 허용된다.

### (3) 언론사 압수·수색과 취재원의 보호

언론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취재원보호권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헌법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가 논의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형사사법정의를 이유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증거거부권 행사의 주체나 그 대상이 되는 자료 등이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증거거부권이나 압수수색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행법상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해당 영장이 절차상 명백한 흠결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무효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영장의 내용에 대해 그 당부를 가려가며 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5)</sup> 따라서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다면 비록 취재원보호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상의 권리도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기관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을 선택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취재원 보호는 어렵다. 그 때문에 영장의 청구나 발부에 있어서 취재원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집행이 요청된다. 취재원에 대한 제한적인 법집행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불가피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법집행당국은 덜 침해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논의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확보 및 가이드라인 제시에 역점을 두어야**

있으며, 불가피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집행당국은 덜 침해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덜 침해적인 법집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 (4) 취재원 보호의 원칙마련 확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 중 하나가 '취재원 보호'이며,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언론의 자유는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보호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취재원을 묵비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가치로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취재원을 보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재원 보호의 제한사유를 발견하고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취재원 보호라

24)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제3문에 의하면 "증언거부권자가 공범, 범죄비호, 은닉 또는 장물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행위를 통해 제작된 물건, 범죄행위를 행하는데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특정된 물건 또는 범죄행위에서 유래하는 물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압류제한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오양호, "취재원 강제수사는 최후수단이어야", 신문과 방송, 2003. 9. 69면.

는 헌법상의 가치와 형사사법정의와 같은 그것에 대한 제한사유라는 ‘기본권 -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구도로 취재원보호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5) 덜 침해적 방법 선택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에도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선택은 자제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하여 형사절차상의 압수수색 등이 허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의 성격·태양 및 경중이나 증거로서의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이외에 침해적 성격이 보다 약화된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제한적인 영장발급은 언론의 자유의 숨 쉴 공간을 제약하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규명을 위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부하기 전에 협조 공문이나 기자 소환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기사가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고 추정되거나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심각한 상해나 살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 안위 등 실정법에 명시된 중대한 법익을 손상한다고 판단될 때 부득이하게 행해져야 한다<sup>26)</sup>는 주장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한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자료의 임의 제출의 형식을 취하거나 환부조건부 압수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sup>27)</sup> 할 수 있다. 미국 판례의 반대의견에서도 압수수색의 경우와는 달리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언론사가 보도를 위한 기사와 자료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환장의 발부가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덜 침해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6) 취재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필요

미국 법무부는 취재원보호를 위하여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 연방지침을 만들어 각급 수사기관에 하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도 수색을 동반하지 않는 압수집행만을 행하여 가능하면 보도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실무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28)</sup>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현행법상 취재원의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형사실무에서도 취재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법집행당국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의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공익사이의 형량, 대안적 방법에 대한 시도, 언론사와

26) 유의선(주 6), 97-98면.

27) 권창국, “보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 법률신문

28) 권창국(주 27), 법률신문 참조.

의 사전협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 내지는 협상이 실패한 경우 영장발부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1) 비언론출처(nonpress source)로부터 범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2) 기자가 가진 정보가 성공적인 수사에 필수적이어야 하며, 3) 수사기관은 대안적 비언론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어야 한다. 그리고 보도되지 않은 정보 또는 비밀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에 대해서는 면밀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sup>29)</sup>

### III. 맺으며

취재원 보호의 방향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취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히도록 요구되는 경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는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기자 등 언론인을 증언거부권자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과정에서 언론기관 종사자가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형사법적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형사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자들이

**취재원 보호의 방향은 형사사법정의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비교형량이 요구되는 증언거부권과 법집행당국의 덜 침해적인 방법 선택 및 취재원 보호의 일반원칙 마련이 요구되는 언론사 압수수색의 두 가지 문제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보유정보 내지는 정보제공자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형사사법정의와 취재원을 묵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정의라는 공익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형량의 결과에 따라 증언거부권이라는 특권의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문제는 증언거부권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대하여 행해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취재원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는 형사사법기능을 수행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법집행과정에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법집행당국의 의지에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때문에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덜 침해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덜 침해적 방법선택에 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29) 자세한 내용은 이민웅, “취재·보도의 자유의 토대와 한계”,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3. 10, 30면-31면 참조.

# 3 정책비판보도에 대한 정부 대응과 언론의 자유

## I. 서론

언론의 ‘정책비판보도’에 대해서, 특히 그 한계에 대해 글을 시작하면서도 정책비판보도의 한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여기서 말하는 ‘언론’의 보도란 일반 대중의 의사표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가 독자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전달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터이다. 그러면 당연히 언론의 기능, 대중매체의 존재의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건대, 대중매체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이다. 이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치과정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언론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정책비판 보도를 하는데 한계라니, 이 무슨 뜻인가?

일반적으로 권리의 한계를 논할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든다. 헌법 제21조 제4항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한 대중매체의 보도 역시 이러한 헌법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보도의 대상이 정부의 정책이고 보도의 내용이 그러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문제가 개재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 남는 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인데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타인’에 정부를 포함시킬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이므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와 관련해서 헌법 제21조 제4항을 거론할 수 있는 경우란 결국 그러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공무원의 명예나 권리가 당해 보도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거칠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따지고 보면 이는 공무원에 대한 명예 등 권리의 침해 문제로 압축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명예훼손”이 별도의 소주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 명예훼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

이런 연유로 이 글에서 필자는 보도의 자유의 한계로서의 명예훼손을 직접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하여 정부가 취하는 대응방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정부 또는 정부

김 종 서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배재대학 법과대학 학장

공무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하여 어떤 식의 대응을 취해 왔는지, 그러한 대응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결정들이 내려져 왔는지, 그러한 대응방식은 보도의 자유를 포함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정부 정책비판보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과 문제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식은 다양하다. 대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을 열거해 본다면 수용, 무시, 보도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 일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은폐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보도를 한 언론사나 보도주체(기자, PD 등)를 상대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 등이다. 수용, 무시, 왜곡, 은폐 등은 모두 사실적인 행위이며 이것이 위법적 수단을 포함하지 않는 한 법적 평가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언론을 상대로 정부가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경우이며, 이는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그 수단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책비판보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형태로는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잠정적으로) 그것을 막는 가처분신청, 반론보도 청구, 보도의 내용이 명예 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전적 대응으로서 방송금지가처분과 사후적 대응으로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의 문제만 다루기로 한다. 방송금지가처분과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사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로 인하여 보도가 갖는 비판의 힘이 감소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언론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위협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반론보도가 정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위축시킨다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론보도를 따로 다루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의 방송금지가처분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민·형사소송은 언론사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 야기**

### 1. 사전적 대응 : 보도금지가처분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경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1998년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의 ‘길 잃은 목사’에 대하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후 본격화되었다고 한다.<sup>1)</sup> 그러나 김태수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사건

1) 김태수, “방송금지가처분의 헌법적 한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6권, 2008, 55쪽.

은 모두 11건인데, 그 중 정부가 제기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즉 강남의 뇌물커넥션에 관한 서울 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강남구청이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그것이다.<sup>2)</sup>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부(공무원)가 신문이나 방송의 특정한 보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이나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마도 이는 정부가 나서서 언론의 보도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을 시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방송금지가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 계기를 정부가 제공할 경우 결국 정부에 의한 검열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sup>3)</sup>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정 보도의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예는 드물지만, 강남구청의 예에서 보았듯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방송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그러한 법원의 판결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판시한 바 있다.<sup>4)</sup>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행정권이 아닌 사법권이 표현물의 공표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sup>5)</sup> 또한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검열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헌법재판소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 허가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강제수단의 존재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방송금지가처분은 법원이 판결로 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검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검열의 주체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라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의 가능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사법부가 주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이 검열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sup>6)</sup>에는 문제가 있다.<sup>7)</sup> 헌법재판소가 방송금지가처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

2) 이 신청은 기각되었다. 서울남부지법 2001.5.11자, 2001카합1099 결정.

3) 실제로 미국산쇠고기수입에 대한 PD수첩의 보도와 관련하여 수사의뢰를 하고 나중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했던 정은 현 장관이나 민동석 차관보도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4) 2007.10.4. 선고, 2004헌바36 결정; 2006.10.26. 선고, 2005헌가14 결정 등.

5) 2001.8.30. 선고, 2000헌가9 결정.

6) 헌법재판소 2001.08.30, 2000헌바36 결정. 사실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에 대하여 처음으로 정의를 내렸을 때에는 “정신 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발표 이후의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1996.10.4. 선고, 93헌가13 결정), 2000헌바36 결정에서는 표현물의 발표 이전의 가처분도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7) 동지: 김태수, 앞의 글, 52-53쪽.

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다른 국가기관보다 사법부의 판단을 더욱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8)</sup>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 (중략) …… 바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인격권의 내용 및 그 침해 정도, 두 가치 사이의 비교·형량 등 사전금지청구권에 관한 여러 가지 요건을 법원이 엄격히 심사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sup>9)</sup>

그러나 법원에 의한 보도금지처분 인용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과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보도금지처분이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청구가 없으면 발동될 수 없는 사법의 속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것뿐이지 일단 신청이 된 후의 절차는 행정권에 의한 심사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권이 가처분의 계기를 제공하고(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인용)에는 행정권이 사법권의 이름을 빌려 사실상의 검열을 행하는 것이라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sup>10)</sup>

**방송금지처분이 행정권에 의한 일방적인 검열이 아니어서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 있어**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방송금지처분이 행정권에 의한 일방적인 검열이 아니어서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sup>11)</sup> 이 경우 전면적 방송금지처분과 부분적 방송금지처분을 구분하여 전면적 방송금지처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함과 아울러, 보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차등적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정치인에 대한 보도프로그램의 방송금지처분은 고도의 소명을 거쳐야 하고 전면적 방송금지처분을 하면 방송매체의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종교적 지도자와 같은 일반적 공인의 경우 일반적인 소명만으로도 방송금지처분을 할

8) 김태수, 앞의 글, 54쪽.

9) 2001.8.30. 선고, 2000헌가9 결정. 강조는 인용자.

10) 특히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도보다는 사법 행위나 결과에 대한 비판으로 오히려 국민의 공정한 재판(수사)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보도가 주로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보면, 이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성욱, “사법 보도와 표현의 자유 범위에 관한 연구: 판검사가 제기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5호, 2008.10, 440쪽.

11) 동지: 김태수, 앞의 글, 53-54쪽; 장호순,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언론중재』 제23권 제3호, 2003년 가을, <[http://www.pac.or.kr/webzine/23\\_autumn/contents/sub\\_1.html](http://www.pac.or.kr/webzine/23_autumn/contents/sub_1.html)>, 검색일: 2009. 6. 7.

수 있으며 사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보도의 대상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소명만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sup>12)</sup>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이긴 하지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검열 개념의 핵심은 표현물 발표 전에 행해지는 사전심의라는 데 있지 사전심의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사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방송금지가처분은 비록 본안판단이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취해지는 처분이긴 하지만 표현물이 외부로 발표되는 것을 국가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가처분이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물의 발표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한 그 본질은 방송내용을 이유로 한 사전제한, 즉 검열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가처분에 방송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인격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 2. 사후적 대응 : 명예훼손 소송

다음으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당해 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법 제309조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다.<sup>13)</sup> 최근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는 농림수산물부의 정운천 전 장관이 MBC의 PD수첩 내용과 관련하여 담당 PD 등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 이전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전자는 정부의 미국산쇠고기수입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의 책임부서인 농림수산물부(장관)와 외교통상부(차관보)가 문제된 경우인 반면에, 후자는 보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PD수첩 보도의 경우 그 내용이 직접 정운천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부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장이 명예훼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sup>14)</sup>

12) 김태수, 앞의 글, 69-70쪽.

13) 한국의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은 1997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고, 공인들에 의한 제소가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소송가액도 날로 고액화하는 양상이라고 한다. 차용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한계”, 『한국언론학보』 제45권 제2호, 2001년 봄, 388쪽.

14) 명예훼손소송과는 달리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현행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이는 반론보도에도 준용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장이 기관을 대신하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법에서는 정부기관에게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중요성 때문에 정부기관의 명예훼손 소송을 금하는 판례가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시정부, 모든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및 심지어 공법인까지도 명예훼손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강력한 입장이다.<sup>15)</sup>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미국 사법시스템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한 City of Chicago 사건에서 주법원이 한 판시<sup>16)</sup>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업무에 관련한 비난에 대하여 담당관리들에 대한 개인적 명예훼손으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sup>17)</sup> Rosenblatt v. Baer 사건에서도 거듭 같은 입장을 밝혔다.<sup>18)</sup>

이러한 미국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보도에 대해 정부기관이나 기관의 장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사명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PD수첩의 보도가 정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언론을 대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중 언론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한 비율이 72.7%에 이르렀고, 특히 공직자의 승소율은 91.6%로 더욱 높아, 미국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sup>19)</sup>

**미국대법원이 ‘공인’ 또는 ‘현실적 악의’ 이론을 통하여 공직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한 것은 언론의 활발한 정부감시와 비판을 장려하기 위한 것**

한편 정부의 공직자에 대한 개별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공인 이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관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확립된 소위 ‘공인’(public figure) 이론 또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이론이 적용되어 왔다. 즉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실적 악의란 보도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혹은 진실이 아니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보도하여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다. 이 경우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언론사가 아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게 요구함으로써 언론사에게 지워지는 법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sup>20)</sup> 미국 대법원이 이 이론을 통하여 공직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한 것은 언론의 활발한 정부 감시와 비판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1)</sup>

15) 배금자,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통권 83호, 2002년 여름, <[http://www.pac.or.kr/webzine/contents/sub\\_1\\_02.html](http://www.pac.or.kr/webzine/contents/sub_1_02.html)>, 검색일: 2009.6.7.

16) City of Chicago v. Tribune Co., 307 Ill. 595, 601, 139 N.E. 86, 88(1923).

17)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 S. 254, 292(1964).

18) 383 U. S. 75, 81(1966).

19) 장호순, “언론자유와 명예훼손”, 『한국언론학회 200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1, 248쪽.

20)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 S. 254(1964).

21) 장호순, “언론자유와 명예훼손”, 252쪽.

이러한 공인 이론은 오늘날 한국 언론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그것은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명예훼손 제도들이 언론의 권력 감시 및 비판 기능에 매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2)</sup> 반면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 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인 이론을 거의 외면해 왔다.<sup>23)</sup> 즉 법원은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공익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사에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sup>24)</sup> 특히 법원은 1999년과 2000년 상반기 공직자와 정치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10건 모두에서 언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언론의 공익적 기능 대신, 공인의 명예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sup>25)</sup>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여 취급한다는 판례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였는데,<sup>26)</sup> 그 후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법원에 의해서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sup>28)</sup> 그러나 법원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언론매체에 있고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sup>29)</sup> 그러면서도 법원은 최근 사법제도 관련 소송에서 공적인 사인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sup>30)</sup> 엄격하게 입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증부담 완화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sup>31)</sup>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법원이 미국의 공인 이론이나 현실적 악의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인의 경우에는 구별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2)</sup>

이처럼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변경된 판례에 의하더라도 입증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즉

22) 차용법, 앞의 글, 389쪽.

23) 차용법, 앞의 글, 390-391쪽.

24)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여부에 대한 문의를 전혀 하지 않고 무시의 경우에만 상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07 판결.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여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36329 판결; 1997.9.30. 선고, 97다24207 판결; 1998.5.8. 선고, 97다34563 판결.

25) 차용법, 앞의 글, 391쪽.

26) 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 결정.

27)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3.7.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7.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8)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19038 판결; 2002.5.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29)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998.5.8. 선고, 97다34563 판결; 1997.9.30. 선고, 97다24207 판결; 2005.1.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2003.9.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30) 대법원 2003.7.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7.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5.1.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2003.9.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31) 윤성욱, 앞의 글, 434쪽.

32) 김선택,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적 인물이론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원칙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3권, 2004, 189쪽.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공공성’, ‘진실성’ 및 ‘상당성’ 요건 등 위법성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 언론매체가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sup>33)</sup> 그 결과 공직자의 경우 이들이 공인으로서 사회적 비판을 감내해야 하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보다는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일반 사인보다 ‘높은 지위’에 대한 권리를 오히려 더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4)</sup>

나아가 또 하나의 문제점은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진실한 언론보도<sup>35)</sup>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적 처벌이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 논의되듯이 진실성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는 완전한 면책규정을 둠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더욱 비중을 두는 입법이 요망된다.<sup>36)</sup>

언론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사상으로뿐만 아니라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현재 PD수첩 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기로 한다.

### III. 정책비판보도에 대한 정부의 형사법적 대응 : 명예훼손죄

**진실한 언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적 처벌이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성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는 완전한 면책규정을 두어야**

무엇보다도 먼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규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헌법 제21조 제4항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형사책임을 추궁까지도 과연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추 체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 소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sup>37)</sup>

33) 김선택, 앞의 글, 191쪽.

34) 윤성욱, 앞의 글, 441-442쪽.

35)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언론사의 진실보도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504쪽;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985-986쪽; 성낙인, 「헌법학」(제9판), 법문사, 2009, 523쪽; 장영수, 「헌법학」(제2판), 홍문사, 2007, 678쪽.

36) 김선택, 앞의 글, 212쪽.

37) 이에 관해서는 언론자유 수호를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인 ‘Article 19’이 제시한 ‘명예훼손의 정의’(Defining Defamation)가 참조할 만하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소송 금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송의 즉각 폐지 또는 민사소송으로의 대체, 형사소송이 유지되는 경우 사유, 입증책임, 제조주체, 제재방법 등의 엄격한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Article 19, “Defining Defamatio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Reputation”, 2000. 7, <<http://www.article19.org/pdfs/standards/definingdefamation.pdf>>, 검색일: 2009.6.7.

민법 제751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포괄적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즉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사실과 더불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PD수첩 보도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제309조 제1항의 경우와 제2항의 경우 법원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검찰로서는 상대적으로 제2항의 입증이 더 쉽기 때문일 것이다. 제309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 신문광고를 게재한 사실, …… 이러한 신문광고의 기재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며, 그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이고, 피고인에게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sup>38)</sup>

위의 판례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PD수첩 보도의 경우 핵심적인 관건은 그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그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피해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가해자]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

38) 대법원 2007.7.13. 선고 2006도6322 판결. 강조는 인용자.

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료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sup>39)</sup>

이 판결에 의하면 보도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 의무를 언론사에게 부담시키고 검사에게는 그러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부존재의 증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라면 몰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형사소송에서 이처럼 범죄의 증명을 해야 할 검사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넘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sup>40)</sup> 그러나 언론보도의 내용은 어느 정도 진실성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고 보면(진실보도의무), 진실성에 대한 착오의 경우 행위당시 의무합치적 심사를 이행했는가 여부가 위법성조각의 기준이 된다는 견해는 수용할 만하다.<sup>41)</sup> 이에 따르면 보도를 하기 전에 자료내용의 진위에 대한 조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당성 요건에 대하여 면책되고, 그 대신 허위보도라는 부분, 즉 진실성이 없었다는 입증책임만 피해자인 공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판례에 따르자면, 결국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PD수첩 측에서 제시하는 소명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어떤 경우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판례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sup>42)</sup>

이에 따르면 PD수첩의 보도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39)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915 판결. 강조 및 [ ]는 인용자.  
 40) 동지: 김선택, 앞의 글, 208쪽.  
 41) 김선택, 앞의 글, 209쪽.  
 42) 대법원 2007.7.13. 선고 2006도6322 판결. 강조는 인용자.

한다. 첫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야 하고, 둘째,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의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지가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검찰은 2008년 7월 PD수첩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PD수첩 제작진에게 21개의 요구사항을 밝힌 바 있다. 주로 방송내용에 포함된 대사나 자막 등이 잘못됨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당시 PD수첩의 보도내용에서 검찰이 지적하는 자막의 오류 등 일부 번역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오류들은 같은 보도의 내레이션 등에 의하여 그러한 오류가 치유되고 있거나 특정 부분의 번역상 오류가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시키는 등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sup>43)</sup> 오히려 전체적인 취지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제309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게 되므로 제309조 제1항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만 남게 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하며,<sup>44)</sup>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sup>45)</sup>

이들 판결에 따라 PD수첩의 보도가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검찰의 주장대로 PD수첩의 보도에 다소간의 번역 오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에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인 PD들 역시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 제309조 제1항에 관한 한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제309조 제2항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PD수첩의 보도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도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없다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307조 제1항<sup>46)</sup>뿐인데 이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sup>47)</sup>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PD수첩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이고, 그 목적은

43) 검찰의 21개 요구사항 전체에 대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내용이 없다는 반론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박경신,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서 나온 21개 요구사항에 대한 반론”, 미디어오늘, 2009.4.10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39>>, 검색일: 2009.6.6.

44)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915 판결.

45)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648 판결.

46)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법성이 조각되어 제307조 제1항에 의한 처벌 역시 힘들지 않나 생각된다.

#### IV. 정부정책 비판보도와 전략적 봉쇄소송

앞서 살펴 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대응은 주로 사법적 대응, 즉 소송의 제기라는 형태로 집약된다. 즉 언론사의 정부정책 비판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등의 사법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를 들어 정부의 대응이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차단함으로써 결국 정치과정에 대한 공공의 참여를 저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sup>48)</sup>

##### 1. 전략적 봉쇄소송의 개념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이란 미국에서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인 소송이 공공참여 봉쇄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sup>49)</sup> “공적 관심사나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실체적 문제

**전략적 봉쇄소송은 정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서 시민들을 정치적 장에서 끌어내어 법정으로 집어넣는 것**

에 관하여, 정부의 행위나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의사전달과 관련하여 비정부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사)소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50)</sup> 이는 정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서 시민들을 정치적 장(forum)에서 끌어내어 심각한 대인적 소송을 통해 법정으로 집어넣는 것이며,<sup>51)</sup> 이런 사건이 공적 토의와 시민 참여에 미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너무나 심각하며, 나아가 공공참여적 정부형태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한층 더 위협적이다.<sup>52)</sup> 또한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 제기 자체, 나아

48)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는 김종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제30호, 2006, 11-47쪽 참조.

49) Canan, Penelope & Pring, George, “Studying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Mix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Law and Society Review, vol. 22, 1988, 385-395쪽.

50) Pring, George & Canan, Penelope, SLAPPs: Getting Sued for Speaking Ou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7, 8-9쪽. 그러나 전략적 봉쇄소송을 민사소송에 국한시킬 이유는 없다. 형사소송의 경우 사건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의 소추시스템에 맡겨져 버리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선호될 뿐 형사적 봉쇄소송도 가능하다고 한다. 같은 책, 9쪽. 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51) Donson, Fiona J. L., Legal Intimidation. A SLAPP in the Face of Democracy, London/New York: Free Association Books, 2000, 153쪽.

52) Pring & Canan, SLAPPs: Getting Sued for Speaking Out, 2쪽.

가서 소송의 제기 위협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나 청원권 등 민주적 정치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권리들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매우 크다.<sup>53)</sup>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소송규제법의 필요성이 처음 언급된 것은 박용상에 의해서였으나,<sup>54)</sup> 봉쇄소송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과 측근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동아 등 4개 신문사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sup>55)</sup> 그런데 당시의 논의에서는 봉쇄소송의 성격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시민 또는 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나 그 소속기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해하고 있었다.<sup>56)</sup> 이렇게 이해할 경우 봉쇄소송의 범위에서 핵심적인 문제, 즉 사적 이익을 위하여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의 문제가 간과되는 문제점이 있으나,<sup>57)</sup> 이 글의 목적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봉쇄소송 중 공무원이 제기하는 소송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58)</sup>

## 2.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례이론

미국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판결을 남기고 있다. 처음에 연방대법원은 정부에 대한 청원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또는 법률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더라도 보호되지만 외형상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것을 은폐하기 위한 단순한 속임수(sham)로 청원이 악용되는 경우에는 봉쇄소송이 허용된다고 하였다.<sup>59)</sup>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해고된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피케팅 및 불매운동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식당 측이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비실체적인 청구에 기반을 둔 소송, 즉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한 소송은 수정 제1조의 보호영역안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악의적 봉쇄소송을 제어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제공하였다.<sup>60)</sup>

이후 봉쇄소송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청원권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후퇴하기도 했던<sup>61)</sup> 연방대법원

53) 김종서, 앞의 글, 12쪽.

54) “고위직의 언론제소 비판가능 위축 의도”, 문화일보, 2002.8.31자.

55) “노대통령 30억 손배소 제기 안팎”, 인터넷한겨레, 2003.8.13자.

56) 김종서, 앞의 글, 41쪽.

57) 김종서, 앞의 글, 42쪽.

58) Pring & Canan, “World Is Getting SLAPP-Happy”, National Law Journal, 1996.5.20, A19.

59) Eastern Railroad Presidents’ Conference v. Noerr Motor-Freight, Inc., 365 U. S. 127(1961); United Mine Workers v. Pennington, 381 U. S. 657(1965).

60) Bill Johnson’s Restaurants v. NLRB, 461 U. S. 731(1983).

61) McDonald v. Smith, 472 U. S. 479(1985). 연방검사 후보자 지명대상자에 대한 반대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낸 사람에 대하여 동 지명대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청원자가 ‘현실적 악의’에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명예훼손소송을 조기에 각하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 어떤 (봉쇄)소송이 각하되어야 하는지, 어떤 청원활동이 면책되는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1991년에 와서였다. 반독점법위반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200만 달러의 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번복하고 소송을 각하하였다.<sup>62)</sup> 봉쇄소송을 당한 사람의 활동들이 정부의 유리한 행위를 얻어내는 것을 진정한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정부 절차의 결과(outcome)가 아니라 그 과정(process) 자체를 무기로 악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청원을 이유로 한 봉쇄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sup>63)</sup>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청원자들의 조기각하신청 등에 대해 제소자 측에서는 매우 강력한 반응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설사 각하라는 결과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청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다.<sup>64)</sup> 이에 따라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반봉쇄소송법(anti-SLAPP law)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연방 차원의 반봉쇄소송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09년 5월 29일 현재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7개 주에서 반봉쇄소송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9개 주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안되어 있다.<sup>65)</sup>

각주에서 채택한 반봉쇄소송법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공통점은 보호되는 청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조기각하 등 절차적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현실적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소자에게 부담시키고, 유리한 정부행위의 획득을 청원이나 표현의 진정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면책을 규정하는 것이다.<sup>66)</sup>

**미국의 반봉쇄소송법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보호되는 청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조기각하 등 절차적 보장을 제공**

### 3. 전략적 봉쇄소송 해법의 도입 가능성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언론사의 정부정책 비판보도와 관련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의 이론을 도입할 가능성은 있는가?

우선 정책비판보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외형상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의 정책비판보도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즉 미국의 Omni 판결의 말을 빌린다면 정부절차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62) City of Columbia v. Omni Outdoor Advertising Inc., 499 U. S. 365(1991). 신규광고판 회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광고판의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의회에 로비를 한 기존 광고판 회사와 시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

63) 김중서, 앞의 글, 25-26쪽.

64) 피소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거나 공포심을 확산시키거나 피소자 측의 변호사를 함께 공격하거나 많은 조건을 걸어서 화해를 제안하는 등 봉쇄소송 제소자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김중서, 앞의 글, 31-32쪽 참조.

65) <http://www.casp.net/statutes/menstate.html>, 검색일:2009. 6. 6.

66) 각주의 반봉쇄소송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김중서, 앞의 글, 33-38쪽 참조.

에 대하여 정부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은 실제적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봉쇄소송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각주의 반봉쇄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조기각하 등의 방법이 한국의 법제 하에서도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제219조). 따라서 부적법한 소가 아닌 한 미국식의 변론전 각하(신청)는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가능한 경우란 정부정책 비판보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일 것이다. 예컨대 특정 정부부처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특정 공직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음에도 당해 부처의 장 등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데, 이런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Sullivan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문 광고의 어떤 문구도 Sullivan을 지칭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지는 않았음을 고려해 보면,<sup>67)</sup> 특정 공직자의 성명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적격이 부인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 전 조기각하신청이라는 미국의 제도는 현행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sup>68)</sup> 그러나 입법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 V. 정책비판보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언론의 자유

사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와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론보도청구 말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자유의 핵심은 정부를 비롯한 지배권력과 지배가치에 대한 반대에 있기 때문이다.<sup>69)</sup>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적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비판을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발표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잘못된 사실적 정보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로 반론보도청구이며, 비판을 극복할 논리를 발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 스스로 사상의 자유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비판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도 하지 않으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입장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67) 이 사건의 1심을 담당했던 앨러배마주법원은 Sullivan이 광고에서 지칭되지 않았다는 뉴욕타임즈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68) 다만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압류실무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정준영,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언론의 자유”, 법률신문, 3159호, 2003.2.27자.

69) 김종서, “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 「민주법학」 39호, 2009, 13쪽.

앞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인 공직자가 비판받은 정부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부비판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 명예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것이고, 정부는 결코 사람이 아니므로, 정부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의 공직자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개인이 아닌 정부를 비판한 PD수첩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고 검찰이 나서서 PD와 작가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의 상황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넓게 인정되어야 할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 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및  
UCLA로스쿨 졸업

## 1. 서 론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논리는 명예훼손은 개인 간의 일로서 현대사회의 공동체 이익과 무관한 민사적 사안에 불과한 것이지 국가 형벌권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명예훼손법이 지키고자 하는 명예에 대한 의미 분석을 통한 폐지 의견도 있다. 명예 개념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주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공인이나 공적 존재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남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또 현실적으로 개인의 고소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국 국가 소송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만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사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국가가 개입하여 단지 사적 행위를 지원할 뿐이라는 주장으로서 위의 명예훼손은 ‘개인 간의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미국의 법리는 민사적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는 것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반대하는 주요 논거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미국 법리와 비교할

때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형벌을 대체하여 예방 및 위하효과를 거둘 장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미국 내에서도 민사적 명예회복이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이 있고, 민사 위주의 해결 방법이 언론의 명예훼손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존재해 그 방향이 옳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절충점으로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는 명예훼손을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처럼 친고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 스스로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또한 우리나라가 진실한 내용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다. 진실한 내용이 전파되어 입게 되는 명예의 훼손에 대해서도 국가의 형벌권을 이용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하는 점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형법 제307조 1항의 폐지를 통해 별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폐지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직접적으로는 다루지는 아니한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의 형사적 처벌 폐지 논의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명예훼손 법리 및 판례를 통한 각국의 명예 보호 범위와 그 장단점, 그리고 우리 사회의 환경에 적합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세계 명예훼손제도 비형법화의 흐름과 그 이유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sup>1)</sup> 물론 대부분의 국가는 형사상 명예훼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인권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 주요국 168개국 158개국이

형사상 명예훼손을 유지하고 있던 하나 이들 나라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명예훼손죄로 투옥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46명뿐이라고 한다(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실행 횡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1 내지 4명 사이라고 한다).<sup>2)</sup> 즉 전 세계적으로 평균 1년에 한 사람도 투옥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4년 현재 15개 주 정도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주에서 제기되는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전국 총합이 1년에 약 2건에 머물 정도로 의미가 없어져버렸다.<sup>3)</sup>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가나는 2001년도에 멕시코 연방상원은 2007년도에 뉴질랜드가 1992년에 그리고 스리랑카가 2002년도에 형사상 명예훼손 제도를 폐지하였고 2004년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미디어자유대표자가 유럽의 명예훼손형사처벌제도에 관한 보고서<sup>4)</sup>를 출간한 이후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몰도바가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 자체를 폐지하였고 프랑스,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세르비아가 자유형을 폐지하였다.<sup>5)</sup> 심지어는 2007년 현재 회교 국가인 바레인에서도 명예훼손의 비(非)형사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sup>6)</sup>

이들 국가에서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논의가 진행되

1) Winfield, et al., "The Abolition Movement: Decriminalizing Defamation and Insult Laws," Communications Lawyer, Fall 2007

2) <<http://www.article19.org/advocacy/defamationmap/overview.html>> 2009년 5월 31일 방문.

3) Media Law Resource Center, "Criminalizing Speech About Reputation: The Legacy of Criminal Libel in the U.S. After Sullivan and Garrison, 45-56

4) OSCE Vienna 2005 "Libel and Insult Laws: A matrix on where we stand and what we would like to achieve" <<http://www.osce.org/fom/documents.html?lsi=true&limit=10&grp=288>> 2009년 5월 31일 방문

5) <<http://www.article19.org/advocacy/defamationmap/overview>.

는 이유는 각국 정부들이 형사상 명예훼손제도를 체제유지를 위해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정치인들이 형사상 명예훼손을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나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을 제압하기 위해 남용할 수 있다. 특히 형사사건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력자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리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검찰을 동원하여 자신의 비판자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재판소는 가장 최근에는 2006년도에 우크라이나 총리를 비판하는 기자에 대해 우크라이나 검찰이 형사처벌을 가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유죄판결을 번복하였다.<sup>7)</sup> 참고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은 EC소속 국가들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인들이 정부나 유력 정치인을 비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받은 여러 사례들을 검토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회원국 법원의 결정들을 번복하였다.<sup>8)</sup> 오스트리아 국내법원결정만 해도 3번의 번복이 이루어졌는데 형벌이 과도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sup>9)</sup> 특히 유럽인권재판소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은 모두 과도한 형벌이라고 하였으며<sup>10)</sup> 단지 인종혐오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자유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논의가 진행되는 이유는 각국 정부들이 형사상 명예훼손제도를 체제유지를 위해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

html> 2009년 5월31 일 방문. 유럽안보협력기구 미디어자유대표자 Iliia Dohel의 “명예훼손의 비(非)형사화의 성과에 대한 보고문” <<http://merlin.obs.coe.int/iris/2006/10/article1>> 2009년 5월 31일 방문.

6) <[www.rsf.org/print.php3?id\\_article=22348](http://www.rsf.org/print.php3?id_article=22348)>.

7) Eur. Ct. H.R., Case of Lyshanko v. Ukraine, Judgment of August 10, 2006, Application No. 00024040/02.

8) Dan Kozłowski, For the Protection of the Reputation or Rights of Other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terpretation of the Defamation Exception in Article 10(2), 11 COMM. L. & POL'Y 133.

9) Eur. Ct. H.R. Case of Oberschlick v. Austria (no. 2), Judgment of June 25, 1997, Application No. 00020834/92 (기자가 한 오스트리아의 보수정치인을 “바보”라고 부른 사건);

Eur. Ct. H.R., Case of Lingens v. Austria, Judgment of July 8, 1986, Application No. 00009815/82 (기자가 오스트리아의 전 총리를 ‘신랄한 기회주의’와 ‘부도덕함’을 비판한 경우);

Eur. Ct. H.R., Case of Unabh?ngige Initiative Informationsvielfalt v. Austria, Judgment of Feb. 26, 2002, Application No. 00028525/95 (기자가 한 오스트리아의 정치인의 이민정책을 ‘나치’의 것에 비유한 경우).

10) Eur. Ct. H.R., Case of Colombani and Others v. France, Judgment of June 25, 2002, Application No. 00051279/99 (모로코 정부의 마약단속의지를 조롱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번복);

Eur. Ct. H.R., Case of Castells v. Spain, Judgment of April 23, 1992, Application No. 00011798/85 (바스크 지역의 1977년 당시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에 대한 스페인정부의

형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sup>11)</sup>

미국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다. 허위의 주장으로 공직자에 대한 평판을 저하시키더라도 그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됨을 선포한 저 유명한 New York Times 대 Sullivan 판결<sup>12)</sup>과 그 판결의 잣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한 형법을 위한 처분한 Garrison 대 Louisiana 사건<sup>13)</sup>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주를 포함한 많은 주들의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위헌처분되거나<sup>14)</sup> 주의회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기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상 명예훼손이 권력자에 의해 남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1920년대부터 1956년 사이에도 형사 명예훼손의 2분의 1 정도는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가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기된 경우였다.<sup>15)</sup>

아직도 형사상 명예훼손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주들의 경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말한 매우 적은 수의 사건들 중에서도 매우 높은 비율의 사건들이 공직자들이 자신들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을 보복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던 23건의 반이 정치적인 처벌로 분석되었다.<sup>16)</sup> 이러한 이유로 형사 명예훼손 사건들의 유죄판결이 상급법원의 법률심에 의해 번복되는 예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직자에 의해 제기된 명예훼손 형사 소송이 번복되는 흐름은 유럽과 미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메리카인권협약에 가입한 중남미의 국가들 역시 국내의 언론인들이 자국의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처벌을 당하는 것에 대해 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sup>17)</sup>

명예훼손 처벌 번복);

Eur. Ct. H.R., Case of Scharlach and News Verlagsgesellschaft v. Austria, Judgment of November 13, 2003, Application No. 00039394/98 (오스트리아에서 극우단체와의 연정을 반대하는 글에서 한 극우보수정치인의 부인을 '장롱나치'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사소(私訴)에 의한 4천유로 및 2천유로의 벌금형이 내려지자 이 판결을 번복함);

Eur. Ct. H.R., Case of De Haes and Gijssels v. Belgium, Judgment of February 24, 1997 (빨기예의 특정 판사의 이혼판결을 비판한 글을 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번복함), Application No. 00019983/92;

Eur. Ct. H.R., Case of Dalban v. Romania, Judgment of September 28, 1999, Application No. 00028114/95; Eur. Ct. H.R., (루마니아에서 기자가 공기업체 사장의 비리를 폭로한 것에 대하여 받은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번복함.)

Case of Thorgerir Thorgeirson v. Iceland, Judgment of June 25, 1992, Application No. 00013778/88; Eur. Ct. H.R., Case of Nilsen and Johnsen v. Norway, Judgement of November 25, 1999, Application No. 00023118/93;

Case of Barford v. Denmark, Judgment of February 22, 1989, 149 Eur. Ct. H.R. (Ser. A).

11) Eur. Ct. H.R., Case of Cumpana and Mazare v. Romania, Judgment on Dec. 17, 2004, Application No. 0033348/96.

12) 376 U.S. 254 (1964)

13) 379 U.S. 64 (1964)

14) Ashton v. Kentucky, 384 U.S. 195 (1996) (노동운동가가 지역경찰이 파업 중인 탄광의 사측에 유리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번복한 미 연방대법원 결정)

Gottschalk v. State, 575 P.2d 289 (Alaska 1978) (주경찰 소속 경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번복한 결정)

Garrison v. Louisiana, 379 U.S. 64 (1978) (지방판사의 무능함을 지적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번복한 미 연방대법원 결정)

Ivey v. State, 821 So. 937 (Alabama 2001) (변호사가 여성을 사주하여 부주지사 선거 출마자가 그 여성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도록 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번복한 결정)

State v. Browne, 205 A.2d 591 (N.J. Super Ct. App. Div. 1965) (시장선거에서 상대방 후보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를 기각한 결정.)

Fitts v. Kolb, 779 F.Supp. 1502 (D.S.C. 1991) (2명의 주의회 의원의 부패상을 고발한 기자에 대한 형사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법 자체를 위헌처분한 결정)

Weston v. State, 528 S.W.2d 412 (A.G. 1975) (지방경찰청장과 마약조직과의 연루설을 고발한 주간지 편집자와 발행인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번복한 결정)

Commonwealth v. Armao, 286 A.2d 626 (Pa. 1972) (지방 유력 인사와 율리언소와의 연루설을 고발한 주간지 편집자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번복한 결정)

15) Robert A. Leflar, The Social Utility of the Criminal Law of Defamation, 34 Texas Law Review 984 (1956)

16) Russell Hickey, A Compendium of U.S. Criminal Libel

이에 따라 월드뱅크<sup>18)</sup>, 유럽의회의 사무총장<sup>19)</sup>, UN사회경제규약 특별조사관<sup>20)</sup>,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sup>21)</sup>,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sup>22)</sup> 등의 기관들이 모두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명예훼손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브라질, 베네수엘라, 카메룬, 케냐,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 예멘, 오만, 아프가니스탄 등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며 선진국으로는 스페인이 2003년에 바스크 독립주의자가 국왕을 ‘고문의 괴수’라고 칭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여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위의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독일은 명예훼손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독일 형법을 계수한 일본 역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명예훼손으로 투옥된 사람들이 최근에 한 명도 없었고 단지 독일이 특수하게 보유하고 있는 모욕죄의 사소(私訴)에 의한 벌금형이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스페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보다는 국왕모독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일본의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의 활발한 운영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다고 보인다.

일본의 형법 제23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 또는

명예훼손의  
비(非)형사화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은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를 유지

Prosecutions: 1990-2002, Libel Defense Resource Center Bulletin, Mar. 27, 2002, 97쪽

17) I/A Court H.R., Case of Ricardo Canese v. Paraguay, Judgment of August 31, 2004, Ser. C No. 111; See also, I/A Court H.R., Case of Herrera-Ulloa v. Costa Rica, Judgment of July 2, 2004, Ser. C No. 107 (코스타리카의 언론인이 유력외교관의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판결 번복).

18) [www.worldbank.org/wbi/news/docs/jdwwpopedwpcf.htm](http://www.worldbank.org/wbi/news/docs/jdwwpopedwpcf.htm).

19) 2006년 5월 유럽의회의 사무국은 “형사처벌의 위협은 특히 반역적이다. 모든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자국의 법을 검토하여 형법 조항들을 폐지하고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민사 손해배상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함. <[www.erc.hrea.org/lists/hr-media/markup/msg00207.html](http://www.erc.hrea.org/lists/hr-media/markup/msg00207.html)> 2009년 5월 31일 방문

20) 2004년 12월 17일, 특별조사관 Ambeyi Ligabo는 “국제인권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명예훼손 사건을 민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벌금은 기자들의 재정적 능력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 그쳐야 한다”라고 권고하였다. <[www.daccessdds.un.org/doc/UNDOC/GEN/G05/106/90/PDF/G0510690.pdf?OpenElement](http://www.daccessdds.un.org/doc/UNDOC/GEN/G05/106/90/PDF/G0510690.pdf?OpenElement)>.

21) <[www.cidh.org/relatoria/showarticle.asp?artID\\_680&LID\\_1](http://www.cidh.org/relatoria/showarticle.asp?artID_680&LID_1)>

22) <[www.osce.org/documents/rfm/2007/03/23842\\_en.pdf](http://www.osce.org/documents/rfm/2007/03/23842_en.pdf)>.

<[www.osce.org/documents/rfm/2003/11/3346\\_en.pdf](http://www.osce.org/documents/rfm/2003/11/3346_en.pdf)>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형법 제 230-2조는 “상기 조항의 행위가 공익에 관한 사실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로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된다면 그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sup>23)</sup>

일본은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거의 사문화되어 있던 명예훼손 형법조항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3년 현재에만 1년 동안 300건 이상의 체포가 있었다고 한다.<sup>24)</sup> 이를 보고한 학자는 그 이유로서 “명예를 통한 사적 순위 정하기(private ordering through reputation)”를 들고 있다. 즉 자원을 여러 선택지들 사이에 분배함에 있어 자신의 평가 보다는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평판 즉 타인들의 평가를 매우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사회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계속 유지될 것인지의 불분명해 보인다. 타인들의 평가도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타인들의 평가와는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평가를 내리는 것 역시 시장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다. ‘타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원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주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를 것인지 일본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 3. 폐지론

#### 가. 범죄구성요건의 추상성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은 신평 판사인 듯하다. 다음을 음미해보자.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민주제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이다. 위에서 실시한 관점에 선다면 어느 표현이나 진술이 문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표현이나 진술로 대항하게 하는 것이 옳다. 법에 의한 도움을 빌려 해당 표현, 진술의 해악을 제거하는 것은 다른 표현, 진술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부차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표현의 영역에서 가능하면 법의 힘은 제한적으로 미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가하는 제재는 그것이 타인의 명예권침해라는 요건사실의 충족이 있어야 한다. 결과발생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배상책임액을 신축적으로 산정한다면, 이것이 갖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약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손

23) 여기까지는 공연성, 사실적 주장, 명예훼손을 기본적인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공익적 목적과 진실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하는 한국법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형법 제230-2조는 제2항과 제3항에서 주장된 사실이 “기소 이전의 타인의 범죄행위”나 “공직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에 관한 것일 경우 모두 진실이 완전항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의혹이나 공직자에 대한 진실된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혹은 형법 제301조 상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두려워해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위 두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된 보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실명보도 논란에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24) Salil K. Mehra, “Post a Message and Go to Jail: Criminalizing Internet Libel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78 University of Colorado Law Review 767 (2007). 변호사의 숫자가 적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사법(私法)적인 피해구제절차가 강력하지 못하여 형사적 처벌이 강조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며 왜 유독 명예훼손 분야에서만 일본에서 형사절차가 민사절차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예훼손 분야에서만 고유하게 형사절차를 민사절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1차적 이유가 발견되면 (예를 들어, 본문에서 설명하는 private ordering의 사회적 중요성) 그 이유의 작용을 강화하는 2차적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더라도 일응 이 제재수단은 수긍될 수 있다고 본다. . . 그러나 형사상의 명예훼손죄 규정에 의한 제재수단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설명되기 때문이다. 명예침해가 발생할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위험성만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sup>25)</sup>

신평은 이에 따라 우선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강변하는 한편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현실에서 범죄구성요건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연방대법원의 실제 악의(actual malice)기준<sup>26)</sup>을 도입하거나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sup>27)</sup>

즉 헌법재판소가 1999년에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면책되어야 하고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眞僞)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는 면책될 수 없다고 한 결정<sup>28)</sup>이후에 대법원이 2003년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명예훼손 책임을 지을 수 있다는 판결<sup>29)</sup>로 발전시켰는데 이를 한발 더 나아가게 하여 아예 ‘허위임을 알거나 진위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기준에 맞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은 우선 자신이 지적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폐지 이유와 조응하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하겠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추상적 위험범’ 이론인 것이 문제라면 이에 대해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평판의 저하를 정량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것에서 더나가 ‘허위임을 알거나 진위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 책임을 지우자는 주장 있어

25)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2004년), 312-3쪽.

26) 필자는 “실제 악의”가 “현실적 악의”보다 더욱 우수한 번역이라고 믿는다. 원문인 actual malice를 설명하면서 미연방대법원은 NY Times 대 Sullivan사건에서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 (with knowledge that i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로 설명하고 있다. 즉 ‘허위인줄 알면서 한 허위보도’가 중심에 있고 혹시 ‘허위임을 무모하게 외면한 경우’를 보충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즉 핵심은 ‘허위임을 실제로 알았거나 실제로 알아야 한다고 할 만큼 허위를 모른 것이 무모한 경우’에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Sullivan, 280쪽.

27) 신평, 316-7쪽.

28)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97헌마265 결정. 같은 결정에서 현재는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29)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해결책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신평의 주장의 문제점은 더욱 근본적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신평의 폐지주장의 가장 강력한 힘은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협범’이라는 통찰에서 비롯된다. 즉 살인, 사기 등은 명백한 피해가 나타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실제로 피해가 뚜렷하지 않다. 예를 들어 내가 가르치던 학생이 전과자라고 누군가 허위주장을 하여 내가 그 학생에 대해 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이 어떤 피해로 나타날지는 또는 실제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할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상당수의 형법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행위에도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약음복, 음란물배포, 간통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물론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모든 형벌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사실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핵심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이다.<sup>30)</sup>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결과의 추상성 및 불특정성이 명예훼손죄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고 보여진다.

정리하자면 신평의 ‘추상적 위협범’ 주장은 지금 당장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를 고유하게 폐지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명예훼손은 개인 간의 일로서 민사적 사안”  
이라는 폐지론<sup>31)</sup>

위의 주장은 이 장의 제목에 나타난 문구 이상으로 제기되지 않아 주장을 제기한 자에게는 불공평

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지만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몇 자 적고자 한다.

‘개인 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입법자가 그 일에 있어서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 있어 그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을 통해 개입하고자 하였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이 형벌제도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는다거나 배우자가 있는 이성교제를 하는 행위 등은 ‘한 개인의 일’이거나 ‘개인 간의 일’이지만 국가가 형사적으로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물론 위 행위 자체들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며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신평이 주장한대로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협범’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명예훼손은 타인에게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간통이나 음란물배포와는 다른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적 효과가 있다. 즉 명예훼손은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한 평판을 훼손시키므로 피해자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명예훼손을 ‘개인 간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명예라는 계급적 가치를 보호하므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인이나 공적 존재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남용할 수 있다”

30) 박경신,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12집 제1호 게재 (2009년 5월).

31) 유승삼, ‘오보할 자유를 허하라’, 내일신문 칼럼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um=465481&sid=E&tid=8>> 2009년 5월 31일 방문

위 주장은 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인과 공적 존재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명예훼손 소송은 이와 같은 비판과 감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들은 그 영향력을 검찰에 행사하여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기소를 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우려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고소인이 되는 모든 소송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폐지근거가 되지 않는다.

첫 번째 우려의 경우 명예훼손에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이유인 것이 사실이다. 즉 명예훼손죄는 말을 한 사람을 그가 한 말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며 우리 사회가 그 말 - 즉 공인에 대한 비판 - 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금기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우려는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제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형사처벌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천착하지 못하고 있어 형사처벌제도 폐지론 보다는 신평이 위에서 제안한 위법성조각사유 강화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라. “형사고소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 역할일 뿐이다”<sup>32)</sup>

형사고소가 민사사건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경우는 명예훼손 외에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였으나 스스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기고소를 하여 검찰의 힘을 빌려 사기당한 돈을 되찾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마. 프라이버시권과의 형평성

명예권과 유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그 처벌을 위한 형법규정이 존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공인과 공적존재들의 비판과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는 민사소송제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형사처벌제도 폐지론 보다는  
위법성조각사유 강화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

32) 법무부 ‘고소사건, 일본의 155배 - 묻지마 고소 생각 좀 해봅시다’, 2006년 6월 15일 네이버 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69&aid=0000000030>>; 소성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면책법리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18호, 577면.

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권침해도 형사법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관점도 제시되고 있다.<sup>33)</sup>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보누설을 수단으로 하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경우, 그 유형 및 결과에 따라 비밀침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귀결될 수 있고, 그 외 유형의 경우에도 사회적 유해성 및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앞으로 얼마든지 형법의 보호영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반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sup>34)</sup> 실제로 2008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고 이 법안에는 형사처벌이 포함되어 있다.<sup>35)</sup>

#### 바. 형사처벌의 “방패”로서의 위험성

필자는 명예훼손 형사제도가 도리어 명예를 보호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고소를 할 경우 이것이 공적인 사안일 경우 이에 대해서는 맞고소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즉 명예훼손 형사고소의 가능성은 도리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피해구제를 수월하게 하는 만큼 명예훼손을 한 사람의 반격도 수월하게 한다.

도리어 명예훼손 형사고소는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피해에 대해 고소를 한 사람이 그 고소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할 경우 이 피해자를 입막음할 수 있는 제도로 작용한다.

대구에서는 대학교수가 2000년 5월 12일 자신의 조교에게 독한 고량주를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고소로 2001년 3월 13일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후 유죄가 확정되었다. 2000년 7월에는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꺼안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의 합의로 풀려나게 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단체들이 위의 2인의 교수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였는데 2인 모두 위 사실을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성폭력 역고소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sup>36)</sup>

하지만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를 폐지할 이유라기보다는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 사. 형사처벌의 주체가 정부부처라는 점

필자는 형사소송에 고유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은 바로 형사처벌이 국가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라고 본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표현의 자유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 및 그 국가를 운영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고 할 것이다. 현대에 감시하는 눈과 비판하는 입이 없는 사회는 부패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진리는 표현의 자유 보호지수와 부패지수와의 반비례관계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연례 조사에

33) 신평, 새로운 명예훼손법 체계의 구축에 관한 시도,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2003년 3월호, 214쪽.

34) 주승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06년 한국형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검토”, 16쪽.

35) 2009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발의안 제58조에서 제62조까지.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35767&userBtBean.ctxCd=1007&userBtBean.ctxType=21010005&currentPage=111>> 2009년 6월 1일 방문

36) <[http://www.hotline.or.kr/kwh/bbs/board.php?bo\\_table=kwh\\_act14&wr\\_id=43&page=0](http://www.hotline.or.kr/kwh/bbs/board.php?bo_table=kwh_act14&wr_id=43&page=0)>

의해 확인되고 있다.<sup>37)</sup> 그런데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가 법을 앞세워 국민과의 토론을 힘으로 압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수사이다.

####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

MBC PD 수첩은 2008. 4. 29.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하의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도축실태 및 인간광우병 발생 우려 등에 대해 보도하였다. 2008. 6. 20. 농식품부는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가설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의거한 편파적 보도로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고, 방송 전반을 통해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태파악도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여 그 동안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폄하하고 신뢰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한편 장관과 협상대표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① 미국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보도 ② 주저앉은 소의 동영상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동영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③ 라면스프, 의약품, 화장품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허위보도, ④ 농식품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고 수입 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MBC 제작진들을 상대로 인터뷰 동영상 원본자료 및 번역본, 원어 대본 등을 지참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작진들이 이에 불응하자, 2008. 7. 29. 「PD수첩 사건 자료제출요구」라는 제목으로 136페이지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위 자료제출요구에 따르면 “PD수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운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가 법을 앞세워 국민과의 토론을 힘으로 압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

37) Transparency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7<[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07](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07)>, Freedom House, “Global Press Freedom 2007,” <[www.freedomhouse.org/uploads/fop/2007/pfscharts.pdf](http://www.freedomhouse.org/uploads/fop/2007/pfscharts.pdf)>

내지 광우병 의심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라는 점에서 왜곡보도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위반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였고, 이후 각 언론에서 “검찰은 PD 수첩이 의도적 왜곡보도 하였다고 결론내림”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검찰은 그 이후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PD들을 체포하고 원본테이프의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의 수사를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는 검찰의 7. 29 공개자료 전문을 숙독한 후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려 공개를 한 바 있다.<sup>38)</sup>

첫째, 아레사 빈슨 유족, 의사 및 미국의 현지 언론들이 ‘CJD가 의심된다’고 말할 것을 ‘vCJD인지 의심하고 있다’고 바꾼 것은 허위가 아니라 당연한 조치였다. 현지에서는 vCJD는 CJD와 다른 병이 아니라 CJD 중의 하나로 지칭되고 있음이 검찰자료에도 나와 있다. 언론보도의 예를 들면 “광우병 감염이 의심되는 여성”이라는 제목 하에 “CJD는 1백만 명 중의 1명에서 나타나며 쇠고기를 먹으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식이다. 이 사건이 애당초 유명해진 것도 누구나 먹는 쇠고기에 의해 전염되는 vCJD감염가능성 때문이었지 전염통로 자체가 희귀한 일반 CJD의 감염가능성 때문이 아니었다.

둘째, 주저앉은 소(다우너)를 ‘광우병 의심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도 과장도 아니다. 실제로 다우너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물론 다우너의 원인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고 광우병이 그 중

의 하나일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중에서 광우병 감염소의 비중이 몇 마리인지 확인된 바가 없다 - 편집자 추가) 사실 광우병의 위험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다우너의 도축을 금지하지 않았는가. 앵커가 다우너를 가볍게 단 한번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지칭하는데 이미 앞에서 ‘광우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내레이션 된 후였다. 빈슨에 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린 의사가 주치의인지 아닌지도 마찬가지이다. ‘의심’ 진단은 의심 ‘진단’일 뿐이다.

셋째, 나머지 소위 ‘허위’로 지적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미국에서 학교급식에 이용된 리콜쇠고기의 양이 1억 톤인지 3천만 톤인지 전혀 이들의 명예와 관련이 없다.

넷째, 미국의 리콜이 2급이었다는 것, 미국인의 먹을거리 불안감 여론조사의 조사방법, 도축장이 적발된 법이 위생법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생각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사물의 어느 측면을 언급할 지는 순전히 견해의 영역이며 법적규제의 밖에 있다.

다섯째, “94% 발병률”, “발병률이 다른 나라에 2-3배”, “화장품 · 의약품으로 전염가능”, “0.1g의 위험물질로 사망”, “발병하면 100% 사망” 모두 과학자들이 특정한 조건들을 가정한 상황에서

38) 박경신, “PD수첩, 수사거부가 법치구현”, 미디어오늘 2009년 4월 12일 게재 갑툼<<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22>> 이 글에서 필자는 검찰이 ‘허위’가 무엇인지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이상 이 영장들은 형사소송법상의 영장발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거부되어야 하나 발부되었으므로 그 집행이 거부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타당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은 허락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단지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 1호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반드시 허락하여야 하는가 반문해볼 필요는 있다. 이것은 특별히 언론의 취재원공개 거부권까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논의해 볼 만한 것이다.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수립한 가설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허위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진실로 입증되지도 않았지만 진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허위로 단죄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신의 존재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검찰은 ‘허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특정을 하지 못하고 ‘허위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는 이가 공인이고 사안도 공적 사안인 이상 현재의 현재 결정이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검찰이 ‘허위’라고 지적하는 내용들은 PD 수첩의 제작진이 외국의 과학자나 언론의 주장을 옮긴 것이고 충실히 옮기지 못한 부분은 사소하므로 면책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셋째, 위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따로 있다.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물들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말들은 그 평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운천, 민동석 등이 “농식품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고 수입 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것도 실제로 MBC가 그러한 보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한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를 허위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 자신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도를 N 정도로 보았는데 MBC는 허위로 그 위험도를 N+1 정도로 과장하여 보도함으로써 -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물에 대한 평가, 특히 사실적 주장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어느 한 쪽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그 주장이 그 주장에 반하는 평가를 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주변 사물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이며 이 평가들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평가가 같은 사물에 대해 평가를 내린 다른 사람들의 명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면 누구도 사물에 대한 평가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물들에 대한 평가는 과학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과학계의 논문들이 다른 과학자들의 가설을 평가함에 있

사실적 주장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 주장에 반하는 평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것

어 사실적인 허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평가가 그 과학자들의 명예를 저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sup>39)</sup> 그 이유는 “과학자들은 항상 가설과 이론들을 의심하며 이 의심은 지식을 확장시키기” 때문이며 과학적 명제들은 “영원히 재수정을 거쳐야” 하는데<sup>40)</sup> 과학적 명제들에 대한 평가가 그 명제를 주장한 과학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법적 가능성을 열어두면 과학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수사는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폐지근거를 제시하는 통렬한 우화라고 보인다. 국민의 일부와 국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가능성에 대하여 이견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 이견이 아니라 상대적 이견이다. 국가는 핸드폰이나 자동차의 미국수출을 증진시키는 FTA 체결과 맞바뀌도 될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었고 MBC PD수첩은 그렇게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를 통해 입증하려고 하기 보다는 형사처벌로 제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아. 소결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명예훼손은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충돌 관계에 있는데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이 비판에 대해 정부의 한 부처인 검찰이 범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매우 간단한 반론이 삼권분립이론에서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볼도록 한다.

## 4. 유지론

가. “민사피해구제가 불충분하다”

명예가 보호되어야 하는 공익이라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제도가 필요하다는 반론은 주로 미국 시스템과의 비교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숫자도 적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적 구제로는 불충분하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서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적 구제가 불충분한 분야는 명예훼손 분야만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 폐지론은 형사처벌제도는 민사구제제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고유한 해악이 있다는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보호영역은 정부에 대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제도는 정부부처의 하나인 검찰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범죄수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의 유지론은 이 주장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 주장은 정부비판이 아니라 사인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폐지한다는 절충안으로 전환될 경우 강력해질 수 있다.

#### 나. 정부비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강화

위에서 말하였듯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의 핵심에는 정부 비판의 중요성과 형사처벌의 주체가 정부 자신이라는 점이다. 즉 형사처벌은 누군가 해

39) *Ezrailson v. Rohrich*, 65 S.W.3d 373, (Tex. App. 2001)

40) *Daubert v. Merrell Dow Pharms. Inc.*, 509 U.S. 579, 597, 113 S.Ct. 2786, 125 L.Ed.2d 469 (1993)

야 하는데 검찰이 할 수 밖에 없으며 검찰이 속해 있는 정부에 대해 공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공적인 사안이 되므로 첫째, 현행 법상으로 일부 허위가 있어도 합법성이 인정되고, 둘째, 진실로 간주가 되면 역시 공적인 사안이므로 면책이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현행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고유한 위협은 제거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검찰 스스로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 검찰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영장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 뿐이다. 징역, 벌금 등의 영구적 결정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이 과정을 통제하는 한 검찰이 형사처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명예훼손 형사처벌 유지 논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특히 위의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의 과오는 사실이 아니라,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론적으로 가장 강력한 유지론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형사소송법의 영장발부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검찰은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무기로 피의자의 신술거부권을 거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피의자를 밀어붙일 수 있다. 또 검찰이 ‘허위’를 입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sup>41)</sup>


## 5. 결 론

명예훼손 형사처벌의 폐지는 국제적 흐름이고 그 흐름을 추동하는 것은 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나 국가기관에게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권력에 의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일 수 있어

41) 박경신,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및 ‘허위’ 입증책임 소재 확립”- 노회찬 ‘떡값검사’ 판결, PD수첩수사, 장자연 리스트 사태에 대하여”, 2009년 4월 14일 <국민의 알권리인가? 명예훼손인가? -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 발제문

제도가 권력자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검찰의 기소권을 매개로 권력자의 체제유지에 남용되어 왔다는 엄중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남용 가능성은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이유로 하여 반드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검찰의 기소권과 조사권을 엄정한 영장주의 하에 통제한다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의 존립도 허용될 수 있다. 또 검찰에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들이나 국가기관에게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권력에 의한 남용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일 수 있다. 또 일본처럼 신화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정권과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검찰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엄정한 영장주의, 공직자를 보호하는 명예훼손죄 폐지, 독립적인 검찰 모두는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뉴스서비스 분쟁의 조정 · 중재 방향

이 효 성

충북중재부 중재위원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 21일 청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북 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효성 충북중재부 중재위원이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뉴스서비스 분쟁의 조정 · 중재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황성주 중재부장(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1. 도입 및 문제제기

여론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그동안 언론 관련 법제도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다행히 지난 2005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인터넷 언론이 포함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를 넘어 인터넷 포털이 정보나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돼 왔다. 중앙은 물론 지역 언론사들까지도 경쟁적으로 포털사

이트와 제휴하면서 뉴스 공급채널이 양적으로 확대돼 왔는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자체에 의한 보도보다 포털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인터넷 포털 뉴스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즉,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포털 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비등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5년에 이어 2009년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있었던 점은 시의적절 했다고 보여 진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그동안의 언론중재법 제정과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있을 언론 조정·중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인터넷과 언론중재법

### 1) 2005년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

지난 2005년 7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이 본격 시행되었다.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이 법률들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비판신문의 정부 감시기능을 봉쇄하기 위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난과 함께, '언론피해로부터 일반인을 구제하기보다 언론자유에 피해를 줄 우려가 훨씬 더 크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박선영, 2008). 하지만 이 법률들은 인터넷 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피해구제의 길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했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즉, 인터넷 언론은 또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각 조항 별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는 병기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통 매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은 물론 의무를 부여했다. 새로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있어서도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명문화했다. 인터넷언론사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간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인터넷 언론의 선거 관련 토론회나 광고도 허용의 길이 열렸다. 또 인터넷신문이 등록 대상이 됨에 따라 당국과 업계는 공식적인 인터넷 언론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신문법은 다른 정기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 등록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했다. 즉,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해당되는 언론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행소의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신문법은 부칙(제3조)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뒤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한마디로 2005년 시행된 신문법은 인터넷 언론으로 하여금 전통 매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의무와 책무 등 강제 사항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신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중재 대상에 인터넷 신문을 포함시키게 됐다. 다시 말해 지난 2005년 7월 28일 이후 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인터넷 신문에 한정되긴 했지만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도 기존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반론권 행사 등 언론중재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중재법 시행이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신청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언론중재법의 도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구제 요구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당시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동적인 소 제기 △언론중재위 통한 손해배상 신청 가능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 가능 등의 조항이 규정됐다.

<표>인터넷 신문 조정 및 중재신청 현황(2005년 이후)

기 간	조 정 신 청	중 재 신 청
2009년 1~3월 현재	25	6
2008년 1~12월	157	3
2007년 1~12월	113	0
2006년 1~12월	77	0
2005년 1~12월	48	0

출 처: www.pac.or.kr

특히 2005년 당시 중재법이 인터넷 신문을 포함시킨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언론 중재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언론매체에 의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현상을 법정 밖(out of court)에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7년 명예훼손법 개정안(Uniform Defamation Act)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ement)의 도입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표성수, 1997; 이재진 2006에서 재인용). 일본의 경우는 비록 법정에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사회광고가 특별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이재진, 2006).

## 2) 2009년의 개정 언론중재법

하지만 지난 2005년 시행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반론권 등 이용자 측의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중재법이 내포하고 있던 언론 자유의 침해 요소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함은 물론,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포털, 언론사닷컴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필요했다.

이 같은 기존 법제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속에서 국회는 2009년 1월 13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신문법 및 중재법과 관련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이 있었다. 지난 2006년 헌법

재판소(헌재 2006.6.29.2005헌마165)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 확인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요구와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포털,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 대해 청구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즉, 개정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포털 등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추가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 간 보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삭제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기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에 의한 수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요구를 감안해 해당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을 언론중재법이라는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닷컴 사이트 게재물에 대해서도 언론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는 새로운 매체가 진화를 거듭함에 따라 언론관련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업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기존 매체 이용자를 능가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함은 물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따른 인격권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언론중재의 적용대상에 해당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행위를 추가한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정 언론중재법은 적용매체의 확대뿐만 아니라 위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중재결정의 취소, △정정보도청구의 소, △시정권고 등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정남철, 2009).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2조 제3항). 이는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조정결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조정·중재 과정에 있어 편의성이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관련해 눈여겨볼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중재결정의 취소**-개정 중재법은 또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및 중재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결정취소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 이었거나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더 넓히고 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또한 정정보도 청구의 소와 관련해서, 개정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언론자유 위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 상의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간이 소명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토록 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언론으로서는 반론보도나 추후보도 청구에 비해 정정보도 청구가 갖는 의미의 비중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중재법이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했다는 점은 특히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만하다.

**△시정권고-**시정권고와 관련, 개정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의 법익침해사함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2항을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위해 삭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제도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편으로 피해 구제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언론자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정권고제도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 3. 포털 분쟁의 조정 · 중재 방향

#### 1)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한편 최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피해 상담 사례가 지속적으로 2천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정남철, 2008). 지난 2004년 1,816건이었던 건수는 2005년 2,353건, 2006년 2,304건, 2007년 2,343건이었으며 2008년에는 2,553건에 달했다. 상담신청의 피해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내용의 유형으로는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손해배상 23.4%, 기타 15.3%, 추후보도청구 2.0%, 금지청구 1.4% 순이었다.

언론중재제도는 지난 1981년 12월 31일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수단이라는 비난 속에서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지난 1987년 11월 28일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물법)과 '방송법'에 흡수되어 존속되었다. 그 후 정간물법이나 방송법에 산재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통합하고 단일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법이 제정·공포되었다(정남철, 2009). 독재정권 하에서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민주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언론피해구제기관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언론분쟁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개인으로서는 거대한 언론사를 상대로 이들의 명예훼손적 언사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언론 사이의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하는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라고 평가할 만하다(정남철, 2009).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중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정’의 의미를 가졌다(이시윤, 2004). 그러나 개정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제도는 조정과 실질적 의미의 중재로 구분된다(한위수, 2006). 특히 언론중재법 제24조 제1항에는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재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정남철, 2008).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중재는 조정에 비해 객관적이고도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중재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PACnews, 2009년 3월호 참고).

한편 오는 8월 7일 시행예정인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포털 등으로 인한 피해도 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정·중재제도가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청구건수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 중재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재위원회나 위원들은 신속한 조정·중재 진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운 매체의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방안이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사나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매체는 물론 잠재적 피해구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개인 역시 이에 대한 진지한 인식

과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 2) 조정·중재 시 고려사항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가장 큰 쟁점은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명확한 것은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존의 전통 매체와는 그 게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문의 내용, 크기, 횟수, 게재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신문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사건 중 조정 성립된 사례를 보면 반론(정정)보도문 보도(게재) 형식은 기존 신문·방송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진(2008)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조정 신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게재 시간문제**-이는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가 보도 횟수와 보도문의 크기를 중요시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게재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최근 반론(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 간 조정 성립된 30건 중 절반이 넘는 17건이 13~24시간이었다. 이외 24시간, 48시간, 72시간 초과 등도 있었다.

**△게재 위치**-인터넷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초기화면에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터넷에 저장된 원 기사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하도록 조건을 추가로 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매체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반론권 부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글자 크기와 자체(字體)**-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원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이 18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12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다른 매체와 달리 글자 크기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기와 아울러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경우 동일 화면이라 하더라도 글자 크기가 다르고, 고딕체나 또는 명조체나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글자 크기와 함께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론보도문의 자수(字數)**-반론보도문의 내용 못지않게 자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자수가 반론문 효과의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91조 제5항은 “방송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원문 보도보다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사 삭제 요청**-기존 매체에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삭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강한 정보 전파력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

인다. 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 운영 기술상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권리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이재진·구본권, 2008).

**△기타 사항**-이러한 견해 이외에도 현재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에는 이미 기존 매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반론권 청구 자격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정도 문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반론권 적용에 있어서의 기술 및 효과의 문제 등이다.

### 3) 결론 및 논의

새롭게 등장한 매체와 이로 인한 분쟁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이다(이재진, 2008). 특히 가장 표현 촉진적이고 참여적인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 구제와 같은 반대되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익형량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 매체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제공자와 소비자 간 해결의 당사자가 명확하였으나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이재진, 2008). 정보 제공자가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파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기존 매체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때 그 책임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묻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즉 정보제공자가 생산, 유통, 전파한 정보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제공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가 출현하고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정보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매체와 같이 정보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하는지, 그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복잡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포털의 경우 정보생산자와 정보제공자(배포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 해결은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분쟁 해결 시 기존의 인터넷 신문이나 언론사닷컴에 비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아 졌다.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하여 기존의 법조항을 개정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개정 중재법 제17조 제2항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기사제공 언론사도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즉 포털 측만을 상대로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가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 조회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는 기사제공 언론사에게도 기사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이지만, 이를 조정절차에 그대로 준용하여 언론사를 피신청인, 즉 포털과 동일하게 보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PAC News, 2009.3).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인터넷 세계에서 기존 매체에서처럼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시의성 있게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조정·중재 과정에서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조정·중재 처리 기간도 빠른 속성을 지닌 인터넷에 걸맞게 단축해야 할 것이며, 중재위원들의 인터넷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고민이 있

어야 할 것이다(이재진, 2008).

언론중재법에 포털이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포함된 사실은 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해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또한 포털을 단순히 '뉴스 유통사'로 볼 수 없게 됐으며 정정보도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과 기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 청구 등이 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이뤄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단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언론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웠던 포털이 이제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받게 된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전통 언론매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기준을 들이대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존 매체에서는 언론의 명예훼손적 언사에 대해 수용자 자신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해도 접근 수단이 매우 제한돼있었지만 포털 등 인터넷 체계 내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개인 본인이나 타인을 통해 어느 정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 등을 포함해 포털뉴스 서비스 분쟁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한편 개정 중재법 시행에 즈음해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는 진실성을 갖추는 등 기존의 행태와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사로부터 전달받아 게재하게 될 뉴스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게재 기사가 명백하게 사실에서 벗어난 경우 개정 중재법의 법리에 따르면 포털도 정정보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기사를 게재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사의 자체 생산 여부가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진실성 결핍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게 된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기사를 생산해 제공하는 언론사와의 기존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PAC News, 2009.3.). 한동안 포털사이트 측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을 변경해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논란이 돼, 최근에는 이 같은 '편집행위'를 최소화하거나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돼 포털 측의 책임이 요구되면, 포털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야 할지도 모르게 됐다. 즉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에 대해 포털 자체에서도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지역신문들의 오보로 인한 분쟁과 피해 사례가 적지 않

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포털은 이제 기사를 단순히 매개한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포털도 진지한 고민이 불가피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전국 규모의 신문은 물론 지역신문들이 먼저 객관적이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밀하게 생산된 정보나 뉴스를 포털 측에 제공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는 이제 신문법 체계인 언론중재법에 조정·중재의 대상이 된 만큼 언론성을 가진 매체로서 갖는 지위와 영향성을 확보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진실성에 대해서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는 이제 그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 토 론

사 회 황 성 주  
충북중재부 중재부장

**황성주(사회자, 중재부장)** : 주제발표를 해주신 이효성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하신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명(충북넷 대표)** :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터넷 포털 등이 조정중재대상이 된 것이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자칫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뉴스는 기존 매체와 달리 유통자체가 2차 뉴스 생산이기 때문에 그 뉴스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뉴스는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만이 존재하였지만 인터넷에 등재된 기사는 댓글이나 네티즌들의 의견이 개진되면서 새로운 가치나 사회적 함의를 포함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언론자유를 보호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기사 게시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충청매일 편집국장)** :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인터넷기반 뉴스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붓물 터지듯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재부는 인터넷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인

터넷 포털 뉴스가 신문사 기사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불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중재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김용주(사무총장)** : 개정된 언론중재법은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언론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나오신 분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기존의 인쇄 신문사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사의 기사가 포털에 게재되면 피해자들은 신문사와 포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신문사는 기존의 방식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재하면 됩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제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제한 신문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청구하게 되면 연합뉴스를 먼저 심리를 하게 됩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먼저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신문도 처리하게 됩니다. 포털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신문사는 별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6개월 보관 의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소관 부처도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청주청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

과거 모교에서 어떤 교수가 데모를 하여 그 교수를 제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지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올려져 마치 본인이 폭력배인 것처럼 묘사 되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지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용석(중재위원)** : 인터넷 게시물에 언론사의 기사이면 언론중재법으로, 그렇지 않고 블로그 기사나 개인이 온라인으로 게시한 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3조에 따르면, 임시조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주장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그것을 30일간 임시적으로 블라인딩 처리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분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분쟁조정부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자체가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문기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문기사가 불만이 있다고 할 때도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법리적 취지와 임시조치가 가능한 법률적 취지가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다행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사의 보도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각하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피해는 기사에 의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에 의해 피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의 언론중재법은 기사만을 상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댓글에 의한 피해는 별도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최근 포털의 게시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포털을 언론으로 보았으며, 포털이 편집행위를 하였다 하여 언론성을 인정하였고, 댓글의 명예훼손적 글을 방치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며 그에 따라 손해배

상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는 기사와 댓글에 의해 발생하는데 현행 언론중재법은 기사에 대해서만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절반밖에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속도가 굉장히 빠르는데 조정중재처리 절차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비해 늦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일련의 시간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중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피해구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사 스크랩과 관련하여 조정신청 대상인가 아닌가의 문제, 스크랩과 관련하여 임시조치를 많이 요청하였는데 포털입장에서는 개인 블로그가 기사를 퍼간 것이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이슈들이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다보니 이번 개정법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하여도 개정법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털 입장에서는 그 동안 규제의 불확실성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정 기사의 전파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상당히 모호했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절차적 명료성도 확보되었고 이용자 관점에서는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책무비용, 즉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들이 사실보도, 균형보도에 대한 책임성들이 높아지는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성주** :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학계의 의견을 들

어보겠습니다.

**김찬식(청주대 광고홍보학과장)** : 검증되지 않는 메시지가 확산될 경우 피해는 뛰어가는데 구제는 기어가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박종호(전 중재위원)** : 인터넷 자체를 모르는 기성세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은 없는지 즉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기사에 대해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안내를 할 수는 없는지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위원회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대중화 즉 우리 이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길(충청일보 논설주간)** : 중재위원회에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재위원은 분쟁 해결의 담당자입니다. 중재위원은 실무적이거나 이론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조정대상이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론과 실무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초중고에서 위원회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가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대식(법무법인 주성 사무장)**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자유입니다. 포털 매체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게시자는 자기 책임 하에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개체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

게 되면 언론의 자유는 저하되고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자기 책임 하에 게시하게 되므로 게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개체인 포털에게 게시물 책임을 지우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언론중재법 벌칙조항을 보면, 언론사가 정정보도에 합의하고도 정정보도를 게재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위기사로 기업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피해액은 수천, 수억에 이르는데 과태료가 피해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주** : 박종호 전 위원께서 위원회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의 실정상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사무처 내에는 교육이나 상담 요구 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구제를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는 중립적인 기구이므로 조심스럽습니다만 피해 상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현재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교재에 우리 위원회와 언론피해구제에 대해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하여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 : 인터넷 피해에 대해 사전에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국가권력이 많은 부분에 개입하는 것이 정

당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위원장께서 정리해주셨습니다.

**권 성(위원장):**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발제자, 그리고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사회자,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털에 대해 언론조정중재 대상으로 할 것인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털을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난 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이런 저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시절에 입법되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언론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의 역사를 볼 때, 언론의 자유는 우선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전적 의미의 언론자유인 출발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력이라고 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라

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언론의 자유에 새로운 측면의 책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 국가권력과 관계가 아니고 대 시민 관계, 대 일반 국민 관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이 또 하나의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속성을 띠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언론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 하나는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수단 또 하나는 일반시민에 대한 가해적 측면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후자의 입장, 즉 일반시민에 대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라고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시절에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태생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이런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오해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몇 차례 해외시찰을 나가서 보니까 전 세계에 우리와 같은 공공적인 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중재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론기관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규제할 수 없는 공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 의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대한 소송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무런 비용 없이 손쉽게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제도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인터넷 세상이 되었음에도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 모두를 중재위원회에서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황용석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밖의 국가기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중에 극히 일부 당사자가 신청을 해왔을 때 구제의 손길을 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분쟁의 실체에 접근해서 아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중재위원들이 인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중재위원회가 직접 중재위원의 인선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추천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홍보문제입니다. 홍보는 많은 돈을 들여서 텔레비전,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홍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과 관련시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중재위원회의 교육방향은 주로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중심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뒤로는 교육의 대상을 잠재적인 언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피해구제제도를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피해구제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혹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쌍방이 도움이 되는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분쟁을 부추긴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는 포털문제입니다. 이 분야는 미개척분야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미리미리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사무처에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분쟁을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털 분쟁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이의제기하지 않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구제책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분쟁해결방법, 정정으로 할 것이냐 반론으로 할 것이냐 손해배상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은 중재위원들이 경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포털 분쟁이야말로 중재에 적합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털분쟁에 관해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아주 열띤 분위기에서 많은 분이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비자금 오보로 회사 신뢰 크게 실추”, 「니혼(日本)텔레비전」 사장 사임

일본의 니혼(日本) 텔레비전에서는 지난 3월 16일 岐阜縣(기후현)의 비자금 문제에 관한 허위증언 보도와 관련, 久保伸太郎 사장이 상근임원회의에서 “『真相報道バンキョ』(番記者·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인을 담당하여 따라다니는 기자) 프로의 오보는 당사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면서 인책 사임하고 足立久男 보도국장이 파면되는 등 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2008년 11월에 방영된 문제의 프로는 다음과 같다. 건설회사의 전 임원이 익명으로 출연하여 岐阜縣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縣의 조사에서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니혼텔레비전이 다시 취재한 결과 취재원이 증언을 번복했다. 니혼텔레비전은 縣 측에 사과하고 3월 1일의 프로에서 경위를 설명한 후 사죄했다. 9일에는 허위증언을 한 취재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보도와 관련, 방송윤리·프로향상기구(BPO)의 방송윤리검증위원회는 3월 13일 이 보도를 심리대상으로 결정했으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신문협회보, 2009년 3월 17일자)

## Wakefield 박사, 자폐증 연구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보도한 Sunday Times 상대로 PCC에 불만제기

「Sunday Times」의 Brian Deer 기자가 “자폐증에 관한 연구에서 Andrew Wakefield 박사가 자료를 조작했다”고 쓴 기사에 대해 여섯 건의 불만에 언론불만위원회(PCC)에 접수됐다.

지난 2월 「Sunday Times」는 1면에 자폐증과 장질환을 앓고 있는 12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의료 기록과 그 부모들에 관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Andrew Wakefield 박사, 자폐증에 관한 자료 조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언론불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언론불만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Wakefield 박사와 연구 대상 어린이의 한 부모, 그리고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4명의 신청인이다.

Deer 기자는 기사에서 Wakefield 박사가 MMR(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과 자폐증이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Wakefield 박사는 58페이지에 달하는 불만 청구서를 통해 “이 기사는 내가 돈을 벌려고 MMR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꿔 과학적인 사기를 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독자를 호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Wakefield 박사의 연구는 1998년 『The Lancet』에 발표되었으며, MMR과 장질환, 자폐증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MMR 백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낮추는 등 큰 논란을 가져왔다.

Deer 기자의 보도 이후, 다른 여러 신문들과 Channel 4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Dispatches〉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Deer 기자는 또한 의료 위원회(GMC)에 그의 취재 결과를 알렸고, 이에 따라 GMC는 심각한 직업적 위법 행위를 이유로 Wakefield 박사와 그의 동료 2명을 고발했다. 청문회는 2007년 7월 시작됐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Wakefield 박사는 해당 보도와 관련, 〈Dispatches〉와 「Sunday Times」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에 나섰지만 이후 포기했다. 그는 “내 변호사들이 GMC 사건과 명예훼손 소송을 함께 진행하지는 말라고 충고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중단해야했다”고 말했다. GMC사건은 현재 소송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8월에 판결이 날 예정이다.

Deer 기자는 Wakefield 박사의 불만 제기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Press Gazette 2009년 4월 28일자)

## 일본 도쿄지법, “소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는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주간신조(週刊新潮)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North Asia대학(아키타시·秋田市) 과 동 대학의 고이즈미(小泉) 이사장이, 발행사인 신조사(新潮社)를 상대로 함께 1억5,000만 엔의 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3월 30일 “기사는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신조사 측에 600만 엔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7년 11월 8일 발행된 주간신조의 기사로 고이즈미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사장직에 취임하였으며, 자신의 뜻대로 교직원을 퇴직시키고 대학을 뺏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취재 결과는 남에게서 들은 내용으로, 소문의 근원에 대한 취재는 일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인사발령이 빈번하게 있었던 일, 수명의 교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일 등을 제시한 신조사 측의 증거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인사를 했다는 것을 뒷받침 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덧붙여 “기사는 대학을 탈취하려는 소문에 그치지 않고, 근거까지도 언급하여 소문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으며, 75만부를 발행하는 주간지라는 점도 고려하여 소문의 진실성 등을 증명하지 않는 한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조사는 항소하기로 했다.

(신문협회보 2009년 4월 7일자)

## 유럽 인권 법원,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시효 없는 소송 정당”

「Times」가 유럽 인권 법원에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시효 없이 언론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160년 묵은 판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유럽 인권 법원은 어제 소위 ‘Duke of Brunswick’ 원칙이 표현의 자유 권리를 명시한 제1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언론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49년 독일의 한 공작이 19년 전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신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성공한 이후 붙여진 이 원칙은 ‘공적 기록은 보여 질 때마다 새로운 명예훼손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1785년부터의 막대한 온라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Times」는 2001년 고등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한 러시아의 사업가에 유리한 판결을 낸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유럽 인권 법원에 가져갔다.

GL로 알려진 원고는 「Times」를 대상으로 1999년 9월과 10월 실린 두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 여전히 「Times」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 기사들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1년 후 다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Times」는 “1회 공표 원칙(The single publication rule: 대중매체가 보도한 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온라인 발행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 내린 판결에서 유럽 인권 법원은 온라인 뉴스 기록이 ‘교육과 역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기사는 기사를 급하게 인쇄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보도할 언론사의 책임 원칙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결이 해당 사건에 한 해 적용될 것이고 인터넷 출판 원칙으로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억울한 원고가 그의 명예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가져야 하는 반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10조 언론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News International」의 변호인 Alastair Brett는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Press Gazette」 언론 법 컨퍼런스에서 ‘Duke of Brunswick’ 원칙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출판물이 처음 발행된 이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새롭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언제쯤 정부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Press Gazette 2009년 3월 11일자)



## 일본 도쿄고법, “인터넷상의 비방 표현은 명예훼손”, 반론이 쉬워 무죄’ 라는 1심 파기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라면체인점을 비방하는 문장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한 회사원(37)에 대한 항소심에서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1월 30일 1심 도쿄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 구형대로 벌금 30만 엔을 언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자신의 사이트에 라면체인점이 특정 컬트(cult) 종교집단과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1심인 도쿄지법은 2008년 2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새로운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개인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발신한 정보의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낮으며 용이하게 반론이 가능하다”고 인터넷의 특성을 지적하며, 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발신했거나 ② 인터넷 이용자라도 가능한 조사를 하지 않고 진실여부의 확인 없이 발신했을 때 비로소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인 도쿄고법 재판부는 “개인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발신하는 정보에 한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 “인터넷에 의한 표현행위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신뢰도의 향상에 의해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심이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피해자는 용이하게 반론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2심은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반론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고, 재반론을 통해 명예훼손이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지난 2월 2일 상고했다.

(신문협회보, 2009년 2월 10일자)

## 풋볼365, Martin O'Neill 감독에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프리미어 리그 축구 클럽 애스턴 빌라의 감독 Martin O'Neill은 자신이 “이적과 관련,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 온라인 기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사과를 받게 됐다.

O'Neill 감독의 변호인인 Paul Hackney는 런던 고등법원 Eady 판사에 “365 Media Group이 2008년 5월 웹사이트에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 말하면서, “『Daily Mirror』가 그 이전에 보도한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피고 측이 다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Daily Mirror』는 “리버풀의 Rafael Benitez 감독이 애스턴 빌라의 주장 Gareth Barr의 리버풀 이적과 관련 O'Neill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항의를 받고 『Daily Mirror』는 해명성 기사를 싣기도 했다.

Paul Hackney는 Football365.com을 운영하는 365 Media Group이 해당 기사가 O'Neill 감독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인정하고,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언론사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청구인은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당혹스러운 상태이며, 같은 주장을 했던 다른 언론사로부터 공개재판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은 지 16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9일 또 기사가 났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청구인의 명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내부 조사를 통해 그러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청구인은 여전히 피고 측 직원들의 그러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해당 기사가 근거 없이 쓰여진 것임을 인정했고, 피고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과와 함께, 소송비용과 손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할 것임을 제안했다.

Football365.com은 지난 2월에도 ‘Martin O'Neill은 완전 바보’라는 독자의 의견을 기사화 한 이유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독자의 칭찬, 비난 등의 의견을 게재하는 Mailbox란에 실렸으며, 독자 의견들은

기사화되기 전에 편집 과정을 거쳐 다듬어 지게 된다.

O'Neill 감독은 지난 4월 「Daily Record」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8년간 「The Observer」, 「Mail on Sunday」 등을 상대로도 승소한 바 있으며, 2004년 그의 에이전시와 지분 갈등이 있다고 보도한 BBC를 상대로도 손해 배상금을 받아낸 적이 있다.

(Press Gazette 2009년 4월 28일자)

## 최초로 피해자 참가제도가 적용된 재판관련 보도, 피고에 대한 실명·익명 판단 언론사 마다 엇갈려

최초로 피해자 참가제도를 적용한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두 공판에 대한 보도에서 각 언론사들은 피고의 이름 공개 관련, 실명과 익명(匿名)의 두 갈래로 판단이 갈렸다. 이러한 상반된 판단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참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면 보도하지 않았을 사례였다는 것이 요인이다.

피고의 이름에 대해 재경 6대지 중 요미우리(讀賣), 산케이(産經), 도쿄(東京)가 실명, 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毎日), 닛케이(日経)가 익명으로 보도했다. 교도(共同), 지지(時事) 두 통신도 익명으로 보도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익명 보도 요청이 있어 각사들은 익명으로 보도했다.

두 공판은 남성 2명이 상해와 공갈미수의 죄로 입건된 사건과 한 남성이 자동차 운전과실치사죄로 입건된 사건이며, 통상적으로는 재판기사로 취급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특별히 경미한 사건이 아니면 통상적인 재판기사에서는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번 보도는 피해자 참가제도가 없었으면 게재하지 않았을 사건이었으나 실명으로 보도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아사히신문 측은 “통상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익명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9년 2월 17일자)

## 정유회사 Tycon, BBC 게시판에서 ‘범죄 혐의’ 주장한 글들에 대해 소송 제기

미국의 정유사가 BBC에 올라온 익명의 글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전을 시작했다.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Tycon 에너지’는 BBC에 올라온 게시물들이 자사가 주식 거래 사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난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Tycon 측은 BBC가 30만 파운드 이상의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함께 이러한 주장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게시물은 다른 사이트에도 올라왔으며, Google Finance와 Scam.com에서는 곧 삭제됐으나, Motley Fool 사이트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청구인 측은 주장했다. 고등 법원 문서에 의하면 해당 게시물은 Tycon 측이 주식 거래 사기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범죄 모의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정유 및 가스 개발 회사인 Tycon은 게시물의 잘못된 주장에 의해서 자사의 선의와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antonydavi1@hotmail.co.uk’ 라는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 ‘lukoloco’ 를 사용하는 이 익명의 게시물은 BBC가 주식 거래 사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Tycon의 주식을 산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Tycon은 또 게시물의 작성자가 BBC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의 휴대폰 시작 번호는 방송인들만 쓸 수 있는 07711로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그 법원 문서는 청구인 측 변호인 Charles Fussell에 의해 공개됐다.

(Press Gazette 2009년 4월 9일자)

## 조건부 변호사 수임료 제도(CFA),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

'승소하지 못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제도(no-win no-fee regime)'와 '명예훼손 소송 관광(Libel Tourism: 한 사건이 여러 국가와 관련되어 있을 때 좀 더 유리한 소송 결과를 낼 수 있는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유럽 인권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러한 주장은 유럽인권법원에서 「Daily Mirror」의 발행사인 MGN에 의해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은 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해당 언론사는 나오미 캠벨 사건의 결정과 관련해 유럽 인권 법원에 두 가지의 소를 제기했다. 하나는 모델이 비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상원에서의 청문회 이후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승소 조건부 변호사 수임료 제도(CFA: conditional fee agreement)에 관한 것이며, 두 소송은 함께 심리되고 있다.

이 사건은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작가 연맹인 'English PEN', 'Media Legal Defence Initiative', 그리고 시민단체인 'Global Witness', 'Human Rights Watch and Index on Censorship' 등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

의견서는 MGN은 거대 언론사이지만 명예훼손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이 공익과 관련된 탐사 보도와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소규모의 언론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또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모든 제도는 언론의 자유에 심각하고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침해를 가져 온다"며 "대부분의 극단적인 사례들은 Hoffmann이 말했듯, 피고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도 원고는 CFA제도로 인해 어떠한 비용도 지지 않아 '협박효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발행 부수가 1만1천부에 이르는 한 신문사가 어떤 독자의 편지를 실은 후 벌어진 소송에서 성공 보수만을 부담하는 원고와 달리 막대한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배상금을 부담케 돼 결국 문을 닫게 된 사례도 소개했다.

의견서는 또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법률 연구소의 비교 법, 정책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명예훼손 소송 비용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140배나 많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CFA제도가 없는 곳의 피고보다 있는 곳의 피고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CFA제도가 패소하게 된 언론사의 비용이 이로 인해 보호받는 원고의 이익과 비례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Press Gazette 2009년 3월 17일자)

## 일본 법원, 주간지에 잇단 고액배상판결 - 미디어 측은 위축 우려와 함께 변화 모색

주간지에 의한 일본 씨름계(스모오·相撲)의 승부조작담합 의혹보도와 관련,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26일 講談社에 대해 과거 최고배상액인 4,000만 엔을 넘는 4,290만 엔의 배상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난 2월 4일에는 新潮社에 대해 '임원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준 경우 임원도 책임을 진다'는 구 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을 예방할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사장 개인에게도 375만 엔의 배상을 명했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 미디어계에서는 위축을 우려하는 한편 주간지 보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판결에서는 출판사의 사장이 취해야 할 명예훼손 예방대책으로 ① 변호사에 의한 강의나 입증취재의 본연의 자세에 관해 교육을 받는다 ② 출판 전에 위법성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③ 출판 후 제3자위원회에서 점검한다는 3가지 점을 예시했다.

(신문협회보, 2009년 4월 7일자)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일본 경시청 강력 단속할 방침인 듯

일본 NHK 「爆笑オンエアバトル」(폭소 on air battle) 등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탤런트 스마일리 기꾸찌(スマイリーキクチ) 씨의 블로그에 '살인이 뭔데 예능인 하나' 등의 글을 집단으로 투고한 18명에 대해 일본 경시청이 입건할 방침이라고 지난 2월 5일 조간신문 등이 보도했다.

기꾸찌 씨의 블로그는 2008년 1월 개설된 이후 악성 네티즌이 올린 글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될 정도였으며, 여고생 살인사건(1989년)에 관여했다는 허위내용과 함께 '죽어라, 범인인 주제에' 등의 악의적인 글들이 수십 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중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집요하게 글을 올린 사례도 있었으며, 이에 기꾸찌 씨는 2008년 8월 '탤런트로서의 명예가 훼손되어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피해계를 제출, 경찰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도쿄고등법원은 "인터넷의 개인이용자가 올린 정보에 한해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완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1월 30일 무죄를 언도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30만 엔의 벌금을 언도한 바 있는데, 경시청의 한 수사간부는 "도쿄고법의 이 판결이 기꾸찌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의 하나"라고 말했다.

일본 경찰청에 의하면 2004년에 3,685건이었던 피해 상담건수는 2008년에는 1만 1,516건으로 급증했다. 경시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사회의 '폭력'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신문협회보, 2009년 3월 10일자)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를 한 취재 범위를 벗어난 사생활 공개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조정결정)

김○○ 씨(신청인)는 KBS-2TV 「8시 뉴스 타임」이 자신이 동의한 취재 범위를 넘어 개인적 내용까지 방송을 통해 보도하자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김 씨는 사회적 기업인 ○○○○에서 제공하는 장학제도를 통한 창업교육을 받던 중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뷰 제의를 받고 장학제도 참여의도와 관련된 인터뷰만을 허락하였으나, 방송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내용 등의 사생활까지 공개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방송사는 ○○○○의 강○○ 대표로부터 인터뷰 대상으로 신청인을 추천받아 취재하였으며,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를 원한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반론했다.

중재부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사생활 공개와 관련해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3백만 원을 신청인에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3.

처리결과 : 조정결정

### 보도내용

KBS-2TV : 「8시 뉴스타임 - 서민의 희망 '무보증 소액 대출」 프로그램 (2009년 1월 9일)

내 용 : <앵커>오죽 도움이 청할 곳이 없으면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리셨을까, 안타까운데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즉 무보증 소액대출 제도가 어려운 이들에게 자활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습니다. 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략) 기초생활수급자로 12년째 혼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 씨도 여기서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어려운 환경에서 배움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에서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회가 너무나 크고요. 업그레이드된 기회를 얻으려고 참여하게 됐어요.

<리포트> 국내에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일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연리 2~4%로 빌려주는데 지금까지 1,200여 명에게 1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3월 13일

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  
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위 금액에

대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본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  
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  
의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0.

**조정결정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

**환경부의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합의)**

환경부(신청인)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의 ‘운하 뚫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 제하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구하  
는 조정신청을 했다.

환경부는 한겨레 21이 “미리 상수도를 광역화·민영화 해 취·정수장 이전 문제를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면 정부로서는 운  
하의 걸림돌 하나를 손쉽게 해치우는 셈이 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전  
문가들로부터 제안되어 온 지방 상수도 경영효율화 방안의 하나이며 운하사업과는 상관없는 일”라고 주장하며 정정을 요구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그러나 환경부가 작성한 기존의 각종 문건들을 종합하면 포항시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미리 낙점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차에 의한 문제로 판단, 반론보도가 적당할 것  
이라 제안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반론보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한겨레 21)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 보도내용

한겨레21 : 『운하 댐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 제하의 기사(2009년 2월 16일자 48~49면)

내용 : ‘(상수도 민영화+광역화)×4대강 정비사업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자신의 대표 공약인 대운하를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강과 물을 관리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계획 곳곳에선 ‘삽질’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의 당초 모델이던 경부운하 구간 낙동강 주변 지역에선 상수도 민영화와 상수원 이전에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에서 쉽게 운하가 연상되지는 않지만, 두 사업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아귀가 들어맞는다. (중략)

포항시는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했고, 지난해 12월 경북 경주·울진·영덕·영천 등과 함께 포항권역으로 묶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선 지난해 5월 20일 환경부가 작성한 ‘통합관리권역 효과분석(포항권역)’이란 회의 자료를 보면, “시범지역인 포항권을 대상으로 통합관리권역 효과분석(안) 수립”이란 대목이 나온다. 포항권이 미리 낙점돼 있었던 셈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 물산업육성과는 “행안부에서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포항시 쪽이 먼저 찾아와 환경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포항시는 “경영개선 명령의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통합운영 방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양쪽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강호철 ‘포항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물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

회’ 공동대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포항권을 짝여 상수도를 광역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운하 댐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2월 16일자 <한겨레 21> 표지이야기 코너에서 “운하 댐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라는 제목으로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포항을 미리 낙점해 두고 동 지역의 용수수급 전망을 갑자기 변경하여 포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낙동강 정비사업과 더불어 취·정수장 이전 문제를 쉽게 하여 운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운하사업과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으로서 취·정수장 이전을 전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포항의 용수수급 전망이 변경된 것은 2008년도에 본격적인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년 급수체계 조정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달라진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증가 추세와 신규 개발계획 수요를 감안하여 재산정한 결과이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설명회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상수도 광역화 관련 반론

•내 용 : 본지 2009년 2월 16일자 48~49면 『운하 댐은 포항 상수도 광역화』 제하의 기사에서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항을 미리 낙점했으며, 포항의 용수수급 전망을 물 부족 지역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은 낙동강 정비사업과 더불어 운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항을 사전에 낙점한 것이 아니라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은 인근 자치단체

간 과부족 용수를 연계 공급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사업으로 운하와 무관하게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21 : 『상수도 광역화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3일자 제752호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미네르바는 7인의 그룹이라는 보도 관련 중재신청 (사과보도 중재화해결정)**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 씨는 월간 신동아가 미네르바는 7인의 그룹이며 자신은 그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한 K모 씨의 인터뷰를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청구를 했다.

박○○ 씨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K모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네르바는 금융계 출신 7인 그룹이며, 자신이 주 집필자이고 신청인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한 내용 등을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다음 아고라를 통해 논란이 된 글들을 올린 미네르바는 자신이 맞다”며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조정신청을 중재부의 판단을 구하는 중재신청으로 변경 했으나, 중재과정 중 사과보도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중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양측이 합의한 대로 중재화해결정을 내렸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신 동 아 : 1.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 (2008년 12월호)

2.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 박○○은 우리와 무관』 (2009년 2월호)

내 용 : 2. (전략) 박 씨는 “신동아에는 기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의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신동아는 가짜 미네르바에 속았나”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동아는 어떤 식으로든 미네르바의 실제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보도내용**

됐다. (중략) 며칠간의 끈질긴 설득에 K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대신 그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다. 편집실과의 조율 끝에 인터뷰어인 편집장 외 기자 1명이 기록자로 동석한 대면 인터뷰에서 핵심 신상정보와 몇 가지 증거를 공개하는 대신 기사에는 이름은 성의 이니셜만 밝히고 나이, 직업, 키, 학·경력,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K씨는 나이 공개를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으나 신동아에 실명을 밝혔다. 신동아는 또 K씨가 언급한 지인을 통해 K씨의 직장 등 구체적인 신원도 확인했다. K씨와의 인터뷰는 7시간 동안 진행됐다.

•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것으로 지목돼 구속된 박○○ 씨를 압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썼습니까? “네” (중략)

•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그 많은 글을 혼자서 다 썼다는 말입니까? “모든 글을 저 혼자 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글도 있습니다. 직접 쓰기도 하고, 제가 데이터를 모으면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에 기반해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글의 포맷은 함께 잡았고요. 언론사의 시스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국 웹사이트에 나온 정보만 이용해서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 글에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습득한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대표 격인 사람은 저를 포함해 2명입니다”

• 그렇다면 미네르바는 한 명이 아니라 일종의 그룹인 셈이군요. “모두 7명입니다. 팀으로 움직였으니 일단 동호회라고 해두지요”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호에서 “K모 씨가 7인 그룹을 형성하여 미네르바라

는 필명으로 2008년 3월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208여 편의 경제관련 글을 2009년 1월 초 순경까지 올린 사실이 있고, 그 글 중에서 2008년 9월 10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환율폭등 및 경기침하 예측 등의 글이 널리 알려져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이 크게 명성을 얻었다”라고 보도한 것은 전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신청인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2008년 3월부터 211.178.로 시작되는 아이피 주소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아이디로 위 기간 중 208편의 글을 위 토론방에 올렸고, 크게 명성을 얻은 미네르바는 바로 신청인입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의 미네르바 진위논쟁 보도와 관련해 현재 이 사건 당사자로 재판받고 있는 박○○ 씨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는데 대해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신동아)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 기재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동아 2009년 5월호(2009. 4. 17. 발간 예정) 「말길 글길」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말길 글길」면의 통상의 제목 크기 이상으로 하고, 본문활자 크기 및 줄간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함께 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 신동아 표지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미네르바 K는 가짜로 판명되었다. 박○○ 씨에게 사과한다”를 게재하고,

2. 목차에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호의 제목활자크기로 “박○○ 씨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3. 본문에 <별지2> 기재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결정이유 : 피신청인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호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관련 글을 게재하여 명성을 얻은

사람이 K씨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재신청을 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3 기재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대로 중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3.

<별지 2> <합의사항 참조>

**중재화해결정에 의한 보도문**

신 동 아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호 60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가수 비의 ‘월드 투어’ 무산에 대한 미국 판결보도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후 취하)**

정지훈 씨(예명 : 비)와 소속사인 제이툰엔터테인먼트는 통신사 뉴스스가 정 씨의 월드 투어가 무산된 책임을 다룬 미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하면서 “비 측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8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하나 이를 지불할 능력이 비에게는 없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자, 이는 전체적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피신청인 언론사는 손해배상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비의 현재 재산 상황으로는 손배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비 측 변호사가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고 항소 자체도 안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정 과정 중 양 측은 반론보도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반론보도가 나간 뒤, 신청인이 해당 사건을 취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5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정 지 훈 (예명 : 비)

제이툰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피신청인 : 뉴시스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9. 2. 26.

처리결과 : 취하

### 보도내용

뉴시스 : 『가수 비 항소불가·줄소송, 지불능력도 없  
고?』 제하의 기사 등 (2009년 3월 22일자)

내용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이 2년 전 가수 비의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 19일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 6000달러(약 112억 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480만 달러(비·JYP 각 240만 달러), 사기피해 100만 달러(약 13억 9150만 원),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228만 6000 달러(약 31억 8096만 원)를 내라는 것이다.

2007년 6월 21일 클릭엔터테인먼트(대표 이승수)는 비의 월드투어 파행 책임을 물어 비와 JYP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중략) 비 측은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은 쉽지 않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도 거의 없다. 사실상 재판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비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소송 절차와 판결의 공정성, 재판장의 개입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승소할 확률도 없다시피 하다. 배상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걸림돌은 더 있다. 항소가 수용된다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 달러(약 210억 원)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 일종의 공탁금이다. 이 항소가 기각되면 1500만 달러는 클릭이 갖

게 된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목 : 비, ‘항소 불가’ 사실과 달라
-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2일자 연예면에 “가수 비 항소불가·줄소송, 지불능력도 없?”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던 내용과 3월 23일과 24일 각각 “가수 비 100억대 청담동 건물 가압류”, “가수 비 건물 가압류, 국내 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먼저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이 (중략) 비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 6000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중략) 사기피해 100만 달러(약 13억 9150만 원),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중략) 내라는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비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며, 그 중 비(본명 정지훈)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420만 달러에 불과하고, 배상액 항목 중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기피해’에 대한 금액이 아닌 ‘계약위반에 따른 위자료’로서 이번 손해배상 판결은 ‘사기죄 기타 형사적 처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도 거의 없다. 사실상 재판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라고 보도한 내용 역시, 상소는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된 권리며, 상소의

결과는 ‘법률전문가’의 소견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닌,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항소가 수용된다고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 달러(약 210억 원)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고 보도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며, 여기에서 ‘쿠폰’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의 성격으로 항소 제기를 위한 조건도 아니며, 금액이 확정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공탁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비 측은 ‘여러가지 방안을 (중략) 특히, 비는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략) 토로했다’라고 기재한 내용은 비나 청구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죄’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3일 및 24일 보도에서는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 6000 달러(약 112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 (중략) 배상총액은 900만 달러(약 126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지만, 판결 내용에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도록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가수 비 100억 대 청담동 건물 가압류”라는 제목으로 ‘가수 비(정지훈)의 것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 100억 원대 건물이 가압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지훈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진행된 바 없고, 가압류는 채권자의 의사판단, 관할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가압류가 임박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비의 재정상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한국신용정보는 (중략)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제이투엔터테인먼트는 피소 대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사에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제

이투엔은 구 세이텍을 인수한 후 사업 분할매각 및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된 상태임에도 1개월 전 외부기관 언급만을 인용, 회사가치 하락을 조장하고, 투자자들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바로 잡으며, 가수 비와 소속사의 연예활동 및 소속사의 향후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와 소속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신청 후 보도문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위 보도에서 언급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원의 판결에 대해 비(본명 정지훈) 소속사 제이투엔터테인먼트는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가 808만 6000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액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중 비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치로 보아도 약 42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거의 없고 항소가 수용된다고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 달러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비는 항소는 누구에게나 인정된 권리이고 ‘쿠폰’ 역시 항소 제기를 위한 조건이 아니며, 보도 내용은 달리 현재 항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임직원 중 어느 누구도 비가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비의 심경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기사에서는 ‘사기피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판결의 내용은 ‘계약위반에 따른 위자료’의 개념에 가깝다고 밝혀왔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 기사에 잘못 인용된 취재원 관련 중재신청 (손해배상 중재결정)

유○○ 씨는 한국경제신문이 국회의원 관련 선거 기사를 내보내면서, 다른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자신이 한 것으로 인용하여 보도하자, 이로 인해 자신의 영업 관련 피해는 물론,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받았다고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보도를 통해 공인중개업을 하는 유 씨가 자신의 지역에 정동영 후보가 출마하는 것과 관련 “이제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키워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신청인은 기사 작성과정의 실수임을 인정, 신청인과 함께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는 중재신청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7.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언제까지 정동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제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세대교체론을 제기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2월 6일 저희 신문사는 “정동영 출마설 전주 민심은, 興 견제하려면 스타급 정치인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인중개사 유 씨가 “민주당 언제까지나 정동영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제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의 세대교체론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다른 이의 발언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신 유 씨와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 『興 견제하려면 스타급 정치인 필요』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A8면)

내 용 : (전략) 지난 4월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정 전 장관이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인지 “일단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속내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 전 장관 같은 스타급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쪽이 우세한 편이었다.

진북동 주민 박○○ 씨는 “어디서 달든 국회의원은 똑같은 거 아니냐”며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면 정동영 같은 거물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반면 민주당의 ‘세대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전 장관의 출마에 굽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진북동 공인중개사 유○○ 씨는 “민주당도

###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사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하는 한국경제의 정치면에 상자기사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 및 서체는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정동영 출마설 전주민심은)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한국경제 2면 상단에 <별지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의 초기화면과 정치기사란([http://www.hankyung.com/news/app/newslst.php?n=010610&nid=00\\_6&type=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lst.php?n=010610&nid=00_6&type=1)) 중앙 중단부에 별지2 기재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0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

결정이유 :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사는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전주 덕진구 재보선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위 보도와 같은 견해를 밝힌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라는 사실, 피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한경 닷컴 기사를 수정한 사실,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7.

**중재결정에 의한 보도문**

한국경제 : 『전주시 유○○ 씨 견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5일자 A6면)

내 용 : <중재결정문 중 별지1 참조>

<별지 1>

- 제 목 : 전주시 유○○ 씨 견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지난 2월 6일자 A8면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전주 덕진구 재보선 출마에 대한 지역 여론을 전하면서 진북동 공인증개사 유○○ 씨가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 씨가 아닌 다른 주민의 견해였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별지 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대한민국 스타강사들 - 이래서 사교육이다’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  
취재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합의)**

현○○ 씨는 자신이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 피신청인 언론사의 취재진이 신분을 학부모로 위장해 찾아와 상

## 언론조정중재신청사례

담을 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 형식을 통해 촬영한 상담 내용을 방송으로 방영하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발언 의도도 왜곡되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방송은 사회적 공익을 위한 취지의 프로그램이고, 신청인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의사를 왜곡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 및 방송내용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인정,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하기로 신청인과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3

청 구 명 : 정정 · 손해배구

신 청 인 : 현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 - 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리포트> 특목고 열망이 강한 엄마라면 뿌리치기 힘든 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0일자 '대한민국 스타강사들 - 이래서 사교육이다' 방송 내용 중 모 입시컨설팅학원 및 상담실장을 방송함에 있어서 몰래카메라로 학원 및 실장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송하였으며, '고객 그룹과외를 추천했다'는 부분 역시 출연자의 생각이나 실제 발언과는 전혀 달리 제작진의 의도대로 방송되었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에 방송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학원 관계자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 보도내용

KBS-1TV : 「추적60분 - '대한민국 스타강사들 - 이래서 사교육이다」 프로그램 (2009년 3월 20일)

내 용 : (전략)

<리포트> 최근에는 특목고 열풍이 몰아닥쳐 자녀를 특목고에 보낸 엄마들도 인기입니다. 이 학원은 외고생 아이를 둔 엄마가 상담실장으로 있습니다.

<현장음> (여) 실장님 자녀분도 대원 갔다고요? (실장) 청심에 갔다가 대원을 갔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영어는 최대한 따로 개인적으로 올려놓고 수학은 놓치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기본을 가져가는 거예요.

<리포트> 그녀 역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시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는 고객의 그룹과외를 추천했습니다.

<현장음> (실장)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과목당) 200, 200, 200, 600(만원) 정도는 한 달 값(교사월급)이 된단 말이예요. 열 명씩 모여가지고 팔십만 원, 백만 원 정도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합의사항

1. 보도문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0일 '대한민국 스타강사 - 이래서 사교육이다' 제하의 보도에서 입시컨설팅학원의 모 상담실장이 고객 그룹과외를 추천하는 내

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 상담실장은 고액 그룹과의를 추천하지 않았으며, 내용 중 일부가 동의 없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방송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연손해금을 가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2.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배율에 의한 지

KBS-1TV : 「추적 60분」 프로그램 (2009년 4월 24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손해배상액 지급>

.....

**김상희 의원의 ‘언론인 성매매 예방 교육’ 발언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결정 - 피신청인 이의신청)**

김상희 의원은 자신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자신의 발언 의도를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을 자신이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에 대해 국회 의정 발언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며,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은 신청인의 ‘언론인 성매매 예방교육’ 주장에 대한 주관적 표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내용 중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신청 언론사는 반론보도를 싣고 손해배상액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 해당 사건은 법원에 자동 소제기 되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0

행적 폭언’』제하의 사실 (2009년 4월 15일자)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상 희 (국회의원)

내 용 :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 장관에게 “지난번 성매매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 명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거론하면서 장관에게 “현재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교육은 공무원에게만 강제하고 있는데 언론사에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성부에서 언론기관도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제하는 방안을 발의해보라”고도 했다. (중략)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조선일보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

김 의원 이력서에는 여성운동 경력이 길게 나열돼 있다. 여성운동가 김상희 씨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위원, 그해 6월엔 정연주 씨가 사장으로 있던 KBS의 이사에 임명됐다. 그러더니 2006년 1월엔 장관급인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직 출세를 했고,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바꿔 단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고위원직에 올랐다. 말하자면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 “기자들에게 소주 사놔야 득될 게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 미디어”라는 식으로 5년 내내 언론을 폭행하던 ‘노무현 대통령 사람’답다. 김 의원은 무명의 자신을 즐지에 장관급 자리까지 발탁해주었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지금 언론인들의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 것인가.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국회 발언 진의 왜곡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4월 15일자 사설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언론사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언론인들에게 언어 폭행을 했다고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라는 부분은 김 의원이 실제 발언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기관 종사자

를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언론사를 포함한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고, 이에 장관도 동의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설에서 “김 의원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과 “김 의원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 사람”답다, “김 의원은 무명의 자신을 즐지에 장관급 자리까지 발탁해주었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지금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 것인가” 등의 내용은 여성위원회 해당 발언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한 점이 있기에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상 희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9년 5월 22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1) 제 목 : 김상희 의원 관련 반론

2) 내 용 : 본지는 2009년 4월 15일자 A35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발언’』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폭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회의 당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언론사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5월 22일까지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 및 3.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 조정결정 이행결과

<피신청인 이의신청으로 법원 자동 소제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포털사이트)가 선별하여 게재한 뉴스 및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과 책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들로부터 전송받은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업자는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댓글 등 게시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적 내용이 존재함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김○○ 씨가 자신의 전 애인의 자살 등과 관련한 개인적 내용의 기사를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도매체와 계약상 문제에 대해서도 “인터넷 종합정보 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기로 하면서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였고 하더라도 이는 보도매체와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사업자의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검색,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자의 관리 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인

터넷 이용자들의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기사를 스스로 게재한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게시공간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며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 관한 사실관계 및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되어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시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엔에이치엔은 5백만 원,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는 4백만 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3백만 원을 원고에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 및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1심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엔에이치엔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5백만 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3백만 원, 야후코리아는 1백만 원을 원고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원고 김○○는 자신의 전 애인과 교제 중 발생한 일과 애인의 자살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되고, 이러한 기사가 포털사이트의 뉴스란에 오르고, 댓글 등으로 자신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자 피고 포털사이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009. 4. 16.자 판결(2008다53812)**

사 건 :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 김 ○ ○  
 피고, 상 고 인 : 1.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3. 야후코리아 유한회사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판 결 선 고 : 2009. 4. 16.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1.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로 인한 책임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가상공간 내에 있는 각종 정보제공 장소(인터넷 이용자들은 ‘사이트’라고 부른다)들에 게재된 정보에 대한 분야별 분류 및 검색 기능을 비롯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이나 각종 정보를 게시·저장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와 서로 공유·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그 중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인터넷 동아리’, ‘카페’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게시공간을 아래에서는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아울러 전자우편,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터넷 이용자들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포털서비스’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정보제공 장소를 ‘포털사이트’로 부른다. 아래에서는 그 서비스를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라고 한다)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

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은 보도매체로부터 위 피고들의 각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전송된 기사들 가운데 원고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는데, 위 원고 관련 기사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위 피고들은 위 각 기사들에 관하여 이를 최초로 작성한 해당 보도매체들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위 피고들은 원고 관련 기사 선별 및 게재와 관련하여 그 중 일부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기사들의 피해자 특정 여부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이 게재한 원고 관련 기사들이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기사에 실린 망 서○○의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구체적으로 위 게시공간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미니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위 게시공간을 제공한 원심공동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제공한 '미니 홈페이지'를 가리켜 '미니홈피'라 부른다) 초기화면 사진으로 알 수 있는 망 서○○ 관련 정보 또는 위 기사들 내용으로부터 얻은 정보 등을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주인공이 원고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기사 삭제 금지 약정으로 인한 면책 여부

인터넷 종합정보 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기로 하면서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도매체와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위 사업자의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들이 보도매체와 사이에 체결한 기사 삭제 금지 약정만으로는 자신들의 원고 관련 기사 게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이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위와 같은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위 종합 정보서비스의 검색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에게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정보유통이 일반화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이 쉽게 게시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게시된 표현물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 표현물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증대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그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수한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커서 다른 어느 경우보다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인터넷 계

시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사업목적에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

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이 원고와 망서○○의 교제 및 망서○○의 자살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기사를 스스로 게재한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실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기사 댓글, 지식검색란에서의 답변들,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 등의 게시공간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하였던 위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는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들, 지식검색란에서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들, 특정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 등과 같이 일정한 주제나 운영 주체에 따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으로 나뉘어져서 그 각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 내에서의 게시물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게시되므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는 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그 의무의 발생 당시 대상으로 된 불법 게시물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와 관련되어 게시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하여도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할 때에는 그 원인이 된 불법행위를 특정하여야 하지만,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반드시 불법행위의 일시, 방법, 내용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어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면 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3780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들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원심판결의 이유에 위 피고들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 가운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 기사 댓글, 지식검색란,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 등의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원심이 열거한 증거들과 원심이 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의 게시물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 판단에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야후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피고는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서 피고 엔에이치엔과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상고이유 제2점 중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대법관 김영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위 사업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만약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요건 아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서 다룰 논점이다. 이에 관한 법리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먼저, ‘인터넷’,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대량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중매체(大衆媒體, mass media)의 하나이다. 인터넷은 이른바 정보통신매체로서 종래의 인쇄매체, 영상매체, 전파매체 등과 대비하여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로서 “가장 참여적인(매체)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정의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참조).

이러한 인터넷의 매체로서의 특성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로부터 제공되는 ‘뉴스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검색 서비스’ 등 각종 정보서비스의 내용에 의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뉴스 서비스는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으로부터 뉴스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 이용자들이 열람하거나 검색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하여 뉴스 기사를 열람·조회하는 것 이외에도 뉴스기사 하단에 설치된 댓글 창을 열어 뉴스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짧게 덧붙일 수도 있다.

또한, 커뮤니티 서비스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카페’ 또는 ‘클럽’,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에 이미 만들어진 형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인이나 동호인별 게시공간을 개설한 다음 문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게시함

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에 이를 자유로이 교환 및 열람하고 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통칭한다. 그 중 ‘카페’ 또는 ‘클럽’은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들 가운데 일정한 주제에 관하여 자료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입하여 폐쇄적 또는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동호회를 뜻한다.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 안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개인별 인터넷 게시공간을 말하는데, ‘미니홈피’의 개인운영자는 그 개인별 인터넷 게시공간을 직접 꾸미고 다른 미니홈피 운영자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교류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블로그’ 역시 그 운영자인 ‘블로거’ 개인의 관심사에 관하여 정보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개인별 인터넷 게시공간의 일종이지만 그 게시물이 자동연결(인터넷 이용자들은 위 서비스를 ‘링크’라고 부른다)기능에 의하여 다른 블로그와 서로 자동적으로 공유됨으로써 자신의 블로그에는 수많은 다른 블로그의 게시물이 그대로 올라오고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물은 수많은 다른 블로그에 실리게 됨으로써, 결국 이른바 수많은 ‘1인 매체’가 모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검색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터넷상의 각종 정보제공 장소에 게시된 전자문서, 이미지, 뉴스 기사 등 수많은 정보자료 게시물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아울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지식검색 서비스란에 질의를 게재하면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댓글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는 인터넷의 대중매체로서의 특성인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 시공간 초월성 등에 힘입어 종래의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매체로서의 기능을 ‘1인 매체’ 위주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도하면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적극적·개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용이하며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지금까지의 어느 매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참여적 대중매체이고, 인터넷의 이러한 기능은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의사소통의 시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가장 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있음으로써 더욱 고양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규제의 폭을 넓혀간다면 위와 같이 ‘1인 매체’ 역할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가 규제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 간접적인 형태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가 정당하고 건전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거리가 먼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바로 위에서 본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따른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급속히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현도 동시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단순한 정보수반자와는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장소에 게재된 표현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신장만을 염두에 두고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거나 그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은 명예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인격적 법익의 보호를 거의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표현행위라는 법익의 보호와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적 법익의 보호가 서로 상충할 경우 그 두 가지 법익의 조화를 찾는 관점에서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표현의 자유로부터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명예라는 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과 관련하여,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고 한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등 입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

한하는 내용의 법해석의 원리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위에서 본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와 관계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리가 최대한 명확하게 정립·제시되어야 한다.

(3) 나아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의 게시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명예훼손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이상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더한다는 측면에 치중하 나머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를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포섭하여, 위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단순히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법리에 따라 정하려는 것도 마땅히 경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의사소통의 시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배포자로서의 역할을 의도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게시공간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자가 위 사업자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 그 공간을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을 게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명예훼손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어떠한 요건 아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를 설정할 것인가 문제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가려 보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양자의 법익 보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법리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 위에서 본 여러 고려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배포자로서 인터넷상의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일정한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게시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상,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명백히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표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그 게시물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위와 같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

무(이하에서는 '삭제의무'라고만 한다)가 생기는 전제 조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게시물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때'라 함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설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 위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면서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보기로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어야 한다.

(가) 이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까지 강제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하고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함은 그 게시물의 표현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 실제적 구성요건, 즉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 즉 범법행위로서 명예훼손의 가해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

공하는 위치에 있어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게시물을 게시한 직접 가해자와는 별개의 제3자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할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 위 사업자가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형사처벌법규와 대비하여 본다.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 형사법규들은 그 형사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취지에서 예외 없이 그 죄를 이른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존재하는 것을 종국적인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다(형법 제312조 제1, 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등 참조). 이러한 형사법의 법정신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경우에도 대응하여 본다면, 위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아무리 불법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미처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사업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는 문이 아닐 수 없다.

명예훼손 게시물에 의한 피해자의 법익침해는 직접 가해자가 그 게시물을 게시공간에 게시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직접 게시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게시공간을 제공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하여도 그러한 공표행위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의무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이는 위 사업자 역시 직접 가해자인 1차적 책임자와 동일한 범주 안에 놓고 책임 유무를 가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의 예외적 상황으로서 게시물에 인한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적·방어적 역할을 할 위치에 있을 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보호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의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지, 피해자가 보호 요청 등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에 앞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구나,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되는 게시물의 정보량은 엄청난 분량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삭제요구가 없어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법적 책임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면 위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를 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또는 예측가능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피해자의 삭제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삭제요구와 관계없이 삭제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과중한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은 본래 인터넷 이용자에게 의하여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장소로 제공된 공간이므로 그 곳에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표현행위를 본질적·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도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위 사업자에게 삭제조치까지 강제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삭제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여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화'의 관점에서도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기도 전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스스로 알게 된 경우에도 삭제의무가 생긴다고 한다면,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하여 아예 아무런 관리·감시도 하지 않아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반면에 오히려 자진하여 비용과 노력을 들여 관리·감시를 함으로써 그러한 게시물을 알게 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법익의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하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어야만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다면, 피해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아무리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 게시물이 게시되고 그러한 사정을 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어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한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면 이러한 경우라 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더 나아가 비록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는 없지만 피해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삭제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추정적·가정적 의사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에 불명확한 기준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형사처벌법규와 비교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추정하거나 가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빚대어 보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없어도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삭제요구는 없었으나 삭제를 희망하고 있음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충분히 알게 된 때에는 삭제요구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삭제요구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거나 삭제요구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에 따라 위 사업자가 그러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논리필연적인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모르고 있는, 즉 선의(善意)의 경우에는 어떠한 때에도 삭제·차단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의 미를 보다 분명히 새겨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선의인 이상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삭제의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게시물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삭제의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그러한 불법성을 '인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삭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삭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 또는 감시에 나아갈 것이며, 이것은 결국 위 사업자에게 일반적·포괄적인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그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된 게시물에 대하여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는 오늘날 거의 이론(異論)이 없다는 것인데, 만약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삭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위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부정되어야 할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나) 다수의견은 대체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직접 가해자와는 독립하여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한 자의 위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수의견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바람직하고 큰 틀에서 이와 뜻을 같이하는 데 주저함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다수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게시물의 삭제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때에는, 위 사업자에게 삭제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없어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수의견의 견해는 이미 위 나.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의무가 생기는 경우로, 위 사업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

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때'를 들고 있다. 그러나 후자(後者)의 의미가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가 인식하고 있는 다른 사실이나 정황들에 의하여 외관상 명백히 그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그 게시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때에도 삭제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이러한 다수의견의 입장에도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역시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이나 정황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될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기 위해 그 정황이 될 만한 사실이나 정보들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간접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에 대한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삭제요구 없이도 위 사업자가 그러한 정황이나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삭제의무를 인정할 때와 똑같은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2) 위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삭제요구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삭제요구를 특정하는 것은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사실을 다른 사실과 독립하여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지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행위가 다수의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개의 명예훼손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어느 개별 게시공간 내에서 게시되는 게시물' 등으로 특정하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탐지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도로 특정하여 삭제요구하는 것은 유효한 삭제요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정성에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적 특정이 '현저히' 곤란한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그러한 삭제요구를 하더라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삭제요구에 관한 특정성의 요청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처럼 제한적으로라도 특정성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요구 받은 명예훼손 게시물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게시물을 검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어 결

과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검색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반드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삭제요구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러한 예외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것이다.

(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인식한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 등이 게시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위 사업자에게 당연히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러한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불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삭제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현존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명백'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고 있더라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문제, 그 표현이 사실의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나,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을 판

단하는 문제, 나아가 위법성 조각 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더구나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특정 주제나 공동의 관심사에 관하여 비판이나 논쟁이 벌어져 그 과정에서 게시되는 표현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 외의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와는 달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논평의 표명인지 구별하는 기준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그에 기한 반론 가능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는 등, 법률가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명예훼손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곧바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게시물의 삭제에까지 나아가려면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위험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견이 적절히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명예훼손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므로, 법률적인 평가를 거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삭제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4) 기술적·경제적으로 삭제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앞서 본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문제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거나 수인(受忍)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 삭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삭제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발생의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고, 이 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의 견해와 다를 바 없으므로 더 이상 보탬 것이 없다.

다.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등인 피고 엔에이치엔과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원고로부터 삭제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구가 없이는 구체적인 게시물에 대한 위 피고들의 삭제의무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27.에 이르러 위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서 '1.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2.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3. 원고와 관련한 검색 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 고만 답변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2005. 7. 7. 기자회견을 열고 위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을 밝히고 난 뒤에 비로소 원심 판시와

같은 삭제 및 차단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의 나. (1). (가)항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질차적 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원고의 삭제요구를 거부하는 사유로 삼은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삭제요구 당시 삭제할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요구를 하지 않아 유효한 삭제요구가 없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역시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은 원고와 망 서○○의 교제 및 망 서○○의 자살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네티즌들의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원고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제3자에 의하여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타인의 특정한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인 위 피고들은 기사를 작성한 보도매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임은 위에서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1)항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뉴스 게시공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전파한 원고 관련 기사의 내용과 그 외에 정보배포자의 위치에서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된 문제의 게시물들은 원고라는 동일한 피해자에 관련된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것인 점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바

와 같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위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행위가 다수의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진 사정 등이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개개의 명예훼손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괄적인 방식으로 특정하는 것도 유효한 삭제요구로 취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아울러 종합하여 본다면, 원고의 위 인정과 같은 삭제요구만으로도 위 피고들로서는 구체적으로 원고가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무엇인지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게시물들은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관리·통제 아래 기술적·경제적으로 삭제조치가 가능한 경우임은 다수의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피고들의 삭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원고의 삭제요구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의 삭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원심 인정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다수의견과 그 결론을 같이하나 그 이유를 달리하므로, 위와 같이 별개의견을 밝혀둔다.

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영란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된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때에는,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가 인정된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별개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별개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나. 별개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명예의 보호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위 게시물의 불법성 외에도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사정까지 알 수 있게 되어 삭제 등의 피해구제가 필요할 정도의 불법성이 ‘현존’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인식하는 경우에만 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별개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

(1) 별개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 의무가 제한되어야 하는 논거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서 구하고, 이에 따라 그 제한에서 벗어나 삭제 및 차단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논거를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서 찾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때에는 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 그 제한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개의견의 견해와 같다. 그런데, 별개의견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자체가 이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그에 관하여 삭제 등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게시물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게시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별개의견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이와 같이 게시물의 명예훼손성 유무 그리고 이를 이유로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에서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우선적인 요건으로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가령 피해자가 사적 존재이고,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며, 사안 역시 전혀 공공성, 사회성 없이 사적인 생활영역을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단순히 무례한 정도를 넘어 심한 모멸적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다수의견에 의하더라도 별개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에 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게시물의 내용 자체보다는 피해자의 허락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는 달리, 명예훼손적 게시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게시물의 내용 자체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게시물로서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불법성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주관적인 불법성 인식 여부에 따라 그 불법성의 현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별개의견은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하려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일반적인 명예훼손적 게시물 그 자체가 현존함으로 인한 위험과 다른 위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의 위험성이 커서 이로 인하여 게시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이미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위협에 관한 사정을 더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문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게시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기본적인 논거로 삼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요구의 요건으로서 명예훼손에 관한 불법성의 명백 외에 또 다른 위험성이 요구된다는 별개의견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별개의견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에 관한 인식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별개의견에서 요구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은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는 위험으로서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랄 정도의 위험'이라는 것이 되며, 그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사정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삭제 요구 내지 문제 제기 등에 의하여 객관화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피해자의 삭제 요구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삭제 요구 등이 없으면 그 위험성이 없다고 보게 될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삭제를 바라는 의사 여부 내지 삭제 요구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상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인터넷이 신속하고 막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견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인터

넷의 특성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인터넷에 게시됨으로써 이미 타인의 법익 침해라는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이며, 피해자의 삭제나 차단 요구에 의하여 그 위험이 비토소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 등을 받을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뒤늦게 위 사업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뿐더러,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서도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 사업자에 대하여는 게시자의 직접적인 명예훼손책임에 대한 고의의 방조책임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 굳이 별개의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사업자에게 게시자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과 별도의 독자적인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적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범죄가 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그리고 모욕행위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형사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나 고소는 형사상의 소송조건에 불과하므로, 그 존부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며, 더욱이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성립 뿐 아니라 책임 유무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의 요구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방지·중단의무 발생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는바, 피해자의 허락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도 피해자의 요구가 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위 법 제44조 제2항, 제44조의2 제6항, 제2항, 제44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삭제나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나아가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구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항상 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거나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게시물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법익 침해로 인한 불법성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은 피해자의 요구가 없이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인터넷의 특성상 위 게시물의 게시행위 당시에 이미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이

나 모욕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게시물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 유무에 따라 게시물 방치로 인한 명예훼손책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별개의견의 해석론에 따르면, 피고 엔에이치엔과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관리하는 자로서, 2005. 5. 초순경부터 이미 자신들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원고와 망 서○○의 교체 및 망 서○○의 자살에 관한 자세한 사연과 함께 원고를 비난하며 그 인적 사항을 노출시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급증하다가 같은 달 중순경에는 그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응이 위 피고들의 뉴스제공 공간에 기사로 게재될 정도로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위 피고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이 위 기사 내용으로 보아 외관상 명백히 드러남에도 위 피고들은 2005. 6. 27.에 이르러서야 원고로부터 삭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부당하다.

(3) 또한, 피해자로부터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비로소 특정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할 정도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할 수 없다.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의 존재와 그에 관한 불법성을 인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누구보다 자신

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된 게시물을 쉽게 검색하고 접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을 인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며, 분쟁이 된 사건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면 된다. 나아가,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 주의의무 위반은 개별 행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능력이 아닌 평균인 또는 사회 일반의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불법행위책임의 근간이다. 따라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동종 업계 일반 운영자의 평균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위 사업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별개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할 정도의 위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균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그 위험의 인식 여부를 가리면 되지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 요구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별개의견은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만 위 사업자가 자신의 물적 설비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관리·감시함으로써 게시물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된다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가 봉쇄될 우려가 높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관리·감시를 충실히 해 온 사업자 일수록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법익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위

사업자에게 일반적·포괄적인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면 위 사업자로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적인 표현물과 같이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이 공개된 후에 이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등 결정 참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때에 한하여 그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지운다면, 별개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인터넷 게시공간의 게시물들을 상시 검열함으로써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위 사업자에게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게시물에 관한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할 수도 없다.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 요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났다고 입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많은 경우에는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요구를 받아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한 때부터 삭제 및 차단요구가 인정될 것이며, 그 인식에 관한 사실이 입증된 일부 사안의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삭제나 차단요구가 없더라도 그에 관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개의견은 삭제의무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적 게시물 자체에 관한 불법성 외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을 요구하고 그 위험을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짓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요구는 단순히 게시물의 존재와 불법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명예훼손적 게시물 자체에 관한 불법성만을 요구하는 다수의견과는 그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의 대상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명예훼손적 게시물로 인한 위험을 파악하는 별개의견의 해석론이 타당하지 않음은 앞의 5.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에 서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에 관한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을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별개의견은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명예훼손 사실을 다른 사실과 독립하여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지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별개의견은, 명예훼손행위가 다수의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명예훼손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되는 게시물' 등으로 특정하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표시한 정도만으로도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탐지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유효한 삭제요구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별개의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삭제 요구는 게시물의 존재와 불법성 및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삭제요구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론은 별개의견의 위 논리에 부합되지만, 그 예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을 기재하지 않고 다른 사실과 독립하여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지를 특정한 것만으로 과연 구체적·개별적인 특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특히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 확인에 관한 책임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넘겨 위 사업자가 탐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삭제요구라고 보는 예외적인 해석론이 위 논리에 부합되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즉, 어느 특정 게시공간에 게재된 어느 특정 사안과 관련된 게시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는 달리 개별 게시물마다 기재내용이나 표현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개별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는 피해자가 어느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별개의견에서 말하는 게시물

의 불법성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별 게시물마다 일일이 불법성이 명백한지 여부를 가려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개별 게시물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별개의견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위 사업자가 게시물의 존재 및 불법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필요하다는 논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별개의견은 위와 같은 해석론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2005. 6. 27. 위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관련된 기사 댓글이나 관련 게시판의 폐쇄, 원고 관련 검색 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로써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피고들이 명예훼손적인 원고 관련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하여 직접 게시자로서의 명예훼손책임을 지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개괄적인 삭제요구만으로도 구체적으로 원고가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무엇인지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명예훼손적인 원고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외에 원고에 관한 다른 게시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게시물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별개의견은 개괄적인 삭제요구에 불구하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이 보유한 광범위한 정보 검색 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 공

간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하여도 인식 가능성을 긍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결론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삭제요구가 없었던 게시물에 관하여 보면, 별개의견이 취한 위와 같은 결론은 그 불법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때에 삭제 및 차단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 인식가능성이 인정됨에 비하여 별개의견에 의하면 삭제요구에 기초한 다른 게시물의 인식 가능성만으로 검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다수의견보다 더 광범위한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라. 결론적으로, 별개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의무가 제한되는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제시한 후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할 정도의 위험이 현존하여야 하고 이를 위 사업자가 인식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삭제요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장된 논리와는 달리 삭제요구의 방식에 관하여는 그 특정성을 완화하고 오히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스스로의 인식 가능성에 기초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운영의 면에서도 위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므로, 별개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함을 지적하면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 사례2 축약된 신문기사 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판단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2004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004총선시민연대 등 2004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했던 단체들은 피고 언론사가 수건의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정부의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해당 기사의 제목, 소제목 자체만으로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단체 중 어느 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어느 단체가 낙선운동을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또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표현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그 본문의 내용도 읽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기사는 그 제목과 본문을 통하여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와 달리 위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 또는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이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별개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는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취재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그러한 정황이나 근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과 같은 이

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009. 1. 30.자 판결  
(2006다60908)**

사 건 : 2006다60908 손해배상(기) 등  
원고, 피상고인 : 2004총선시민연대 등 19개 단체  
피고, 상 고 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3. 김○○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73886 판결

판 결 선 고 : 2009. 1. 30.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대전충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활동의 내용면에서는 중앙조직과 연관이 있으나, 독자적인 정관 또는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총회의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각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결산처리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원고 총선시민연대' 라고 한다), 원고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수기독청년회, 참여자치21, 환경운동연합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원고들에게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

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대표자라 하여 소를 제기한 박○○에게 위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박○○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박○○에게 위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조사함으로써 과연 박○○이 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적법한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판시 이 사건 2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라고 한다)는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부제목 및 그 부제목 바로 아래의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 ~ 1억 3000만 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또 다른 부제목의 배치, 제목의 크기, 제목과 중간제목 문구의 내용과 구조, 더구나 ‘낙선운동’ 부분을 작은따옴표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제목과 부제목으로부터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 내용이나 그 표는 대강 읽어 넘어가기 쉽고, 본문 내용을 읽어 본다 하더라도 그 본문의 내용과 각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목으로부터 받은 강한 인상과 시민단체가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참여한 방법에 대한 예시적인 내용이라든가, 기사 말미에 “‘낙선운동’과 더불어 총선 당시 시민운동 흐름을 형성했던 ‘당선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후보자 정보공개’를 주도했던 경실련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대비되는 문구로 인하여, 이 사건 기사를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그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도 참여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시민단체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나머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

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부제목,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 ~ 1억

3,000만 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소제목 자체만으로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단체 중 어느 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어느 단체가 낙선운동을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또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표현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그 본문의 내용도 읽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의 본문은 그 첫머리에서 시민단체의 성격상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뒤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한 다음, 2003년도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민단체, 각 지원금의 액수 및 지원방법 등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2004. 4. 실시된 총선과정에서 후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과 이에 대비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당선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하였고, ‘후보자 정보공개’를 주도했던 경실련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보도내용은 공적인 존재인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민단체 중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상당수가 ‘낙선운동’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함과 아울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낙선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함에 있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그 제목과 본문을 통하여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

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와 달리 위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 또는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았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기사가 위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진실에 반하며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 및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 2005. 8. 17.자 판결(2004가합79071)

사 건 : 2004가합79071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2004총선시민연대 등 19개 단체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3. 주○○  
4. 이○○

5. 김○○

6. 정○○

7. 박○○

변론종결 : 2005. 7. 6.

판결선고 : 2005. 8. 17.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5억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 8, 9호증, 을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주민자치 생활화 사업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광양환경운동연합은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광주전남지역의 여성운동단체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고, 남녀평등·여성복지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녹색연합은 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녹색자치의 실현 등을 목표로 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모니터, 언론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문화연대는 공공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비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여수기독교청년회는 청소년·시민문화·사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 감시·비판·대안제시를 위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 여성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참여자치21은 지역사회·지방자치·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는 민족예술의 창작을 위한 지원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권익신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환경운동연합은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 환경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위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제17대 총선'이라 한다)를 앞두고 2004. 1. 12.경 낙천·낙선운동을 비롯하여 그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4. 2. 3.경 총 32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되었다(이하에서는 '원고 총선시민연대'라 하고,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제외한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는 일간지 '조선일보' 등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이라 한다)는 피고 조선일보가 게재·보도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이며, 피고 주○○, 이○○, 김○○, 정○○, 박○○은 각 피고 조선일보 소속의 기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보도

(1) 피고 조선일보는 2004. 9. 1. '조선일보' A1면의 좌측 상단 면에 "정부, 565개 시민단체(NGO)에 지난해 411억 원 줬다"라는 제목과 "행자부 150억·복지부 85억·국방부 29억, 낙선운동단체들도 돈 받아... 정당성 논란"이라는 부제목으로 피고 주○○, 이○○ 작성한 별지 1-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 한다. 이 사건 1 기사에는 기사내용과 함께 '부처별 시민단체 지원현황'으로, 정부의 어느 부처가 몇 개의 시민단체에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기사 내용 우측에 표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 표는 1-2와 같다)를, 같은 날 A3면 좌측 상단 면에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 원~ 1억 3,000만 원까지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각 부제목으로 피고

김○○이 작성한 별지 2-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2 기사’라 한다. 이 사건 2 기사에는 기사내용과 함께 기사 내용 좌측에 ‘정부지원 단체 중 중앙본부 혹은 지방조직이 총선연대에 참여한 단체’라는 제목으로 어떤 시민단체가 정부의 어느 부처로부터 어떤 사업목적으로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를 표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 표는 별지 2-2와 같다를, 같은 날 A3면 우측 상단 면에 박스기사로 “‘어떤 질문에도 답 못해’ 민연련 등 일부 관련단체”라는 제목으로 피고 이○○이 작성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3 기사’라 한다)를, 같은 날 A2면 우측 상단 면에 박스기사로 “정권 비판신문 공격에 앞장 선 시민단체 2곳 정부가 수억 집중지원”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주○○이 작성한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4 기사’라 한다)를 각각 게재·보도하였다

(2) 피고 조선일보는 2004. 9. 2. ‘조선일보’ A1면 좌측 상단 면에 “시민단체에 411억 … 아낌없이 퍼주는 혈세”라는 제목과 “기준·용도 철저히 규명해야”라는 부제목으로 피고 정○○, 박○○이 작성한 별지 5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5 기사’라 한다)를, 같은 날 A31면 좌측 상단면 사실란에 “시민단체, 옥석을 가려야”라는 제목으로 별지 6 기재와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을 각각 게재·보도하였다.

(2) 피고 디지털조선도 이 사건 각 기사와 동일한 기사를 2004. 9. 1. 및 2004. 9. 2.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보도하였다.

### 2.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가. 판단의 기준·범위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

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예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각 참조).

그리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및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 (1) 이 사건 1, 3, 4 기사

(가) ① 이 사건 1 기사는, 정부가 2003년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등과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총 411억 원을 565개 시민단체에 지원하였고, 그 지원받은 시민단체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 정부 언론 정책을 앞장 서 지원해 온 언론단체들도 정부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사실, 각 부처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 내역 전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② 이 사건 3 기사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그와 관련된 취재를 시도하였는데,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취재를 거부하면서, 그 관

계자들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다른 시민단체들의 답변 내용 등을, ③ 이 사건 4 기사는,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문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고, 정부의 언론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부의 각 부처(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방송위원회, 언론재단, 국가인권위원회 등)로부터 선거보도 모니터 백서 출간, 신문고시 개정방안 토론회 등의 명목으로 언론 지원예산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적시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1 기사 중 “총선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라는 부분,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정부기구가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면 곤란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부분, “총선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라는 부분, “이들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만 한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예산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은 모두 앞서 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 조선일보 등의 논평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사실과 별개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들은 1, 3, 4 기사가 일반 독자들에게 정부가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사실’과 ‘낙선운동’이 대가관계에 있거나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 3, 4 기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결국 이 사건 1, 3, 4 기사는 “정부가 2003년 시민단체들에게 411억 원을 지원하였고, 그 지원받은 시민단체들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여 낙선운동을 한 단체도 있으며,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문을 비판하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언론관련 시민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 (2) 이 사건 사실의 경우

(가) 이 사건 사실은, 먼저 정부가 2003년 565개 시민단체에 총 411억 원을 지원하였고, 정부 돈을 받은 단체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전국 단위의 25개 단체 중 8개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친여(親與) 선거운동이란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기본적 사실로 적시하면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치단체가 주류를 이룬다”는 피고 조선일보의 평가에 대한 근거로 “선거 때나 지난 탄핵사건처럼 여야의 정쟁이 격화될 때에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고, “이번 국회 자료로 그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돈을 얻어 쓰면서 선거 때나 정쟁이 격화될 때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게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 또는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권력과 시민단체의 유착은 권력이 먼저 돈으로 유혹했는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자신의 활동과 정부 지원을 맞바꿨는지 애매할 정도로 깊고도 어두컴컴한 관계다”, “적지 않은 시민단체들이 권력 예비군(豫備軍)의 중간집결지나 이권(利權) 추구자의 잠복 장소로 타락하게 된 것이다.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권력의 편에서 서서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빛나간 풍토도 이런 배경에서 빚어진 것이다”, “등 뒤로 권력과 손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실상의 권력외곽단체나 관변단체들을 골라내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실은 또한,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 위 원고들이 권력을 비판하는 신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주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위 원고들이 언론정책과 관련하여 신문시장 점유율 조정이나 판매부수가 많은 신문의 주주 지분을 제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정부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이런 여론을 따라가는 척하는 위장(偽裝)수법을 써왔다”라거나, “이들이 비판신문에 대한 비방과 법적 탄압에는 선봉대 노릇을 해온 배경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라는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에서의 적시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서도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언론정책에 대해 정부와 같은 의견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2 기사

(가) 이 사건 2 기사는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문구를 제목으로, “총선 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 원~1억 3,000만 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문구를 중간제목으로 하고 있고, 그 본문 서두에서 “시민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뒤 정치활동, 특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 당할 수밖에 없는데, 2003년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올

해 4월 총선에서 후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아래의 문단에 원고 총선연대에 가입한 개별 원고들이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등으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시민단체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구체적 방식으로는 “정부로부터 지원은 중앙본부가 받고, 총선연대엔 지방 조직이 참여하는 경우”와(원고 한국여성의 전화연합과 원고 한국여성민우회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지방조직이 직접 재정지원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한 경우”{원고 여수기독교청년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21(광주)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자는 당적별로 야당에 집중되어 있어, 야당으로부터 ‘총선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산하직능단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고, 제17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과 더불어 시민운동 흐름을 형성했던 ‘당선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후보자 정보공개’를 주도했던 경실련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비록 피고 조선일보가 이 사건 2 기사에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각 원고들 등의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위해 얼마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표로서 함께 기재하고 있고, 신문기사의 제목이란 통상적으로 압축적이거나 강조적인 표현을 위해 문장의 구성부분을 생략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도 허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 기사 내용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표명(“시민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뒤 정치활동, 특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다)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권력 멀리 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부제목 및 그 부제목 바로 아래의 “중단단체 중 8곳 4,000만 원~1억 3,000만 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또 다른 부제목의 배치, 제목의 크기, 제목과 중간제목 문구의 내용과 구조(‘권력 멀리 해야 할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문장의 구조와 이 사건 사실에서 적시된 바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문장의 구조는 엄연히 다르다), 더구나 ‘낙선운동’ 부분을 작은따옴표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제목과 부제목으로부터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 내용이나 그 표는 대강 읽어 넘어가기 쉽고, 본문 내용을 읽어 본다 하더라도 그 본문의 내용과 각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목으로부터 받은 강한 인상과 시민단체가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참여한 방법에 대한 예시적인 내용이라든가, “낙선운동과 더불어 제17대 총선 당시 시민운동의 흐름을 형성했던 ‘당선운동’은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다른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 없이 제17대 총선에서 ‘후보자 정보공개’라는 선거에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대비되는 내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2 기사를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그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도 참여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2 기사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5 기사

한편, 이 사건 5 기사는 정부가 2003년 565개 시민단체에 대해 411억 원을 지원하였다는 사실, 그 지원되는 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원금 중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거나 중도사업포기로 환수·반납된 금액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얼마인지의 여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관계자가 그러한 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감시할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현재 행정 각 부처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절차 등을 적시하고 있다.

다. 명예훼손적 표현인지의 여부

(1) 이 사건 1, 2, 3, 4 기사 및 사실이 그 내용에서 원고 총선시민연대 및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여 활동한 나머지 원고들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은 위 각 기사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2)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실의 경우, 앞서 본 각 사실적시 부분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 또는 논평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그 각 내용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들이 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특정 정당에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거나(이 사건 1 기사 및 사실의 위 (가) 부분),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인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부로부터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고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른 언론기관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3, 4 기사 및 사실의 위 (나) 부분), 이는 결국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도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부비판신문에

대한 비판에 주도적이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이 정부가 시민단체들에게 퍼주기식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거나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적인 것이고, 권력과의 유착의 대가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각 기사 및 사설이 앞서 본 적시사실과는 다른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더라도 이는 위 각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또는 논평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한 의견표명 또는 논평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따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한편, 이 사건 2 기사는, 원고 총선시민연대 및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시민단체인 원고들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및 시민단체로서의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4) 다만, 이 사건 5 기사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을 뿐 그 배분의 기준이나 사용용도의 정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달리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아낌 없이 퍼는 혈세’라는 제목 부분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5 기사의 주된 내용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검증절차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피고 조선일보 등의 의견표명일 뿐이고, 그 의견표명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 적시된 사실 및 그와 관련된 의견표명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적시된 시민단체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은 물론 그 원고들이 참여하여 활동한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사설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단순한 의견표명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5 기사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피고 정○○, 박○○에 대한 청구 및 이 사건 5 기사에 관한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사설은 원고들이 제17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사실과 나머지 원고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 보도 또는 논평이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총선시민연대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낙선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여론조사 등을 바

탕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2004. 2. 5. 낙천대상자명단을, 2004. 4. 6. 낙선대상자 명단을 각각 발표하였고, 그 각 시기마다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부패정치·돈선거를 반대하는 홍보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원고 총선시민연대가 제17대 총선에 즈음한 2004. 2. 5. 발표한 총 66명의 낙천대상자에는 한나라당 소속이 32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0명, 열린우리당 소속이 3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3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4. 4. 6. 발표한 총 108명의 낙선대상자에는 한나라당 소속이 32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9명, 열린우리당 소속이 10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19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 총선시민연대는 2004. 3. 12.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에 찬성한 국회의원 100명을 일률적으로 낙선대상자 명단에 선정하였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소속이 68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3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3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3) 그와 같이 원고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자, 몇몇의 언론들은 “낙선운동의 생명은 공정성”(문화일보 2004. 1. 13.자 사설), “공천반대 66명/시민-네티즌 반응 - 형평성 잃어 혼란스럽다”(2004. 2. 6.자 국민일보 기사), “시민단체 낙선명단 공감 못한다”(문화일보 2004. 4. 7.자 사설), “시민단체가 당선·낙선 다 정하나”(동아일보 2004. 4. 8.자 사설), “낙선·당선운동 설득력 약하다”(서울신문 2004. 4. 8.자 사설)라는 등의 제목으로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은 ‘특정정치 세력에 편중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중립성이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기도 하였다.

(4) 정부는 2003년 각 부처를 통해 565개 시민단체들에 대해 411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정부가 2004. 8. 31.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결산보고서와 상세내역서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민단체들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였던 나머지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5)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 언론사들은 “NGO, 정부 돈 받아도 되나”(중앙일보 2004. 9. 1.자 사설), “시민단체 ‘정부 돈’ 받아선 안 된다”(문화일보 2004. 9. 1.자 사설), “‘권력유착 시민단체’ 존재 이유 없다”(동아일보 2004. 9. 2.자 사설) 등으로 비판적인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6)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2001년 1월경 대통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두기자 회견을 한 것을 계기로 하여, 국세청이 피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추징하였고, 피고 조선일보 등을 비롯한 언론사의 대표이사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와 같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우리 사회 여론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 언론개혁의 이름을 빌려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탄압이라는 입장도 있었는데, 당시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과 그에 관한 후속조치를 지지하였고, 피고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사 등은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과 검찰수사는 언론탄압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면서 강하게 정부를 비난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001. 7월경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에 대해 찬성하며 언론사 대표이사의 비리 등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들이 정당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세무조사를 찬성한다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고, 2001. 7. 9.부터 같은 달 30.까지 각 방송사들은 거의 매일 고발된 언론사의 대표이사 및

그의 친인척 등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도하는 한편 위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위와 같은 성명서 발표 및 시위사실과 조선일보 구독 거부운동 등에 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7)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2001. 8. 28. 및 2001. 11. 15. 각 “왜 조선일보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2. 11. 11. “한반도 위기와 조선일보”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3. 10. 24. “한나라당과 조선·동아의 ‘KBS 흔들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3. 11. 20. “최근 조선일보의 정치관련 보도태도에 관한 토론회”, 2003. 12. 12. “안티조선운동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4. 5. 24. “안티조선과 진보진영”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기도 하는 등 피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계속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대체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8) 한편, 2004년 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인물들도 여러 명 당선되었다.

### 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1)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도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진실화

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와 더불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 참조).

### 라. 공익성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사설은,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실과 그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예의 가입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한 나머지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져만 가는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그 도덕성 및 독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마. 진실성 내지 상당성

(1)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의 경우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원고들이 2003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그 원고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여 이른바 낙선운동 활동을 전개한 사실,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피고 조선일보와 사이에 언론사에 대한 정부정책 등에 있어 서로 심한 의견차이를 보여 오면서 피고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활동을 증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선일보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 3, 4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낙선운동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설에서 적시한 사실도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현재 우리 사회는 시민단체가 정치, 문화, 언론, 인권, 여성 문제, 환경 등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정부나 정당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단체는 정부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시민단체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전통적인 국가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언론기관, 영리법인, 더 나아가 비영리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비판하는 반면 그러한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기관이나 법률적인 견제장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당해 시민단체 스스로 도덕성이나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

는 한 권력기관과 유착되어 권력기관의 요구나 의사에 부합하는 쪽으로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시민단체의 존립근거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안에 관련된 것 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이라도 폭넓게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의 가치관이나 정치성향의 다양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시민단체들도 각기 개별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등으로 일정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성향이나 가치관은 대비되는 언론기관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혹제기나 비판에 대해서도 견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그와 같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들의 도덕성·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7대 총선이 실시되기 바로 전해인 2003년에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사실과 그러한 원고들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낙선대상자에 대한 선정 절차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차치한다면, 사실상 현 집권 여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가장 적게 선정되었고, 야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그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선정된 것도 사실이어서 정부와 현 정권 측에 더 우호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조선일보는 정치적 성향 등에 있어서 원고들과는 서로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인물 중 여러 명이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점,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피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비판을 하여 온 점, 설령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금 명목

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민단체가 결과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였던 낙선운동에 참가하였다면 그러한 교부금의 지급과 그와 같은 원고들의 정치적 활동에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사설에서의 의견표명은 사설이라는 보도의 특성상 비유적 표현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표명인 점, 시민단체들이 그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민단체라는 존재의 가장 본질적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일반적 사안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이나 문제제기도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인 점, 따라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또는 논평이나 문제제기가 약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의 사실 적시 및 이를 근거로 한 위 각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내지 문제제기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3, 4 기사를 각각 작성한 피고 주○○, 이○○ 및 위 기사 및 사설과 관련된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2 기사의 경우

(가) 살피건대, 이 사건 2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은 “원고들 등의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이 사건 2 기사가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

한 나머지 각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한 사실’과 ‘각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는 시민단체들의 정당성과 도덕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비판하기 위한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은 이 사건 2 기사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원고들의 낙선운동’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읽혀 이 사건 2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위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3의 마.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행한 낙선운동의 대상자에게는 정부여당 관련 인물들은 소수만 포함되어 있고, 야당 관련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낙선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하게 보일만 한 사정도 있는 점, 공적 사안이나 공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의혹제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와 관련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는 사정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관련되거나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혹제기에 그쳐야지 그 보도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과는 별개의 또 다른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2 기사에서와 같이,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별개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그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또는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는 그 두 사실 외에도 위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취재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조선일보나 이 사건 2 기사의 작성자인 피고 김○○이 그와 같은 정황이나 근거를 토대로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적시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 김○○,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에 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한 피고 김○○ 및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한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2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2 기사의 보도가 시민단체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이 사건 2 기사의 작성·보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김○○,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은 각자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의 지위, 원고들과 위 피고들의 관계,

원고 총선시민연대 및 나머지 원고들의 사회적 위치, 이 사건 2 기사 내용,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하게 된 동기 등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대하여는 1,5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300만 원씩으로 각각 정함이 상당하다.

나. 결국,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은 각자 원고 총선시민연대에게 1,5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4.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위 기간 동안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청구의 당부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주○○, 이○○, 정○○,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각 생략





독일판결

## 공직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에 대해 수인하여할 의무가 있으며, 고위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하여 시사적 인물로서의 지위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 관련조문 : 민법 제242조, 제823조, 제1004조,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 제27조
- 연방최고재판소 2008년 6월 24일 판결 - VI ZR 156/06

### 판결요지

1. 본 사안에서와 같이 주지사 선거와 같은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관련 정치인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2. 사진기자가 해당 정치인을 일정부분 방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어떠한 사진을 보도할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게재된 사진의 반환 및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4월 27일자로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의 주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Bild' 잡지사에서는 2005년 4월 28일 'Heide가 처음으로 쇼핑을 갔다'라는 기사와 함께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들은 주지사직에서 퇴임한 직후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고, 기사에서는 2005년 4월 27일 킬(Kiel)에서 있었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보도를 직접 다루고 있었다.

피고 측은 하루 종일 원고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원

고를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에 원고 측은 사진의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아가 2005년 4월 27일과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고 측은 리포터에 의해 미행과 함께 사진 촬영을 당했다면서 이틀간 사진 촬영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베를린 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사진보도 중지명령을 내리면서, 나아가 3명의 사진기자들이 2005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원고를 감시하면서 촬영하여 전달해진 사진들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함께 부과하였다. 결국 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소송비용인 2,219유로 90센트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

렸다.

이후 피고의 항소에 대해 고등법원(KG)은 부작위청구의 소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정보청구나 배상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항소법원은 피고와 3명의 사진기자들 사이에 원고를 관찰하고 촬영할 것에 대한 부탁에 기초하여 피고가 2005년 4월 28일자 촬영되어 얻어진 사진들에 대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줄 것을 피고에게 명하였으며, 피고에게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800유로 79센트에 대해서도 지급을 명하였다.

## 판결이유

### I.

[1...5] 항소를 맡은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AfP 2006년 369면 게재).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 4월 27일 쇼핑하는 장면의 사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이른바 시사적인 인물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진은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미하는 이른바 '시사적 영역에 대한 사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 원고는 2005년 4월 27일까지 수년간 연방주의 주지사로서 독일 정치사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특히 독일 내에서는 유일한 여성 주지사였는데, 이러한 지위가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바로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고위급 정치인이 어떻게 은퇴를 하였는지가 대중에게 시사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7]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이익 형량과 관련하여 원고의 익명성 보장도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음은 사실이다. 또한 사진촬영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리포터의 행위가 경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문제가 된 사진들은 샐러드 바나 옷가게 또는 신발

가게 앞에 있는 원고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악의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자주 이용하는 쇼핑센터에서 촬영된 것들이다. 더구나 원고는 주지사로 있는 동안에도 사생활에 대한 공개를 허용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생필품이나 옷 외에도 베틀시장에서의 쇼핑모습에 대한 촬영도 동의하여 왔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공직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에 대해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정치적이고 사회지도적인 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논의가 될 수 있다. 거의 12년을 넘게 주지사직을 해오다 2005년 2월 20일 주의회선거와 2005년 3월 17일 4번의 선거결과로 사직을 하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 정치적 사건으로 이러한 원고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 대한 공개는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원고도 놀라움을 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의 원고의 모습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는 2005년 4월 28일에 촬영된 사진의 취득과정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며, 4월 28일의 촬영은 예술저작권법 제37조에 의해 위법한 것이 된다. 이에 반해 피고 측은 원고가 공직에서 물러난 날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개인적 활동에 대한 보도상의 이익이 부정된 것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도 있다.

[9] 원고는 피고의 사진촬영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였고 예술저작권법 제37조 1항에 의해 촬영된 것에 대한 파기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242조에 의해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10] 변호사비용에 대한 지급청구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4월 28일의 최고서면과 2005년 6월 8일 회계서면에 대하여 균일한 변호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II.

[11] 이와 다른 상고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

### A.

[12] 부작위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

[13] 2005년 4월 27일 촬영된 사진의 공개에 대한 원고의 부작위 청구를 부인한 고등법원의 판단에는 법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14] 기존의 판례를 살펴보면, 언론에 의한 사진공개가 예술저작권법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BGH, AfP 2006 S.540; BGH, AfP 2006 S.62; BHG, AfP 2007 S.121; BGH, AfP 2007 S.208; BHG, AfP 2007 S.475 참조). 이것은 헌법재판소(BVerfGE 101 S.361=AfP 2000 S.76; BVerfG, NJW2001 S.1921=AfP 2001 S.212; BVerfG, AfP 2006 S.354; BVerfG, AfP 2008 S.163 ff. 참조)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EGMR, AfP 2004 S.348=NJW 2004 S.2647 ff. - 하노버 v. 독일의 사례; EGMR, NJW 2006 S.591 ff. - Karhuvaara와 Iltalehti v. 핀란드 사례 참조)를 통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예술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요하지만, 예외적으로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시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진에 한해서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5] 시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진인지 여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사성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시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자들에 대한 사진촬영이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사진의 공개에 대해 갖는 대중의 관심이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들의 범위에는 특히 왕이나 대통령 또는 정치 지도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BGHZ 131 S.332 = AfP 1996 S.140 ff; BGHZ 158 S.218 = AfP 2004 S.267 참조). 하지만 이러한 범위를 도식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특정의 시사적인 사건과는 별도로 사진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허용되는지 여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과 당사자가 갖는 정당한 이익 사이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익형량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BGHZ 158 S.218 = AfP 2004 S.267; BGH, AfP 2007 S.472; BGH, AfP 2007 S.475; BVerfGE 101 S.361 = AfP 2000 S.76; BVerfG, AfP 2001 S.212 참조).

[16] 시사성의 개념이 좁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시사성의 개념에는 역사적·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건도 이에 포함된다. 즉, 대중의 관심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언론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자유가 갖는 본질적 내용에 의하면, 언론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내용이 공중의 관심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갖는다(BVerfGE 101 S.361(389 ff.) = AfP 2000 S.76; BVerfG, AfP 2008 S.163(166 f.); BGH, AfP 2007 S.472; BGH, AfP 2007 S.475 참조). 하지만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촬영과 같은 시각적 표현이 모두 여론형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인격보호이익에 우선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유명인의 사진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다만 대중에게 여론형성

의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진공개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BVerfGE 101 S.361 = AfP 2000 S.76; BVerfG, AfP 2008 S.163[168]).

[17] 정치인의 경우에 민주적 투명성과 감시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해 대중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가치관형성과 생활유지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설계를 함에 있어 일정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모범적인 역할 또는 비교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당화 사유로서 알권리의 범위는 정치인의 스캔들이나 윤리적·도덕적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관심으로서 여론형성의 대상이 된다면 눈에 보여지는 일상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18]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정치 인사들에 대한 공공의 알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들의 공직활동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EGMR, NJW 2004 S.2647(2650) Nr. 64 = AfP 2004 S.348). 또한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들과 일반인들을 구분하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공직에 있는 자들 보다 알권리를 인정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보호범위를 최소한으로 보았다.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공공의 관심으로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럽인권선언 제10조 제1항의 의사형성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EGMR, NJW 2006 S.1645[1647] Nr. 68f. 참조).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도에 의해 어느 정도 정치적 또는 그밖에 의미 있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면 충분하다고 보았다(EGMR, NJW 2006 S.591 [593] Nr.45 참조).

[19] 2.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2005년 4월 27일자 사진과 관련하여 실시한 항소법원 이익형량에는 이의

가 제기될 수 없다.

[20] a) 항소법원은 원고의 쇼핑하는 모습을 담은 문서의 사진은 원고가 무려 12년간의 주지사직을 퇴임할 당시 촬영되었다는 점, 원고의 퇴직 이후의 모습이 공공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주지사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치적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려를 하였다.

[21] 원고의 상고내용 중에서도, 원고가 주지사직을 퇴임한 이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 생활을 접고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는지에 대해서 공공의 알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점에서 원고가 퇴임 이후에는 언론으로부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는 퇴임이후에도 여전히 주목받는 여성정치인으로 남으며 떠들썩한 퇴임 이후 그의 행위 하나하나가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분노와 실망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정치인의 행위는 해당 정치인의 향후 정치적 향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정치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22] b) 2005년 4월 27일에 촬영된 사진들은 단순히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치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와 같은 사진촬영도 본 사안의 언론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함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수한 즐거움이나 흥미가 처음부터 여론형성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흥미야 말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있어 관련된 여론형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BVerfGE 35 S.202 [222] = AfP 1973 S.423; BVerfGE 101 S. 361 [390] = AfP 2000 S.76; BVerfG, AfP 2008 S. 163

[166 f.], Nr.61 ff. 참조).

[23] 보도의 내용이나 머릿기사가 갖는 흥미로움은 종종 대중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즐거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항상 오락이나 흥미 등에 대한 만족만을 추구한다는 가정은 옳지 않다. 오히려 흥미가 현실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인생관이나 가치관 형성에 관련을 갖는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화젯거리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언론에서의 흥미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목적에 평가하는데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BGH, AfP 2007 S. 475 참조). 따라서 오늘날 고도의 정치적인 사안들이 정치인 입장에서 대부분 흥미로운 요소들에 의해 각인된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24] 사실 흥미로운 내용들에 있어서는 충돌되는 법의과의 이익형량이 고려되어야 하는데(BVerfG, AfP 2008 S. 163 [167] 참조), 이것이 언론보도의 포괄적인 제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기준을 찾아야 하며 공공의 알권리가 존재하는 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25] c) 본 사안에 대해 항소법원에 의해 실시된 검토는 정당하다. 원고가 이익을 제기하지 않은 기사제목과 함께 공개된 사진들이 원고의 퇴임과 관련한 내용들임에는 명백하며, 악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쇼핑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결코 원고의 사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BGHZ 131 S.332 [338]; BVerfG, AfP 2008 S.163 [169], Nr.87 참조).

[26] 물론 인격보호의 관점에서 끈질긴 추적에 의한 다면지 하는 사진촬영의 상황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

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본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 하에 공공의 관심을 끝만한 사건에 대하여 보도가 갖는 이익을 원고의 인격보호 보다 우선시 한 점에 대해서는 이익이 제기될 수 없다.

### B.

[28] 피고의 상고에는 이유가 있다. 원고의 사진이 2005년 4월 28일에 촬영되었다면 그 촬영이나 취득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견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29] 법익침해가 존재하며, 권리보호를 위해 정보가 요구되고 그러한 정보가 침해자에 의해 쉽게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본 사안을 놓고 볼 때, 원고에게 사진의 취득 내지 폐기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견해와 달리 이러한 청구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30] 1. 항소법원이 인용한 예술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사진이 위법하게 배포 또는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진촬영으로 초상권자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고, 사진의 점유가 이러한 침해상황의 결과이며 방해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민법 제832조 제1항과 제1004조 제1항에 의한 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OLG Muenchen, NJW-RR 1996 S.93[95] = AfP 1995 S.658 참조).

[31] 본 사안에서와 같이 언론보도사진이 문제가 된 경우에서는 최대한 포괄적인 정보제공에서만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에서 사진의 종류와 촬영방법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야 한다(KG, AfP 2008 S.199[201 f.] 참조). 나아가 사진에 대한 폐기나 인도청구가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에서 보호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데다, 사진의 배포를 무기한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본법상으로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2] 2.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33] a) 2005년 4월 28일자 사진의 촬영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상고이유에서는, 원고가 전날처럼 퇴임이후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공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고의 인격보호가 이러한 피고의 보도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점에서 위의 A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인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정되는 알권리는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34] 2005년 4월 28일에도 사진이 촬영된 상황에 있어서 인격보호가 보도이익보다 우선된다는 근거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회사의 리포터에 의한 추적이 당시 상황에서 원고에게는 특별히 불쾌함을 유발케 할 수도 있었으며, 항소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적극적인 저항을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 가지고는 사진촬영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인은 자신의 영역에 따른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와 이를 위한 사진촬영 등에 대하여 무조건 자신의 사생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권리가 인정되기 위하여, 정치

인이 자신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적이면서 괴롭히는 사진기자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 하에 사진 없이 기사보도만으로 제한된다 해서 언론보도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시되는 공공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제한이 가해져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간 원고를 촬영한 피고 측 리포터의 행위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6] 이점에 있어서 항소법원은, 2005년 4월 27일 초저녁에 원고가 주정부 대변인과 함께 사진기자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대변인도 2005년 4월 28일 사진편집기와 편집국에 전화로 재차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설명에 의하더라도 감시행위의 끝을 약속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사진촬영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7] b) 사진의 공개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될 수 없다. 본 재판부의 견해에 의하면, 특정 사진의 공개가 특정 기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사진공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공의 알권리와 당사자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이익 상호간의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사진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 없고 어떤 기사에서 이것이 공개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익형량이 실시될 수 없다(BGHZ 174 S. 262 ff. = DB2001 S.1302).

[38] 본 사건에서, 원고가 선거패배한 날의 사진이 원고에게 불쾌한 방법으로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적합한 기사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처음부터 배제된 것은 아니다. 원고 스스

로도 본 사건에서의 사진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은밀한 영역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39] 3.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사진의 양도 또는 폐기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 C.

[40] 원고와 피고의 면책청구를 위한 상고

[41] 원고에게는 부작위청구권 내지 양도 및 폐기 청

구권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점에서 역시 원고의 소제기도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만이 받아들여진다.

[42] 항소법원이 2005년 4월 28일자 최고와 2005년 6월 8일자 제약서면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하나로 보아 변호사비용의 배상청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점에 관한 근거로는 2008년 3월 4일자 본 재판부 견해(AFP 2008 S. 192 f. 참조)를 근거로 한다.

출 처 : AFP 39.Jahrgang Heft 5 - 2008 SS. 499 ~ 503

번 역 : 남 기 연 (단국대 법학과 교수)



### 일본판결

## 인터넷상의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삭제 의무를 가진다

- 원 고 : 학교법인 산업능력대학, 이사장 上野俊一
- 피 고 : 乙川太郎
- 대상사건 : 도쿄지법 2006(7) 제23518호
- 사 건 명 : 손해배상청구사건
- 연월일등 : 2008.10.1 민사 제32부 판결
- 재판내용 : 일부 인용 · 항소
- 변론종결 : 2008년 7월 16일
- 참조조문 : (1~3에 대해) 민법709조

(4에 대해) 민법709조, 헌법28조, 노동조합법8조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45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11월 3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원고의 다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5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실 및 개요

### 제1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해 6,35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11월 3일 (소장(訴狀) 송달일의 익일) 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 제2 사안의 개요

**1. 다툼이 없는 사실 등 (증거 등에 의해 용이하게 인정되는 사실은 말미에 이를 기재한다)**

#### (1) 당사자 등

A. 원고는 산업능력대학 (이하「산능대학」으로 한다), 산능단기대학, 산능대학원 및 종합연구소로 이룩된 학교법인이다.

B. 피고는 1992년 4월 원고에 고용되어 강사 및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05년 3월 퇴직했으며, 2005년 10월 이후 산능능력대학 교직원조합 (이하「산능유니온」으로 한다) 의 대표자 겸 집행위원장으로 있었다.

C. 「산능유니온」은 2003년 7월에 설립된 법인인 노동조합이며, 설립 시의 대표자 겸 집행위원장은 菅俊一郎 (이하「菅」으로 한다) 이다.

#### (2) 본 건 화해 등

A. 원고는 2002년 7월 10일 피고에 대해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하「본 건 해고의 의사표시」로 한다).

B. 피고는 도쿄지법에 원고와의 고용계약상의 권리를 갖는 지위에 있다는 확인과 임금 및 상여(賞與)의 가불을 청구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했다. 도쿄지법은 2003년 3월 25일 본 건 해고의 의사표시는 해고권의 남용으로 무효라고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임금의 가불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C. 원고는 동 결정에 대해 보전이의(保全異議)를 신청,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2월 26일 이하의 내용을 포함한 재판상의 화해를 했다 (이하「본 건 화해」로 한다).

(A) 원고는 본 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피고가 원고의 경영정보학부 조교수 지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1항)

(B) 원고는 피고에게 해결금으로 500만 엔을 2004년 1월 9일까지 지불한다. (5항)

(C) 피고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산능대학을 퇴직한 다. (7항)

(D) 피고는 2003년 12월 26일 이후 원고의 허가 없이 원고시설 부지 내에 출입하지 않는다. (13항)

(E) 원고와 피고는 상호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는 언동을 하지 않는다. (17항)

D. 원고는 2004년 1월 9일 피고에게 본건화해 5항에 따라 500만 엔을 지불했다.

#### (3) 본 건 게시판 등

A. 산능유니온은 2004년 1월 중순 홈페이지「산능유니온 Web Site (산능대학 교직원조합)」(갑1. 이하「본 건 홈페이지」로 한다) 를 개설하고, 그 안에 게시판「산능유니온 회의실」(갑2. 이하「본 건 게시판」으로 한다) 을 설치했다.

본 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핸들네임을 사용하여 투고할 수 있는, 이른바 익명(匿名)게시판이다 (피고 본인 및 변론의 전 취지).

B. 2004년 9월 17일부터 2006년 6월 1일까지 본 건 게시판에는 별지 투고목록의 투고내용란 기재의 내용을 포함한 투고 (이하, 동 목록의 번호란에 따라 「본 건 투고①」등으로 하며, 본건투고 ① 내지 ⑫를 총칭, 「본 건 각 투고」라 한다) 가 있었다.

C. 본 건 게시판을 2007년 7월 31일 폐쇄되었다 (피고 본인).

(4) 피고는 2004년 2월 15일 산능대학 캠퍼스 7호관 (을6의1) 에 출입했다.

### 2. 본 소 청구의 개요

(1) 본 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A) 본 건 각 투고가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a)피고가 주동적으로 본 건 각 투고의 전부를 스스로 투고했으며 (b)설령 일부의 투고를 피고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본 건 게시판의 관리자인 피고가 본 건 게시판에 자동적으로 공개된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의 삭제를 태만하거나, 또는 내용을 확인한 후 본 건 투고 ⑨, ⑬, ⑭를 공개한 것을 이유로 5,85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B)명예훼손행위 및 피고가 원고 부지 내에 출입한 것이 본 건 화해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 본 건 화해의 해제에 의거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500만 엔의 지불을 요구한 사안이다.

(2) 피고는, 본 소송에서 본 건 각 투고 중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⑫, ⑮를 자신이 투고했음을 인정하고,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 ⑨, ⑬, ⑭를 자신이 투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 또 피고는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3. 쟁점

(1) 본 건 각 투고 중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할 투고의 범위

A. 피고가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 ⑨, ⑬, ⑭를 스스로 투고했는지의 여부

B. 피고 스스로 투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건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A)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에 대해 피고에게 삭제의 무 위반이 있는지

(B) 본 건 투고 ⑨, ⑬, ⑭가 공개된 점에 대해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2) 본 건 각 투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

A.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법리에 근거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지

B. 대항언론(對抗言論)의 법리 등에 근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C. 단결권 (헌법 28조) 에 근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4) 본 건 투고① 내지 ④, ⑥, ⑨, ⑬, ⑭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지의 여부

(5) 원고의 손해

(6) 본 건 화해의 채무불이행해제의 성립 여부

###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1. 전기 제2의1의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1992년 4월 1일부로 원고에 고용되어 강사 및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2) 본 건 화해

A. 원고는 2002년 7월 10일 피고에 대해 본 건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 피고는 이에 불복, 도쿄지법에 원고를 상대로 고용계약상의 권리를 갖는 지위에 있다는 확인, 임금 및 상여금의 가불을 청구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했다.

B. 도쿄지법은, 2003년 3월 25일 본 건 해고의 의사표시는 해고권의 남용이므로 무효라고 판단,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임금 (동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매월 40만 엔) 의 가불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

C. 원고는, 동 결정에 대해 보전이의(保全異議)를 신청,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2월 26일 동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본 건 화해를 했다.

(A) 원고는, 본 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피고가 원고의 경영정보학부 조교수의 지위를 유지함을 확인한다. (1항)

(B)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 8월부터 2003년 12월분까지의 미불급여 및 상여금 합계 710만 4,396엔을 2004년 1월 9일까지 지불하라. (4항)

(C) 원고는 2004년 1월 9일까지 피고에게 해결금으로 500만 엔을 지불한다. (5항)

(D) 피고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원고(산능대학)를 퇴직한다. (7항)

(E) 원고는 7항의 경우 피고에게 퇴직금 상당액에서 지불이 끝날 때까지의 퇴직금을 뺀 113만 엔을 3월 31일까지 지불한다. (8항)

(F) 피고는, 2003년 12월 26일 이후 원고의 허가 없이 다음의 원고 시설 부지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13항) (원고 시설 부지인 3개소의 캠퍼스 명 생략).

(G) 피고는 본 건 해고의 의사표시의 철회를 지원하는 자에 의해 개설된 홈페이지 「乙川太郎선생을 지원

하는 모임」의 관리자에 대해 2004년 1월 31일까지 동 홈페이지상의 일체의 기사를 삭제하고, 동 홈페이지를 폐쇄하도록 요청한다. (16항)

(H) 원고와 피고는 상호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는 언동을 하지 않는다. (17항)

D. 원고는 2004년 1월 9일 본 건 화해 5항에 의거, 피고에게 500만 엔을 지불했다. 또 같은 날, 「乙川太郎선생과 산능대학은 동 선생이 대학에서 해고된 분쟁에 대해 2003년 12월 26일 도쿄지법에서 화해가 성립,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메시지가 홈페이지 「乙川太郎선생을 지원하는 모임」에 표시되어, 동 홈페이지는 폐쇄되었다. (이상 갑3, 을2)

(3) 산능유니온

2003년 7월 23일 관리조합인 산능유니온 설립 시의 대표자 겸 집행위원장은 미야(宮)였으나, 2005년 6월 그의 퇴임에 따라 서기장이었던 피고가 그 뒤를 이었다 (이상, 갑11[별지8], 을1, 피고본인).

(4) 본 건 게시판의 설립 및 목적 등

A. 산능유니온은 2004년 1월 중순 본 건 홈페이지를 개설, 그 속에 본 건 게시판을 설치했다 (갑2).

B. 본 건 홈페이지의 프로바이더는 니푸티주식회사 (이하「니푸티」로 한다)이기 때문에, 산능유니온의 명의로는 계정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크레딧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가 니푸티와의 계약명의인으로 되어있다 (피고본인 및 변론의 전 취지).

C. 본 건 게시판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학원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산능유니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설치목적은 산능유니온의 제 활동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산능유니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갑1, 을28, 피고본인 및 변론의 전 취지).

D. 본 건 게시판은 누구든지 자유로운 핸들네임을 사용하여 투고할 수 있는, 이른바 익명(匿名)게시판이다 (피고 본인).

### (5) 본 건 게시판의 관리체제 등

A. 본 건 게시판은, 2004년 1월 중순 설치될 때, 제3자에 의한 투고가 자동적으로 공개되는 관리체제였다. 그 후 동년 2월 22일 운용기준이 책정되어 「투고자의 성명 및 핸들네임이 타인을 가장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투고를 삭제한다」(2항), 「투고기사가 삭제에 상당한다고 판단한 자는 투고 또는 전자메일로 삭제를 의뢰할 수 있다」(5항) 등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명예훼손의 투고를 삭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은 없었다 (갑2, 을4의1, 피고본인 및 변론의 전 취지).

투고의 삭제에 필요한 ID 및 패스워드는, 피고를 포함하여 모두 5~6명의 산능유니온의 조합원이 관리했으며, 투고의 삭제여부는 제3자에 의한 삭제요구 또는 자주적 판단으로 투고내용에 따라 개개인의 판단 또는 합의로 결정하고 있었다 (갑8의4, 을28, 29, 피고본인 및 변론의 전 취지).

B. 2005년 6월 22일 산능유니온의 집행위원장대행이 된 피고는 본 건 게시판에 「앞으로 산능유니온의 행동에 관한 전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으며, 교섭이나 그 밖의 창구도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투고를 했다 (을19).

또 피고는 동월 25일 본건게시판에 「검토 결과 『투고기사의 게재에 있어서는 모두 사전에 심사를 거치게 하고 투고게재의 법적책임 전부를 산능유니온이 지기로 한다』고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심의 결과 2005년 6월 25일 심야를 기해 홈페이지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시판의 투고에 이의가 있어 삭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투고기사를 특정한 다음 전자메일 또는 투고를 통해 합리적인 이유를 첨부하여 삭제의뢰를 해주십시오. 산능유니온은 게시판 관리자의 합의로

판단하여 삭제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투고를 했다 (갑17).

이에 의해 본 건 게시판의 관리체제는, 제3자에 의한 투고가 자동적으로 공개되는 종전의 체제에서, 2005년 6월 26일 이후 관리자에 의한 투고내용의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갑8의3, 을27 및 변론의 전 취지).

투고의 공개에 필요한 ID 및 패스워드는, 피고를 포함한 5~6명의 조합원이 관리하고, 투고의 공개 여부는 신속한 게재를 확보하기 위해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합의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투고의 공개 여부 기준으로는 언론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명백하게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한 공개한다는 방침을 취해왔다 (피고 본인).

C. 2005년 10월 9일 전기 B의 관리체제 변경이 본 건 게시판의 운용기준에 반영되어, 관리자가 이하의 (A) 내지 (D)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투고는 사전에 게재하지 않든가, 또는 사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3항)이 신설되었다 (갑2, 피고본인 및 변론의 전 취지).

(A)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B) 개인을 지명하여 비난, 중상 등으로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C)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D) 산능유니온의 제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

D. 전기 B의 관리체제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투고가 있었을 경우, 피해자인 당해 제3자는 관리자에게 당해투고의 삭제요구를 할 수 있었을 뿐 당해투고를 삭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 (변론의 전 취지).

### (6) 원고에 의한 삭제요구 등

A. 원고는 2005년 6월 8일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산능유니온의 당시 대표자인 미야(宮)에 대해 「당신이 본 건 게시판의 관리자라면 본 건 게시판의 위법한 투

고를 신속하게 삭제해 달라. 어느 투고가 위법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특정해 주기 바란다"고 기재한 동일자 통지서를 발송했다 (을3).

B. 이에 대해 산능유니온은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본 건 게시판은 산능유니온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 산능유니온으로서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 삭제를 희망하는 투고를 특정하는 형식으로 삭제요구를 하면, 성실, 신속하게 대응할 의사가 있다. 원고가 투고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본 건 게시판의 운용기준 5항에 따라 본 건 게시판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고, 그 취지를 대리인 변호사사무실에 통지해 주기 바란다」고 회답했다 (을4의1 · 2).

C. 원고는 그 후 산능유니온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투고를 특정한 삭제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 전기 A의 통지서가 미야(宮)에게 도달한 당시 본 건 게시판에 게재된 투고 수는 1,000개를 넘고 있었다. (이상, 변론의 전 취지)

(7) 발신자정보 개시(開示)청구

원고는 2005년 11월 하순 니푸티를 피고로, 본 건 게시판에 게재된 투고에 대해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도쿄지법은 2006년 6월 29일 니푸티에게, 원고에 대해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⑫의 발신자정보 개시를 명하는 판결을 언도했다. 그 결과 상기 5개의 투고는 피고가 투고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 을15, 원고 대표자)

(8) 피고는 2004년 2월 15일 산능대학 캠퍼스 7호관에 출입했다.

**2. 쟁점(1)A (피고가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 ⑨, ⑬, ⑭를 스스로 투고했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1) 피고가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 ⑨, ⑬, ⑭를 투고

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투고했음을 부인하는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 ⑨, ⑬, ⑭에서, 피고가 투고했음을 시인하는 본 건 투고 ⑦, ⑧, ⑩, ⑪과 동일한 핸들네임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 ⑨, ⑬, ⑭도 피고가 투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 건 게시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핸들네임을 사용하여 투고할 수 있는, 이른바 익명게시판이므로 이러한 게시판에서 각 투고자에 대해 특정한 핸들네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나 기술적인 수단도 없는 이상, 동일한 핸들네임을 복수의 투고자가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실제로 본 건 게시판에 있어서 「내부고발자」라는 핸들네임은, 산능유니온의 조함원이었던 丙山花子에 의해서도 사용되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피고가 투고를 인정하는 본 건 투고 ⑧, ⑩, ⑪에서 사용된 「개혁자」, 「분노하는 현역직원」이라는 핸들네임이 피고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丙山花子에 의한 「내부고발자」라는 투고에 피고가 관여한 근거로 별건의 준비서면 및 신문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갑15, 16) 이것으로 전기 판단이 좌우될 수 없다.

(3) 또 원고는, 피고가 투고를 부인하는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 ⑨, ⑬, ⑭는 그 전후에 있었던 투고와의 맥락이나 피고가 투고를 인정하는 표현과의 유사성 및 원고의 학점 또는 학위 인정의 본연의 모습을 비판하는 발언자세로 보아서도 피고가 스스로 투고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건 게시판의 성격상, 원고를 비판하는 발언의 자세가 공통하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원고의 상기 주장을 가지고 피고가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 ⑨, ⑬, ⑭를 스스로 투고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다.

### 3. 쟁점(1)B (본 건 게시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에 대하여

(1) 인터넷상의 게시판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투고를 게재한 행위는, 순간적으로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당해투고를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게시판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투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조리상(條理上)의 의무를 질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당해투고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투고에 대해, 투고자와의 관계 때문에 관리자가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관리체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관리자가 독선적으로 당해투고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삭제한다든가 하면 당해투고자의 언론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는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자가 어떠한 경우에 상기 조리상의 의무를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게시판의 목적, 관리체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의 유무 및 명예훼손의 양태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2) 우선 피고가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에 대해 삭제 의무를 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A. 앞에서 인정한대로, 본 건 게시판에 있어서는 2004년 1월 중순에 설치한 이후 2005년 6월 25일까지

의 사이, 제3자에 의한 투고가 자동적으로 공개되는 관리체제가 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본 건 게시판의 투고가 삭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자는, 2004년 2월 22일 책정된 본 건 게시판의 운용기준 5항에 따라, 투고 또는 전자메일로 당해 투고의 삭제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삭제하는 등의 수단은 없었다. 또한 명예훼손의 투고를 삭제하는 기준은 없었으나 투고의 삭제에 필요한 ID 및 Password는 피고를 포함한 5~6명의 산능유니온의 조합원이 관리했으며, 투고의 삭제 여부는 제3자에 의한 삭제 요구 또는 자주적 판단으로 투고내용에 따라 개개인의 판단 또는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는 니푸티와의 계약명의로 되어있다. (이상, 전기1(5)A)

이상의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고는 산능유니온으로부터 본 건 게시판의 관리를 수탁(受託)한 관리자란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본 건 게시판의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 건 게시판의 투고를 삭제할 권한을 가진 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투고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할 조리상의 작위(作爲)의무를 질 수 있다.

B. 한편 관리자로서는 투고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으며, 전문적으로 게시판의 관리만을 하고 있지 않을 관리자에게 상시적으로 게시판의 감시의무를 지우기에 곤란한 경우도 있다. 또 명확한 운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 의한 투고의 삭제는 당해 투고자의 언론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사용자인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한 투고를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산능유니온의 여러 활동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산능유니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는 본 건 게시판의 설치목적에 저해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건 게시판의 관리자의 한 사람인 피고로서는, 본 건 게시판의 투고에 관해서 언뜻 보아 제3자에 대한 비방, 중상을 포함하는 등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 내용의 투고를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에는 제3자에 의한 삭제요구가 없어도 삭제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조리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의 투고에 대해서는 제3자로부터 투고를 특정한 삭제요구가 있음으로서 비로소 삭제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C.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언뜻 보아 비방, 중상을 포함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전기1(6)에서 인정한대로 원고는 2005년 6월 8일자 통지서(을3)를 가지고 산능유니온 대표자인 미야(宮)에 대해 「본 건 게시판의 위법한 투고를 신속하게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특정 없이 포괄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동 통지서에 「어느 투고가 위법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특정해 주십시오」라는 기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능유니온으로부터 「산능유니온으로서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 삭제를 요구하면 성실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의사가 있다」고 기재된 2005년 7월 8일자 통지서(을4의1)를 받은 후 산능유니온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투고를 특정한 삭제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전기1(6)). 그런데 전문적으로 본 건 게시판의 관리만을 하지 않고 있는 피고가 다수의 투고를 상시 감시하여 그때그때 삭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석되는 바, 상기 2005년 6월 8일자 통지서(을3)가 미야에게 도달한 당시, 본 건 게시판에 게재된 투고 수는 1,000여 건이나 되어(전기1(6)C)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사실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의 삭제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 D.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자신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투고를 하고 있는 본 건에서 원고가 삭제요구를 하면 곧바로 피고의 반격에 부딪쳐 원고의 피해가 확대될 두려움이 크므로 원고에 의한 삭제요구를 삭제의무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다수의 투고를 상시 감시하고, 그때 그때 명예훼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삭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기 C판시(判示)대로이며, 원고는 스스로 삭제를 요구하는 투고를 특정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E. 이상과 같이,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에 대해 피고에게 삭제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다음에는, 본 건 투고 ⑨, ⑬, ⑭가 본 건 게시판에 공개된 점에 관해 피고가 투고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A. 앞에서 인정한대로, 산능유니온의 집행위원장대행이 된 피고는 산능유니온의 행동에 관한 책임은 모두 피고에게 있다고 선언한 다음 2005년 6월 25일 본 건 게시판에 「검토 결과 『투고기사의 게시에 있어서는 모두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투고 게재의 법적책임을 모두 산능유니온이 지도록 한다』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심의결과 이번에도 2005년 6월 25일 심야를 계기로 홈페이지를 전면 재개하도록 결정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투고를 했다. 그리고 본 건 게시판의 관리체제는 제3자에 의한 투고가 자동적으로 공개된다는 종전의 체제에서, 2005년 6월 26일 이후부터는 관리자에 의한 투고내용의 확인을 거쳐 공개되도록 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또 투고의 공개에

필요한 ID 및 Password는 피고를 포함한 5~6명의 산능유니온의 조합원이 관리하고, 투고의 공개여부는 신속한 게재를 확보하기 위해 개개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내용에 따라 합의로 결정해 왔다. (이상, 전기1(5)B)

B. 이와 같이 피고는 2005년 6월 26일 이후 산능유니온의 집행위원장대행으로서 상기 조합원과 함께 투고내용을 모두 사전에 심사하여 본 건 게시판에 공개하는 투고에 관한 법적책임은 산능유니온이 진다는 것을 본 건 게시판에 명시했으므로, 피고는 산능유니온으로부터 본 건 게시판의 관리를 수탁한 관리자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건 게시판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투고가 있었을 경우, 피고는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해투고를 공개하지 않을 조리상의 의무를 지며 이에 반해 당해투고를 공개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삭제해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시점 이후 본 건 게시판에 공개한 투고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피고는 본 건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산능유니온과 함께 스스로 투고한 자와 동등의 책임을 감수해야만 한다. 더욱이 본 건 게시판의 관리자인 상기 피고 등 조합원은 투고의 공개여부를 내용에 따라 합의로 결정했다면, 어느 누군가의 관리자가 공개한 투고에 대해 다른 관리자도 상호 연대하여 그 책임을 저야만 할 것이며,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당해투고를 신속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C. 이상에 의하면 피고는 본 건 게시판에 공개된 본 건 투고 ⑨, ⑬, ⑭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스스로 투고한 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저야만 한다.

#### 4. 쟁점(2) (본 건 각 투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 전기3까지에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본 건 각 투고 중 피고가 투고한 것에 다름이 없는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⑫, ⑮ 및 관리자로서 책임을 저야 할 본 건 투고 ⑨, ⑬, ⑭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이하 상기 각 투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2)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본 건 투고 ⑦ 내지 ⑮가 적시하는 사실 등은 다음과 같다.

A. 본 건 투고 ⑦, ⑩, ⑫는 「산능대학의 17명의 졸업생 및 재학생이 문부과학성에 대해, 산능대학이 MILL, 즉 학위를 난발하고 있는 것을 실명으로 고발한 결과 문부과학성이 산능대학에 대해 엄한 행정지도를 하고 엄중한 감시 하에 두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B. 본 건 투고 ⑧은 전기 A의 사실 및 이를 전제로 「산능대학의 학생은 모두 자격시험이나 학력 세탁(laundering)을 목적으로 입학하고 있다」는 사실 및 「산능대학 207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원고의 이사장 앞으로 『더 간단하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요망서를 서명하여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C. 본 건 투고 ⑩은 A의 사실과 B의 사실 중 요망서 제출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D. 본 건 투고 ⑬는 「산능대학은 말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논평과 함께 「산능대학은 공인회계사가 뭐라고 하던 재무적으로 위기」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E. 본 건 투고 ⑭는 「산능유니온의 전 위원장이 산능유니온을 탈퇴하고 원고를 퇴직했다」, 「원고가 전 위원장을 공갈했다」는 사실 등을 적시하고, 이를 전제로 「탈퇴 및 퇴직의 경위 및 공갈의 문제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논평을 쓴 것이다.

F. 본 건 투고 ⑮는 「원고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에 지극히 문제가 있는 현 이사장의 독재적인 경영 결과 전

국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G. 더욱이 본 건 투고 ⑨는 「직장의 분위기를 흐려 놓아 우리들의 의욕을 꺾어놓고 있는」 인물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원고에게 항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3) 전기(2)A 내지 F와 같이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가 적시하는 사실 등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적절 공정하게 인정되어야만 할 학점인정기준(전기(2)A 내지 C), 학생의 근면(勤勉)의욕의 정도(동B, C), 대학 존속의 기반인 경영상황(동D, E) 및 운영상황(동E, F) 등 학교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좌우하는 중요사항과 관련, 원고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해되게 한 것이므로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4) 그리고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는 인터넷상의 본 건 게시판에 공개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5) 이상에 의하면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

**5. 쟁점(3)A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법리에 근거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지) 에 대하여**

(1)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는 학교법인인 원고의 대학운영 및 경영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산능유니온의 목적달성을 설치목적으로 한 본 건 게시판에 투고된 것이므로 본 건 각 투고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한 것이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된다.

(2) 진실성 및 상당성에 대하여

A. 피고는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 ⑮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며, 또는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B.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에 대하여

(A) 전기4(2)A 내지 C에서 판시한대로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는 (a)「산능대학의 17명의 졸업생 및 재학생이 문부과학성에 대해, 산능대학이 MILL, 즉 학위를 난발하고 있는 것을 실명으로 고발한 결과 문부과학성이 산능대학에 대해 엄한 행정지도를 하고 엄중한 감시 하에 두었다」는 사실, (b)「산능대학의 학생은 모두 자격 시험이나 학력 세탁(laundering)을 목적으로 입학하고 있으며, 207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원고의 이사장 앞으로 『더 간단하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요망서를 서명하여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B) 가령, 상기 (a) 및 (b)의 각 사실이 진실이라면, 행정지도문서나 요망서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텐데 이것들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는 2채널의 투고를 가지고 진실성 및 상당성을 뒷받침할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2채널의 투고에는 일부분 진실이 포함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투고도 적지 않게 혼재한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으며, 투고내용에 관한 객관적 입증도 없는 본 건에서 2채널의 투고를 가지고 상기 (a) 및 (b)의 각 사실이 진실이거나 또는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C. 본 건 투고 ⑮에 대하여

(A) 전기 4(2)F에서 판시한대로, 본 건 투고 ⑮는「원고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에 지극히 문제가 있는 현 이 사장의 독재적인 경영 결과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B) 피고는 전기 제3의4(피고의 주장)(2)B(A) 내지 (D)의 각 사실을 가지고 본 건 투고 ⑮의 진실성 및 상당

성을 입증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황폐해가고 있다」고 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D. 더욱이 피고는 본 건 투고 ⑬, ⑭에 대해, 진실성 및 상당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동 각 투고가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3) 이상에 의하면,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 6. 쟁점(3)B(대항언론의 법리 등에 근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언론에 의한 대항으로 명예회복 시도가 가능했다는 것을 이유로,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의 위법성은 대항언론의 법리에 의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언론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대항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기본원리이며,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충분히 반론을 함으로써 명예회복이 가능한 논의의 광장이 존재하며, 그 반론이 주효(奏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상대하는 당사자 간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명예훼손 발언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가해자가 그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발언내용, 가해자가 발언하기에 이른 경위 및 가해자의 발언내용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의 발언이 대항언론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는 상호 간에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언론을 통한 응수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항하는 능력 및 의사가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 표현에 반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게시판에서의 투고는, 상대하는 당사자 간의 논쟁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언론과 언론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개재할 여지가 있어, 열람하는 목적, 빈도 및 횟수는 게시판의 열람자마다 다를 것이므로 열람자가 한쪽의 언론에 대한 다른 쪽의 반론(대항언론)을 반드시 확인한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기 주장에 따르면 열람자가 한쪽 당사자의 언론(명예훼손표현)만으로 논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어, 실제로 다른 쪽 당사자가 언론에 의한 대항을 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회복을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본 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에 대해 실제로 반론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본 건 게시판상에서 원고의 명예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가 적시하는 전기 5(2)B(A)의 (a) 및 (b)의 사실에 대해, 상기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허위라는 것을 언론으로 반영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으며, 본 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본 건 게시판상에서의 반론을 요구하는 것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삭제요구에 의해 명예훼손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이유를 들어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의 위법성은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삭제요구에 의해 그 후의 명예훼손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명예훼손 표현의 위법성에 영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피고는 본 건 각 투고의 표현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의 위법성은 조각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상기 주장에 따르면, 익명게시판에서는 표현이 과도하지만 않으면 명예훼손 표현도 허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한 결론은 전혀 채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7. 쟁점(3)C (단결권에 근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하여**

(1) 피고는 단결권(헌법 28조)에 근거하여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의 위법성은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는 노동조합인 산능 유니온의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 바, 조합활동이 정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조합활동의 목적, 양태 및 내용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만 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용자와 대치하여 비판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본 건과 같이 사용자에 관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경우에는, 당해 표현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표현 자체가 상당하고 표현활동의 목적 및 양태 등에 있어서도 정당한 경우에는 헌법 28조, 노동조합법 8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이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는 정당한 노동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A.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는 산능유니온의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한 본 건 게시판에서, 피고를 포함

한 조합원에 의해 투고 또는 공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인 산능유니온의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각 투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상에 설치된 본 건 게시판에 공개된 것이기는 하나,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표현양태를 이유로 바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B. 그러나 전기 4, 5에서 판시한 대로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가 적시하는 사실은 모두 일반인들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좌우하는 중요사항에서, 원고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사실이 진실이고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다.

C. 이상의 의하면 상기 각 투고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逸脫)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8. 쟁점(4) (본 건 투고 ① 내지 ④, ⑥, ⑨, ⑬, ⑭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본 건 투고 ① 내지 ④, ⑥, ⑨, ⑬, ⑭에서 4개의 핸들네임을 사용하여 피고외의 원고의 교직원 및 동 OB가 익명으로 투고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업무방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상기 주장은, 모든 투고를 피고 스스로가 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2에서 판시한 대로 본 건 투고 ① 내지 ④, ⑥, ⑨, ⑬, ⑭에 대해서는 피고가 스스로 투고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이외의 제3자가 투고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상기 주장은 그 전

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 9.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요약

이상에서 판시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⑫, ⑮를 투고하고 본 건 투고 ⑬, ⑭를 공개한 것으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10. 쟁점(5) (원고의 손해) 에 대하여

(1) 명예훼손에 의한 일실(逸失)이익 (입학자 수 감소에 의한 손해) 에 대하여

A. 원고는 본 건 각 투고로 2006년도 산능대학 및 산능단대(短大)의 통신교육과정 입학자 수가 감소하여 합계 3억 1,043만 4,000엔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B. 본 건 각 투고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에 한정되고, 그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상기 각 투고가 원고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산능유니온이 운영하는 본 건 홈페이지에 설치된 본 건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상기의 불과 8개의 투고에 의해 입학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용이하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본 건 게시판의 존재와 산능대학 및 산능단대의 통신교육과정의 입학자 수의 증감(增減)사이에는 특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에 의한 명예훼손과 2006년도 입학자 수 감소와의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입학자 수 감소에 의한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2) 명예훼손에 의한 무형(無形)손해에 대하여

A. 전기 4에서 판시한 대로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가 적시하는 사실 등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학교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좌우하는 중요사항에서 원고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전기 5에서 판시한 대로 상기 각 투고가 적시하는 사실 등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게시판이 원고의 교직원에게 의해 구성된 노동조합인 산능유니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산능대학」을 검색한 자가 본 건 게시판을 열람, 상기 각 투고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열람자가 상기 각 투고가 적시하는 사실 등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상정(想定)된다.

그리고 상기 각 투고는, 본 건 게시판이 폐쇄된 2007년 7월 31일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기 각 투고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상에 의하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B. 원고와 피고는 본 건 화해 17항에서, 「원고와 피고는 상호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는 언동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전기 4에서 판시한대로 상기 각 투고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는 본 건 화해 17항의 취지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C. 또한 증거(갑11,12,13, 을15, 원고대표자)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A)원고가 본 건 게시판에서 본 건 화해 전과 동일하게 비방, 중상되어 산능대학 학장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가 게재되었다고 판단, 2005년 4월경 본 건 게시판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원고의 이사장과 교직원이 본 건 게시판의 조사대응에 나섰다 사실, (B)본 건 각 투고에 의해

교직원 이 원고의 재무상황에 의심을 품게 되어, 교직원 간의 불신감이 증대하는 등 학내가 혼란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동년 7월 22일 산능대학 및 산능단대의 교원 및 관리직 전원을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원고의 재무상황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C) 원고가 동년 11월 하순 도쿄지법에 니푸티를 피고로, 본 건 계시판에 게재된 8개의 투고와 관련하여 발신자정보의 개시(開示)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D) 원고가 상기 조사에 대한 대응, 설명회의 개최, 소송제기 등을 위해 상응(相應)한 지출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본 건 각 투고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에 한정되는 바, 이들 투고가 본 건 계시판에 공개된 것은 상기(A), (B)보다 뒤인 2005년 7월 24일 이후라는 사실, 본 건 투고 ⑮가 공개되기까지는 본 건 계시판에 공개된 투고는 합계 1,813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변론의 전 취지)로 미루어, 상기(D)의 원고의 지출 중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D, 한편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의 내용은, 원고를 비방, 중상하는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전기 1(4)C에서 인정한 대로 노동조합인 산능유니온이 개설한 본 건 계시판의 설치목적은 산능유니온의 제 활동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전개하여 산능유니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또한 전기 1(6)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산능유니온에 대해 삭제해야 할 투고를 특정하여 삭제요구가 가능하고 이에 의해 손해의 확대 방지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삭제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E. 이상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본 건 투고 ⑦, ⑧, ⑩ 내지 ⑮라는 일련의 명예훼손행위에 의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400만 엔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 11. 쟁점(6) (본 건 화해의 채무불이행 해제(解除)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본 건 화해 5항과 대등관계에 있는 13항 및 17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피고에 대해 본 건 화해 5항의 채무불이행 해제에 근거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동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지불한 500만 엔의 지불을 청구하고 있다.

(2) 그러나 본 건 화해조항에는 피고가 본 건 화해 13항 및 17항에 위반한 경우의 위약금 규정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건 화해 5항과 13항 및 17항이 대등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원고의 상기 주장은 이유가 없다.

### 12. 결론

이상에 의하면 원고의 본 소 청구는,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으로 450만 엔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의 다음날인 2006년 11월 3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체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다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64조 본문, 61조를, 가집행의 선언에 대해서는 동법 259조 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No. 1288, pp 134~150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영국사례 1

제기된 불만 내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치가 취해졌다면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 불만제기인: Peaches Geldof
- 인용된 조항: 제1조(정확성)
- 언론사: Daily Star

불만내용

Peaches Geldof는 변호인 Swan Turton를 통해 2008년 9월 'Peaches : 5천 파운드에 나와 하룻밤을'이라는 제목으로 「Daily Star」에 실린 기사가 실천강령 제1조(정확성)에 어긋난다며 언론불만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문사가 이미 충분한 개선 조치를 취한 이후여서, PCC는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신문은 1면 기사에서 불만제기인이 "그녀와의 교제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고, 그

녀와 그녀의 매춘부 동료들은 상류 인사들의 파티에서 막대한 돈을 긁어모았다"고 보도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기사 내용에 따르면 Peaches Geldof가 명사들의 파티에서 돈을 대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문 1면에 사용된 '5천 파운드에 여자와의 하룻밤'이나 '나와 하룻밤'이라는 문구들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성산업과 연결되고 있다며 몇 가지 예를 보였다.

그는 신문사가 Peaches Geldof 관련 이야기에 1면 전체 페이지를 할애했다는 사실은 매우 선정적인 내용(예를 들어 그녀가 단지 파티에 참석했다기 보다는 그녀의 고객들이 성산업에 연결되어 있다는 등)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1면에서 5면까지 이어진 기사는 "불만제기인이 상류 인사들의 파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6천 파운드를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또한 부정확한 것이며 그녀는 DJ로서의 공연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Peaches & Dream', 'Geldof와 그녀의 동료들을 하룻밤 5천 파운드에 고용'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기사는 속옷 차림인 Geldof의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성적 함의를 내포하는 것으로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1면의 기사가 5면 기사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사는 불만제기인이 DJ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으며, 이는 "DJ 일을 하고 있다"는 Geldof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

이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그녀의 대변인이 ‘그녀는 지원할 가치가 있는 브랜드의 행사에만 참석을 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인용했으며, 서비스가 성적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2면이나 5면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크기의 사진과 함께 사과 기사를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Daily Star」는 “9월 29일자 1면과 5면에 Peaches Geldof에 대한 기사를 실은 바 있으며, 1면에 ‘PEACHES : 5천 파운드에 나와 하룻밤을’, ‘그녀의 매춘부 동료들은 상류 인사들의 파티에서 막대한 돈을 긁어모았다’는 기사에 나온 것과 달리 그녀는 런던 패션위크 같은 행사나 파티에 참가하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가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제목에 대해 Peaches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불만제기인은 사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했으나, 그 기사가 1면에 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사와 PCC가 다른 사례에서는 1면에 실린 기사에 대한 사과는 1면에 게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녀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1면만을 봤을 것이기 때문에 1면에 사과가 필요하며, 신문사는 파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사과가 좀 더 두드러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결 정

충분한 개선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

### 평 결

위원회는 불만제기인이 실천강령 제1조(정확성)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불만이 타당하다고 동의한다. 불만제기인이 파티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 돈을 받았다고한 신문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발행 전에 신문사가 이미 알았던 것이다. 또한 사과가 1면에 실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불만제기인의 염려에 심정적으로 동감한다. 신문사는 이를 불성실하게 다뤘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문사가 비록 본문에서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1면에 의도적으로 암시하는 제목을 실음으로서 독자를 오도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규정의 기준에 못미치는 조잡한 저널리즘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신문사가 불만제기인에게 사과해야 한다. 양측은 사과문에서 중요 사실이 부정확했다는 것을 언급한 부분과, 1면의 기사가 함축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위원회와 관련해 남은 문제는 ‘얼마나 두드러지게 사과 내용을 보여야하느냐, 1면에 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과가 1면에 게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1면 내용은 특정한 해석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만제기인이 얘기한 ‘서비스’에 대해 특정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 기사는 그 서비스가 어떤 성적인 방법이라고 암시한 적이 없으며, 파티에서 공연은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면과 달리 1면 기사에서는 특별히 부정확한 주장을 한 적이 없으므로, 사과문을 2면에 사진과 함께 게재하기로 한 결정은, 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것이다. 위원회는 신문이 이에 대해 사과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기를 희망한다.

2009년 4월 2일 평결번호 78

영국사례 2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취재하는 것은 실천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불만제기인 : Mr. Phil Adey  
인용된 조항 : 제6조(어린이)  
언론사 : Daily Post (웨일즈)

불만내용

St. Asaph에 거주하는 Phil Adey는 「Daily Post」가 실천강령 제6조(어린이)를 위반,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15세 딸을 인터뷰했다며 언론불만위원회(PCC)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안에 대해 PCC는 잠작할 만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불만제기인의 주장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불만제기인은 기자가 자신의 딸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의 15세 딸을 집에서 인터뷰했다고 진술했다. 그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신문사는 기자가 그 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몇몇 집의 문을 두드렸고, 불만제기인의 딸은 그 사고가 어디서 일어났고, 다친 소년이 누구인지 확인해주었다. 기자는 그 때 그 소녀가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16세 이하라는 것

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그녀의 부모는 부재 중이었고,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자는 즉시 취재를 중단하고 집을 떠났다.

결 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 결

실천강령 제6조(어린이)는 “16세 이하의 어린이는 그들이나 다른 어린이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터뷰나 사진 촬영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고려해야할 사항은 두 가지다. 기자와 불만제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인터뷰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녀의 복지와 관련된 것인가,하는 점이다.

첫 번째로, 기자가 불만제기인의 딸로부터 사고에 관해 상당한 정보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대화가 (간단한 유사) 인터뷰

로 분류된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조항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친구의 사고에 관한 뉴스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 아버지에 의하면 그녀는 그 사고에 대해 대답해야 했던 것에 당황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마음 아파하는 15세 소녀를 인터뷰 한 것은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 비록 기자가 그녀의 교복을 입은 모습과 그녀가 희생자를 알았다는 점에서 그녀가 16세 이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 취재 시도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더라도, 기자는 취재 도중 이를 안 즉시 인터뷰를 중지했다. 이 조치는 뒤늦은 것으로, 기자는 그 소녀가 인터뷰에 관여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지는 않았으며, 불만제기인의 딸에 대한 어떤 공공의 영향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조항 위반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09년 11월 2일 평결번호 78

## 호주사례 7

## 언론이 취재대상자에게 기사내용에 관한 적절한 답변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불만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평결번호 1418 (2009년 3월 평결)

호주언론위원회(APC)는 피지 고등 법원의 판사인 Jocelyne Scutt 이 「The Australian」에 대해 제기한 불만의 주요 부분을 기각한다. 그러나 군사 정권과의 '연관성'을 주장한 신문사의 주장에 대한 불만은 인용한다.

2006년 12월 피지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고, Scutt 판사는 군사 정권 기간 내에 임명됐다.

불만제기 대상 기사 중 2008년 3월 10일자 기사는 그녀의 판사 임용 수락에 관해 보도하면서, 그녀가 고국을 버리고 사임한 여섯 명의 판사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용된 고등법원 판사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또 '피지여성 권리운동' 단체와 두 명의 저명한 변호사가 그녀를 비판한 내용과 함께, 호주 외교부 대변인이 '피지의 사법부는 호주 국적자를 포함, 고국을 떠난 판사들 다수에 대한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고 비난하고, 피지 임시 정부는 피지의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를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2008년 3월 15일자 기사는 '공공 연대를 위한 태평양 센터' 대표 Angelina Heffeman의 말을 인용하여 그 단체를 '피지의 민주주의를 위한 압력단체'로 묘사하고, Heffeman이 호주의 여러 법률 단체와 정부에 '호주 변호사들의 해외 활동을 규제할 방안'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서 Heffeman은 호주 법률 단체들에게 '불법적인 피지 사법부 임명'을 인정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며 윤리적으로 비양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Scutt 판사는 그 기사들이 '매우 명예훼손적인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고, 출판물에 대한 회수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그녀가 주장한 핵심은 신문이 자신이 '군사 정권'으로부터 판사 임명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피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또 피지의 사법 인사는 피

지 사법 서비스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문은 이러한 주장이 '솔직하지 못하며' 피지 사법 서비스 위원회는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또 Scutt 판사는 Tasmania 반차별 감독관이었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여성 운동가이기 때문에 다른 판사 임용자에 비해 그녀에게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정당하며, Scutt 판사가 공인이기 때문에 군사 정권 하의 판사 임용 수락과 관련한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고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Scutt 판사는 사법부의 인사에 관한 문제는 현재 심리 중인 문제(보도가 금지된)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썼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APC는 이러한 상황이 (자신의 임용 관련 보도에 대한) 그녀의 불만을 정당화하는 데 어떤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한다. APC는 신문이 처음 기사를 게재하기 전 Scutt 판사의 의견을 구하기 위

한 시도가 적절치 못 해 보인다는 점에서 신문사를 비판적으로 본다. 그러나 Scott 판사는 그녀의 판사 임용 수락을 둘러싼 문제들에 답할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답변을 거절한 것에 주목한다. 그녀는 판사로서

‘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며 답변을 거절했고, 신문사가 계속 보도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C는 불만 제기인이 ‘피지의 군사 지도자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군사 정권에 참

여했다’고 보도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으며, 이는 군사 정권 인사들과의 협력과 연계를 함의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 판단한다. 신문사는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시킬 여편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

### 호주사례 2

#### 언론사가 특정 이슈에 대해 여러 시각을 보여 주었다면,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평결 번호 1416  
(2009년 3월 평결)

호주언론위원회(APC)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다룬 「The Australian」의 2008년 11월 26일자 칼럼에 대한 Rabih Alkadamani의 불만을 기각한다.

불만제기 대상 기사는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그 지역을 방문한 후 Janet Albrechtsen가 그 곳에서 겪은 경험과 시각을 담은 기사다. 그녀는 이 기사에서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얘기와 함께 서방의 지원을 받아 증오를 키우는 교육을 받는 팔레스타인의 어린 세대들이 미래의 평화를 요원하게 한다는 내용 등 ‘평화를 막는 장애물들’에 대해 얘기했다.

Alkadamani는 Albrechtsen의 기

사가 증오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아들에게 돌리는 인종주의적인 기사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기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편향된 시각으로 비판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 아래서 고통 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배제함으로써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가 이스라엘 교과서에 담긴 왜곡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태만했다고 비판했다.

Alkadamani는 「The Australian」에 Albrechtsen의 시각을 비판하는 의견 기사를 보냈으나, 「The Australian」은 Albrechtsen의 칼럼이 나간 이후 다른 독자 의견을 실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의견 기사를 실지 않았다.

Alkadamani는 「The Australian」의

의견란 편집자 Rebecca Weisser 또한 이스라엘의 후원을 받아 그 지역을 여행한 사람이라 지적하고, 이러한 경험이 11월 29일자 기사가 친 이스라엘 성격을 띠게 만들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APC는 신문의 의견란은 언제나 논란이 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제에 관해 언론사가 시의적절하게 여러 시각을 보여주는 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췄다고 봐야할 것이다. APC는 언론사는 특히 후원을 받는 취재 여행을 할 때는 더 공정성을 담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 신문사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한다.

뉴질랜드사례

**개인적 사안과 관련된 보도라 하더라도 공적인 목적이려면  
사생활의 침해는 어느 정도 수인 되어야 한다**

- 사건 번호 : 2066 DAVE HANSFORD v. NATIONAL BUSINESS REVIEW
- 위원회 회의 : 2009년 3월

**배 경**

2008년 4월 24일 「National Business Review」의 ‘Media Watch’ 정기 칼럼에서 David Cohen은 AUT Media의 ‘Hot Topic’ 온라인 코너에 실린 사과문과 댓글을 기사화했다.

기사화된 사과문은 AUT Media의 생태 관련 기고자인 Dave Hansford가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자들이 주류 매체에서 편애를 받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후 잡지사와 결별하게 된 일과 관련된 것이다.

Cohen의 칼럼은 “Hansford가 환경 문제와 관련, 문제적 의견을 냄으로써 편집자와 결별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사는 이와 관련, “Hansford가 투고한 글을 「Forest and Bird」가

신지 않기로 한 일과 결국 사과와 기사 철회로 끝난 국립 수질 대기 연구소(NIWA)의 연구원에 관한 기사 등을 포함, Hansford와 언론사들 사이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불만 내용**

Hansford는 8월 28일 언론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에 관한 Cohen의 발언은 부정확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언론위원회의 정확성, 공정성, 사생활, 비밀보장, 의견과 사실, 편법에 관한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불만제기 대상 기사는 「Forest and Bird」가 자신의 칼럼을 거부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며, 그의 칼럼은 다른 이유로 실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 때문에 국립 수질 대기 연구소(NIWA) 관련 기사에 대해 사과하게 됐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며, 단지 NIWA

는 기사 내용 중 인용과 관련된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고, 기사 철회는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Hansford는 또 Cohen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잡지들은 참고하지도 않았다고 불평했다.

불만제기인은 그 칼럼이 자신을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뉴질랜드 기후 과학 연맹(NZCSC)에 대해 비판한 것을 보복하려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과 「Forest and Bird」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Cohen이 획득한 것도 사생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박**

해당 신문은 Hansford와 관련한 기사를 ‘Media Watch’ 칼럼에서 다룬 것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제기인은 Cohen이 뉴질랜드 기후 과학 연맹(NZCSC)을 대신해 보복한 것이라 주장하나, 불만제기인의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깎아내리

려고 했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 Cohen은 NZCSC 쪽 사람들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 칼럼을 쓰기 위한 과정에서 Cohen은 Hansford의 다른 언론 활동들을 조사할 자격이 있고, 불만 제기인과 해당 잡지사 간의 이메일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이 없었으며 그것은 적절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칼럼에서는 이메일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재반박

Hansford는 Cohen이 NZCSC와 관련이 없다는 해당 언론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단체에서 두 명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해당 언론사에 투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Cohen이 NZCSC를 대신해 자신에게 보복하려고 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메일은 그 주제와 관련이 없음에도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 획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논 의

기후 변화는 각 정파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한 논의가 다

뤄진 방식을 보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그러한 보도와 관련된 배경을 함께 다루는 것 역시 예상할 만한 일이다.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는 Hansford를 포함한 칼럼니스트들이 자신 또한 주관적 의견이 담긴 반응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Cohen은 Hansford와 관련된 자신을 획득하면서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증거도 없다. 이 사안은 개인에 관한 일이라기보다 공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므로 Hansford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볼 수 없다.

Media Watch 칼럼에서 Cohen이 NZCSC를 대신해 악의를 가지고 글을 썼다는 증거도 없다. 같은 언론사에 글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사에 기고한 두 명의 NZCSC 회원을 그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다른 동료 기고자들과 만나지 않고 한 언론사와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사실과 의견에 관한 위원회의 원칙은 언론이 그 둘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칼럼에서 Cohen의 의견은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합리적인 용어로

표현된 그의 주요한 관심은 웹사이트에 올라온 의견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기후 변화와 관련 언론에서 다루진 '예언적인 시나리오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자신은 '무엇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언론사와 Hansford의 공적인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 언론사와 Hansford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당사자에게 어떤 손해를 유발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한 불화는 매체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불만제기인이 다른 편집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보도가 공평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Hansford의 글이 잘못됐고, 정정됐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Media Watch 칼럼은 왜 기고문 하나가 실리지 못했는가를 설명하기 보다는 편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Hansford는 그 글이 인터뷰의 주제가 흥미롭지 못하기 때문에 실리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Media Watch 칼럼은 「Forest and Bird」가 Hansford가 쓴 NIWA

기사와 관련 사과해야 했다고 주장 했다. 칼럼은 그 사과가 기사의 인 용과 관련한 문제라고 밝혔지만, 기사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도 했다. Hansford의 글이 특정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저널리즘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위원회는 NIWA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본질을 판단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Hansford가 사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Cohen은 그 사과에 대한 배경을 밝힐 자격이 있으며, 그가 전문적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밝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결정

불만제기인이 부정확성, 사생활, 비밀의 보장, 의견과 사실의 구분, 편법적 정보 취득 등에 대한 위반으로 제기한 문제를 기각한다.



# 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인천지법, 폭력 피해 동영상 인터넷 게시 '무죄'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7일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벌금 70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폭행당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자신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의 비방으로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로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정당행위”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10월 30일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CCTV에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인터넷 이 아파트 동호회 카페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2009년 5월 17일

### 확정판결과 상반된 글 게재해도 구체적 유추 안 되면 명예훼손 안 돼

판결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토대로 책을 발간했다더라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용호(51)씨가 엄삼익(55)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77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전부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시한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글 내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여부를 가려야지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나아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더라도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글 가운데 몇몇 문장의 내용 자체로는 ‘여운환이 20억 원 투자금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40억 원 어음을 요구했다’, ‘특검은 여운환의 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등의 의미 전달에 불과할 뿐”이라며 “각 문장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곧바

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 변호사는 지난 2004년께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게이트’ 사건의 자금전달책이자 조폭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서 여 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엄삼익 변호사의 사건 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 2004년 2월호에 게재했다. 그런데 게재된 글 가운데 ‘이용호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상반된 여 씨의 진술이 포함돼 있다. 이용호 씨는 엄 변호사를 상대로 “확정판결 난 사건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엄 씨의 글 일부가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률신문 2009년 3월 10일

## 법원 “지만원, 문근영 비방글은 색깔론”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해 영화배우 문근영(22) 씨의 기부 행위를 두고 ‘빨치산’을 언급하며 비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색깔론’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성곤)는 17일 지 씨가 문 씨와 관련한 자신의 글을 왜곡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 씨가 자신의 글에서 문

씨의 기부 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지 씨의 각 글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춰 ‘문근영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지 씨는 지난해 11월 문 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 동안 8억 5천만 원

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등의 글을 올렸다.

또 문 씨 외조부의 빨치산 전력을 문제 삼으며 “순녀인 문 씨의 선행은 빨치산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방했다.

한국일보 2009년 4월 18일

## “방송인터뷰 고의 없다면 명예훼손 아냐”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했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김상배 부장판사)는 7일 이모(64)씨가 “평소 데리고 있던 A씨를 ‘현대판 노예’로 묘사한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모(76) 씨 등 마을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고들에게 ‘원고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A씨 옷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 A씨가 임금을 받지 않고 원고의 과수원에서 일했던 점, 원고가 지능이 떨어지는 A씨를 혼자 집에 두고 며칠씩 집을 비웠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인터뷰에 응하면서 그들이 보거나 느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인터뷰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던 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중

합하면 피고들이 어떠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6년 5월 모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현대판 노예’를 부리는 것처럼 방송되자 방송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소송을 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이어 방송국과 인터뷰한 김 씨 등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소를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2009년 5월 7일

## 인천지법, “명예훼손 공연성 인정 신중해야”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며 “특정 소수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들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들은 사람이 B씨뿐이고 B씨가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

다고 불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인천 남구 자신의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한 B씨에게 C씨의 불륜관계를 얘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장을 냈다.

뉴스시스 2009년 5월 15일

##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오보 전시, 500만 원 배상

조선일보의 68년 ‘이승복 어린이 일가족 학살’ 보도에 대해 현장 취재도 거치지 않은 ‘작문’ 수준의 허위보도로 고 주장하며 ‘오보 전시회’를 연 김주언 전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조선일보에 5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선일보사가 김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12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에 보도된 이승복의 말은 원고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조선일보가 68년 12월 11일 사회면에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 입꺾어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이승복 어린이 가족 살해사건 기사에 대해 “이승복 어린이가 무장공비에게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 등의 보도는 취재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 작성한 것”이라며 지난 98년 ‘오보 전시회’를 열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어린이와 일가족을 학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승복 사건이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했다. 그러나 2심은 “30여년을 이승복 사건이 진실로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 보도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전시회를 열 때는 신빙성이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의혹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피고는 사건의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이승복 사건 당시와 현재의 대북관계 인식변화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오보 전시회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 11월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률신문 2009년 2월 13일

## 법원 “진중권 교수 칼럼, 배상책임 없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대한민국의 특수수행자회의 추모제 때문에 변경된 것과 관련, 추모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특수수행자회의(이하 수행자회) 회원 200명이 진교수와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칼럼이 수행자회 구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촛불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추모제가) 개최됐다는 취지를 언론 중 나타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이는 공공의 이해에 대한 단순 의견표명이거나 그 전제가 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사에 대해 비판적 평가나 의견을 제시한 진 교수의 칼럼은 공론을 형성·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점에서 공공성이 있다”며 “특이한 이름의 위패에 대해 실존인물이 아닐 수 있다고 본 것 역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행자회는 지난해 6월 5~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특수수행자 영령에 대한 추모행사를 열었고 이 때문에 촛불집회 장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됐다.

진 교수는 같은 달 16일 노컷뉴스에 게재한 ‘북과공작수행자회의 개그쇼’라

는 칼럼을 통해 광장 잔디밭에 모셔진 위패에 무생물이나 외계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포함돼 있었고 북과공작 희생자의 99.8%가 민간인 출신인데 수행자회는 군 출신 공작원이 만든 단체라며 행사 주최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 교수는 또 북과공작이 지난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중단됐는데도 행사에 1981년생이 참석한 점, 수행자회가 행사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행자회와 회원들은 칼럼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으며 합계 3억 원의 위자료료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2009년 4월 5일

## 포털 게시물 삭제 요청 시 '명예훼손 사유·URL' 밝혀야

포털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유와 게시물의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1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KISO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에 따르면 인터넷 상의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명확히 기재해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

또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임시조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기관 등이 URL의 적시 없이 포괄적 요청을 남발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이른바 '블라인드 처리'라 불리는 임시조치를 하더라도, 이것이 '예외적 조치'로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요건과 사후절차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KISO는 또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 모니터링에 의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서는, 자칫 '사적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작업과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 고려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번 결정에 서는 해당 의무를 삽입하지 않았다.

이 밖에 임시조치 이후의 게시물 처리 방침과 포괄적 요청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공동의 처리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김창희 KISO 정책위원장은 "명예훼손성 게시물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KISO의 이번 결정이 모든 범위를 아우르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인터넷 게시물의 책임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축 가운데 어느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 고민하면서 내린 첫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KISO의 결정은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7개 회원사의 모든 포털 사이트에 적용된다.

뉴스 2009년 4월 21일

## 고법 "학사모 기부금 요구 보도 정당"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교복업체에 수십억 원 대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신문 보도는 정당한 것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사모가 문화일보와 아이비클럽 등 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이상 일부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사로 인해 학사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했지만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문화일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학사모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사모는 문화일보가 지난해 2월 "교복 값 현실화 운동을 벌여 온 학사모가 대형 교복업체들에 사회환원 기금으로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자 문화일보와 교복업체 3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하는 한편 2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9년 3월 18일

- 강재원(2009). IPPL 광고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동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주최 ‘미디어 연구의 새지평 - 다원적 매체환경 하에서 광고효과 연구’ 발제문.** 2009. 5. 29
- 김민기(2009). 광고 측면에서 본 미디어 관련 법안. **한국광고홍보학회 주최 ‘2009년 쟁점과 토론 - 광고 측면에서 본 미디어 관련 법안’ 발제문.** 2009. 2. 27.
- 김보라미(2009).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법리적 쟁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주최 ‘미디어법 개정 관련 쟁점토론회 -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발제문.** 2009. 5. 28.
- 김성태(2009). 인터넷과 한국사회 : 인터넷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주최 미디어법 개정 관련 쟁점토론회 -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발제문.** 2009. 5. 28.
- 김성태(2009).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한국언론학회 주최 ‘인터넷에서의 뉴스 생산과 유통의 발전 방안 - 매체간 에코시스템 구축과 포털의 책임성 기준 확립을 위하여’ 발제문.** 2009. 3. 20.
- 김재협(2009. 봄). 기업보도와 법적 쟁점. **언론중재, 통권 110호, 60-71.**
- 김학웅(2009). 언론보도와 인권 포럼.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29회 여기자 세미나’ 발제문.** 2009. 4. 9. ~ 11.
- 김형기(2009. 3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 추진과정과 내용 - 인용보도시 정보 출처 명시 완화. **신문과 방송, 통권 459호, 126-129.**
- 류승훈(2009. 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전과 그 의미. **언론중재, 통권 110호, 6-23.**
- 류종현(2009). 강력범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격.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주최 ‘강력범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격 세미나’ 발제문.** 2009. 4. 3. ~ 4.
- 문재완(2009. 3월).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 무죄 추정 원칙은 사진 공개와 무관. **신문과방송, 통권 459호, 46-49.**
- 박진애(2009).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한국언론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인터넷상 허위사실의 유포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발제문.** 2009. 4. 3.
- 박태순(2009). 방송법 개정관련, 프랑스 사례가 주는 의미.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 ‘방송법 개정 관련, 프랑스 사례가 주는 의미’ 발제문.** 2009. 4. 3.
- 성선제(2009. 봄). 2008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 동향. **언론중재, 통권 110호, 72-82.**
- 심상민(2009). 미디어법과 경제효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미디어법과 경제효과 세미나’ 발제문.** 2009. 4. 23.
- 심성욱(2009). 디지털 환경에서 광고 패러다임의 변화. **동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주최 ‘미디어 연구의 새지평 - 다원적 매체환경 하에서 광고효과 연구’ 발제문.** 2009. 5. 29
- 양재규(2009. 3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36 - 언론사 과실 없어도 허위보도는 정정보도문 게재해야. **신문과방송, 통권 459호, 142-145.**
- 양재규(2009. 4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37 - 수사중인 사건 보도에 단정적 표현은 금물. **신문과방송, 통권 460**

호, 124-127.

- 양재규(2009. 5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38 - 허위보도라도 성실한 취재 인정되면 면책. **신문과방송**, 통권 461호, 122-125.
- 유승관(2009). 인터넷 자율 규제 방향 및 이용자 거버넌스. **한국방송학회 2009 봄철 정기학술대회, NORI 특별 세션, 인터넷기반 미디어의 법률적 쟁점과 자율규제 방안** 발제문. 2009. 4. 24. - 25.
- 윤성옥(2009). 정보통신망법과 인터넷 규제에 관한 연구 :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9 봄철 정기학술대회, NORI 특별 세션, 인터넷기반 미디어의 법률적 쟁점과 자율규제 방안** 발제문. 2009. 4. 24. - 25.
- 이산(2009). 강력범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권에 대한 법률 고찰.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주최 '강력범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격 세미나'** 발제문. 2009. 4. 3. ~ 4.
- 이수범(2009). 방송산업의 재원구조와 미디어랩. **한국광고홍보학회 주최 '2009년 쟁점과 토론 - 광고 측면에서 본 미디어 관련 법안'** 발제문. 2009. 2. 27.
- 이재진(2009. 4월). 인터넷 언론자유와 인격권. **한나래**
- 이준웅(2009). 무너지는 사실보도와 의견보도 원칙. **한국언론재단, 신문윤리위원회 공동 주최 '무너지는 사실보도와 의견보도 원칙 세미나'** 발제문. 2009. 5. 14.
- 이향선(2009).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언론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인터넷상 허위사실의 유포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발제문. 2009. 4. 3.
- 이효성(2009).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기반 뉴스서비스 분쟁의 조정 · 중재 방향.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충북 지방토론회** 발제문. 2009. 4. 21.
- 장영수(2009. 3월).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 공익으로 포장된 국민적 호기심. **신문과방송**, 통권 459호, 50-53.
- 정남철(2009. 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통권 110호, 42-59.
- 조동시(2009. 3월).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신문과방송**, 통권 459호, 54-57.
- 최민재(2009. 4월).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어떻게 달라지나. **미디어 인사이드**. 통권 10호
- 태양식(2009). 영상취재현장에서의 초상권과 인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주최 '강력범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격 세미나'** 발제문. 2009. 4. 3. ~ 4.
- 함영주(2009. 봄). 우리 법제하 행정형 ADR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통권 110호, 24-41.
- 황용석(2009). 언론사와 포털의 매체상생을 위한 에코시스템 구축 논의. **한국언론학회 주최 '인터넷에서의 뉴스생상과 유통의 발전 방안 - 매체간 에코시스템 구축과 포털의 책임성 기준 확립을 위하여'** 발제문. 2009. 3. 20.

## 언론중재법 주요 개정내용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포털뉴스와 IPTV가 위원회 조정대상매체에 포함된 것이다. 또 인터넷매체에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포털과 기사제공 언론사의 관계에 대한 특칙을 두어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온라인 조정신청방법이 '전자우편 등'에서 '전자문서 등'으로 바뀐 점 등도 눈에 띈다. 언론중재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포털뉴스 및 IPTV 등 인터넷 기반 매체 조정·중재대상에 추가

지난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주요 인터넷매체라 할 수 있는 포털뉴스, 언론사닷컴이 언론중재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이번 법 개정에서는 포털뉴스, 언론사닷컴 및 IPTV도 위원회의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의할 점은, 이들 새로운 매체가 조정·중재대상에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언론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개정법은 언론의 범위를 여전히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국한하고 있다(법 제2조 1호). 따라서 이 조항은 포털뉴스로 대변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 비록 언론은 아니지만 그 수행하는 기능 내지는 영향력 측면에서 언론에 준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매체는 언론중재법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조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친목·교육·종교 목적의 홈페이지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피신청사건의 특별 중재부 배정

종전 언론중재법은 기피신청사건(사건담당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중재위원을 심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를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중재위원만을 제외하고 기존 중재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기피사건에 대한 심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중재부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별도의 중재부(특별중재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법 제10조 제4항). 또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가 있는 중재위원은 중재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스스로 심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 인터넷에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본문 자체에 대한 수정 요구 가능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에서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정보도가 아닌 해당 기사 자체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

청구가 가능한 기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또는 매개 중에 있는 기사이며, 이미 삭제되었거나 내려진 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무상 새로운 형태의 정정보도청구가 자리를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보도의 배열 등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할 의무 부과

종전 언론중재법에도 기사 보관의무 관련 규정은 있었으나,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는 정도였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뿐만 아니라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역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제8항). 그러나 전자기록 보관의무가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개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보관의 범위와 방법 등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는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되지만, 자칫 보관의무를 부여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도 있는 위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특칙규정을 신설, 피해확산방지 및 일괄피해구제의 원칙을 도모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 동안 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가 다른 피해구제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기는 하였으나,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해의 빠른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정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 ‘표시의무’는 정

정·반론·추후보도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포털사들은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가 청구된 사실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고, 포털의 통보가 있거나 하면 해당 언론사 역시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법 제17조의2 제2항). 또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 피해자가 먼저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포털사에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3항).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사유 명시한 서면 제출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거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다. 다만, 언론조정중재규칙 관련 규정에서 위원회가 마련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의신청하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2조 제3항).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막아 직권조정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온라인조정신청 시 보다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문서 등’에 의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하자 있는 중재결정의 취소절차가 누락되었던 점을 보완하여 중재결정취소도 가능하게 한 점도 변경된 내용이다. 또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정정보도청구의 재판방법을 본안소송에 의하도록 했다.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신청제도가 삭제된 점도 이번 개정법의 중요 사항이다.

정 리 : 양재 규 조정중재팀장

#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일부개정 : 2009. 2. 6.  
시 행 : 2009. 8. 7.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1.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개정 2009.2.6>)

①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 ③ 삭제 <2009.2.6>
- ④ 삭제 <2009.2.6>
- ⑤ 삭제 <2009.2.6>

### 제5조의2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②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 ④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2.6]

### 제6조 (고충처리인)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2.6>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2.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 제9조 (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신설 2009.2.6>

⑤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⑧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해당 중재부를 보충한다. <신설 2009.2.6>

#### 제11조 (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09.2.6>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 (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별칙의 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개정 2009.2.6>

####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개정 2009.2.6>

③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9.2.6>

⑥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개정 2009.2.6>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2절 조정

### 제18조 (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 (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 (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 제21조 (결정)

-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③ 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 (직권조정결정)

-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9.2.6>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09.2.6>

### 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3절 중재

### 제24조 (중재)

- ①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 ④ 삭제 <2009.2.6>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개정 2009.2.6>)**

-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9.2.6>
-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2.6>

**제4절 소송**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④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⑥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
- ⑧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2006. 6. 29.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 (재판)**

- 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③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28조 (불복절차)**

- ①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

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2.6>

### 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개정 2009.2.6>)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제30조 (손해의 배상)

①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제5절 시정권고 등

### 제32조 (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개정 2009.2.6>

④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⑤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⑥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⑦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⑧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33조 삭제** <2009.2.6>

**제4장 별칙**

**제34조 (과태료)**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2.6>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보관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9.2.6>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 ③ 삭제 <2009.2.6>
- ④ 삭제 <2009.2.6>
- ⑤ 삭제 <2009.2.6>

**부 칙** <제9425호,2009.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매개에 대한 적용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매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6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